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보고서 2014-22-8

노인단독가구의 생활 현황과 정책 과제

정경희 · 오영희 · 황남희 · 권중돈 · 박보미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오영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중돈 목원대학교 교수
박보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22-8

노인단독가구의 생활 현황과 정책 과제

발 행 일	2014년 12월 31일
저 자	정 경 희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39-00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경성문화사
정 가	7,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978-89-6827-190-8 93330

발간사

노인복지정책이 관심을 가져야 할 변화 중 하나가 노년기의 거주형태의 변화이다. 각 년도의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자녀동거율은 1994년의 54.7%에서 2011년 27.3%로 급감한 반면, 단독가구는 40.4%에서 68.1%로 증가하였다. 즉 자녀동거가 아니라 노인단독가구가 노년기의 보편적 가구형태로 변화해 온 것이다. 이러한 가구형태의 변화는 노년기 삶의 양상과 서비스 욕구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을 요한다. 이러한 노년기의 단독가구 형성추이는 향후도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노인단독가구의 계속적인 증가는 이들의 사회적 소외의 가능성 및 동거가족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지원 감소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등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노인단독가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부부끼리만 생활하는 경우 노인 혼자 생활하는 독거가구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평균적으로 의존적인 위상으로 기혼자녀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노인에 비하여 생활수준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도 있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노년기 부부가구는 독거가구와는 또 다른 욕구를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접근도 요구된다. 또한 정책적 관심집단인 독거노인의 경우 공통적인 욕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독거노인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년기의 거주형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노인단독가구의 특성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

출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를 위하여 노인단독가구 중 시급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경희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오영희 연구위원, 황남희 부연구위원, 박보미 연구원, 원외의 권중돈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 해주신 본 원의 김유경 연구위원과 선우덕 연구위원, 소중한 검토의견을 주신 김경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진은 인터뷰에 응해주신 연구참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 론 ·····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1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15

제1절 노년기 가구형태 변화 추이 ····· 17

제2절 노년기 가구형태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 21

제3절 시사점 ····· 28

제3장 노인단독가구(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일반 특성과 생활 현황 · 31

제1절 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일반 특성과 생활 현황:
비단독가구 거주노인과의 비교 ····· 33

제2절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 현황 비교 ····· 47

제3절 노인단독가구의 제특성별 생활 현황 ····· 57

제4절 종합 ····· 95

제4장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질적 접근 ····· 101

제1절 집단 면접 ····· 103

제2절 일대일 면접 ····· 116

제3절 종합 ····· 133

제5장 노인복지정책 분석 ····· 137

제1절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방향 분석 ····· 139

제2절 노인복지정책 영역별 수요-공급 분석의 기본가정 ····· 142

제3절 노인복지정책 영역별 수요-공급 분석 ····· 149

제4절 노인단독가구의 정책대상 ····· 167

제6장 결 론 ····· 171

제1절 종합 ····· 173

제2절 정책적 함의 ····· 176

참고문헌 ····· 183

부록: 가계동향조사 기초 분석 ····· 189

표 목차

〈표 2- 1〉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별 가구형태 ····· 19
〈표 2- 2〉 노인(65세 이상)의 가구형태 별 둘/혹은 혼자만 사는 이유 ····· 20
〈표 2- 3〉 국내 학회지 2종의 가족유형 관련 논문 분포 ····· 24
〈표 2- 4〉 국외 학회지 2종의 가족유형 관련 논문 분포 ····· 27
〈표 3- 1〉 단독가구 거주 노인과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일반특성 비교 ····· 34
〈표 3- 2〉 단독가구 거주 노인과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비교 ···· 36
〈표 3- 3〉 단독가구와 비단독가구의 소득실태 비교 ····· 38
〈표 3- 4〉 단독가구와 비단독가구의 적자비율 비교 ····· 39
〈표 3- 5〉 단독가구와 비단독가구의 소비지출 구성 비교 ····· 41
〈표 3- 6〉 단독가구와 비단독가구의 주요 소비지출의 세부금액 비교1) ····· 43
〈표 3- 7〉 단독가구 거주 노인과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비교 ·· 45
〈표 3- 8〉 단독가구 거주 노인과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 실태 비교 · 46
〈표 3- 9〉 단독가구 거주 노인과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생활 현황과 안전 실태 비교 · 47
〈표 3-10〉 부부가구의 연령 구성 ····· 49
〈표 3-11〉 부부가구의 교육수준 구성 ····· 49
〈표 3-12〉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가족 및 사회관계 비교 ····· 51
〈표 3-13〉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경제 상태 비교 ····· 53
〈표 3-14〉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건강 상태 비교 ····· 55
〈표 3-15〉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사회참여 실태 비교 ····· 56
〈표 3-16〉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 환경과 안전 실태 비교 ····· 57
〈표 3-17〉 노인단독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별거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60
〈표 3-18〉 노인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별거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62
〈표 3-19〉 노인단독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친구·이웃과의 접촉·연락빈도 및 사회적 연계망 · 64
〈표 3-20〉 노인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친구·이웃과의 접촉·연락빈도 및 사회적 연계망 ····· 65
〈표 3-21〉 가족 및 사회관계 관련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제특성별 다양성 ····· 67

〈표 3-22〉 노인단독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소득원, 구성비 및 공적 보호 실태 ····· 70
〈표 3-23〉 노인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소득원, 구성비 및 공적 보호 실태 ····· 72
〈표 3-24〉 노인단독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자산 실태 ····· 74
〈표 3-25〉 노인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자산 실태 ····· 75
〈표 3-26〉 노인단독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지출규모, 생활비 주부담자 및 경제상태 만족도 ····· 77
〈표 3-27〉 노인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지출규모, 생활비 주부담자 및 경제상태 만족도 ····· 78
〈표 3-28〉 경제상태 관련 가구와 부부가구의 제특성별 다양성 ····· 79
〈표 3-29〉 노인단독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건강 상태와 건강 행위 ····· 82
〈표 3-30〉 노인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건강 상태와 건강 행위 ····· 84
〈표 3-31〉 건강상태 관련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제특성별 다양성 ····· 86
〈표 3-32〉 노인단독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경제 활동 및 여가 활동 실태 ····· 88
〈표 3-33〉 노인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경제 활동 및 여가 활동 실태 ····· 89
〈표 3-34〉 사회참여 관련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제특성별 다양성 ····· 90
〈표 3-35〉 노인단독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생활 환경 및 안전 실태 ····· 92
〈표 3-36〉 노인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생활 환경 및 안전 실태 ····· 93
〈표 3-37〉 생활 환경 및 안전 실태 관련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제특성별 다양성 ····· 94
〈표 4- 1〉 집단면접(FGI) 참여자의 특성 ····· 104
〈표 4- 2〉 일대일 면접 대상자의 특성 ····· 117
〈표 5- 1〉 노인단독가구의 생활 현황 파악의 기본틀 ····· 144
〈표 5- 2〉 노인복지정책 수요 추정의 기준 ····· 145
〈표 5- 3〉 노인복지정책 공급 분석에 포함되는 급여와 서비스 ····· 148
〈표 5- 4〉 가구형태별 저소득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 ····· 150
〈표 5- 5〉 소득보장 영역의 정책 가치 선택의 특성 분석 ····· 151
〈표 5- 6〉 가구형태별 주거불안정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 ····· 153
〈표 5- 7〉 주거보장 영역의 정책 가치 선택의 특성 분석 ····· 154
〈표 5- 8〉 가구형태별 경제활동 미참여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 ····· 156

〈표 5- 9〉 고용보장 영역의 정책 가치 선택의 특성 분석 ····· 157
〈표 5-10〉 가구형태별 건강문제를 경험하는 비율 ····· 160
〈표 5-11〉 건강보장 영역의 정책 가치 선택의 특성 분석 ····· 161
〈표 5-12〉 가구형태별 소외 및 무위문제를 경험하는 비율 ····· 164
〈표 5-13〉 사회서비스 영역의 정책 가치 선택의 특성 분석 ····· 165
〈표 5-14〉 노인복지 정책대상의 집단 분류와 비율 ····· 169
〈표 6- 1〉 노인단독가구의 특징(종합) ····· 175

부표 목차

〈부표 1-1〉 경상소득 및 소비지출 구성 ····· 190
〈부표 1-2〉 노인가구 구성 ····· 192
〈부표 1-3〉 가구형태별 가구원 수 ····· 19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진행 절차 ····· 13
[그림 2-1] 노인의 가구형태의 변화(1994-2011) ····· 18
[그림 5-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 ····· 140

Abstract

Living Profiles of Older-Persons-Only Households and Policy Implications

Among older persons, the proportion of those who live alone or with spouse only is increasing. It is a result not only of demographic changes but also of changes in attitudes and cultural atmosphere in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empirical base for policy measures to adequat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later-life household structure. To that end, this study analyzes the National Survey of Living Profiles and Welfare Needs of Older Persons (2011) and the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2012). In addition to these quantitative approaches, qualitative approaches are employed, such as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face-to-face interviews.

This study consists of five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existing research articles about changes in the later-life household structure. The second part presents the outcome of the analysis of data from the two national surveys. The third discusses the main themes and findings from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face-to-face interviews conduced of a total of 15 persons. The fourth part analyzes the framework of supply and

demand based on 9 indicators in 4 areas, using data from the 2011 National Survey of Living Profiles and Welfare Needs of Older Persons. Also, this study categorizes older-persons-only households into 4 types according to the urgency of policy interven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last part makes suggestions for policy directions and priority-setting f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in the later-life household structure.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노년기의 거주형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노인단독가구의 특성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를 위하여 노인단독가구 중 시급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전국조사결과 분석, 집단 및 일대일 면접, 정책 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노인단독가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종합될 수 있다. 노인단독가구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있는 일정 규모의 대상이 있으며, 경제적 충분성과 안정성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제수준은 지출 중 식생활비의 비중이 높지만 유제품이나 기호식품 등에 대한 지출액 수준은 낮은 등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인터뷰에서도 반찬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토로되기도 하였다. 또한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지출 수준 대비 기본적인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심리적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가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노인에게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쉽게 대처하지 못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한편 노인단독가구 내부의 다양성도 큰데, 이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관심을 두어야 할 점들이다. 독거노인의 경우 가까이 사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높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연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그러한 기제가 부족한 상황이다. 독거노인은 상대적으로 운동실천율과 건강검진율이 낮고 빈곤경험률이 매우 높다. 독거가구를 대표하는 삶의 유형은 빈곤과 질병, 고립과 무위라는 4가지 고통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유형으로 공적개입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위기집단은 독거가구의 25.2%에 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적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는 취약집단은 35.7%로 도출되었다.

한편,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가 모두 75세인 비율이 21.3%이며, 독거가구에 비하여 제특성별 차이, 즉 내부적 다양성 수준이 높다. 또한 부부가 공간과 생활을 모두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 유대와 중요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구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빈곤과 질병이라는 문제는 경험하지 않지만 소외와 무위의 문제를 경험하는 유형이 15.1%, 4가지 문제를 모두 경험하는 경우가 14.1%로 나타났다. 정책적 개입의 관점에서 볼 때 공적 개입이 필요한 위기집단 가구가 13.0%, 공적 보호를 우선시 해야 할 취약집단(4고(四苦) 중 3개의 문제를 갖고 있는 집단)이 27.4%이다.

이외에도 제특성별로는 지역의 특성이 매우 두드러졌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비교적 단단한 지역사회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로 영양상태나 건강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이 높고, 119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사회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반면 학대경험이나 자살생각을 하는 비율이 높아 심리적 안전이 취약한 상태이다. 연령의 경우도 후기 노년기로 갈수록 자녀와의 정서적 교환도 약화되고, 행동반경이 축소되는 등 사회적 연계망과 활동이 축소되고 있다. 한편, 예비노인의 경우는 현세대 노인과는 달리 그들 앞에 놓여있는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암중모색하고 있다.

다른 연령층의 경우와 유사하게 경제상태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다양한 지표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종교활동이 삶에 갖는 의미와 기능이 매우 크다는 점은 비노년층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3. 정책 제언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 방향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년기의 단독가구 형성은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노인복지정책의 서비스 단위(unit of service)를 개인단위에서 가구단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와 노인단독가구로의 전이과정과 생활사건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노인단독가구의 다양성과 욕구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인단독가구 내에서도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점이 분명하므로 정책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상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하거나, 노인단독가구 거주자들의 욕구가 높은 서비스 위주로 적극 개발·제공해가야 할 것이다. 주택보수, 반찬배달서비스의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빈곤한 노인단독가구에 대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기제마련, 농어촌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119를 적절한 활용 등이 구체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강화 및 보완이 요구된다. 단독가구의 다양성과 욕구 증대에의 적극적 대응이라는 새로운 시도뿐만 아니라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대상범위 확대 및 체질 개선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범위의 확대 없이는 노년기 단독가구의 삶의 질 향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노인단독가구의 생존 및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 보호체계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절대빈곤계층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실질적 소득보완 효과를 지닌 좋은 일자리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질병치료나 장기요양보호 수요 충족을 위한 급여의 확대와 아울러 가사, 일상생활지원 등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여가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주요용어: 노인단독가구, 독거가구, 부부가구, 노인복지정책, 수요-공급 분석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인복지정책이 관심을 가져야 할 변화 중 하나가 노년기의 거주형태의 변화이다. 각 년도의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자녀동거율은 1994년의 54.7%에서 2011년 27.3%로 급감한 반면, 단독가구는 40.4%에서 68.1%로 증가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구는 1994년의 26.8%에서 2011년 48.5%로, 독거노인은 13.6%에서 19.6%로 증가하였다. 즉 자녀동거가 아니라 노인단독가구가 노년기의 보편적 가구형태로 변화해 온 것이다. 이러한 가구형태의 변화는 노년기 삶의 양상과 서비스 욕구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을 요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노년기의 단독가구 형성추이는 향후도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2년 추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가구[1] 중 2010년 1인 가구 및 부부가구는 각각 105만6천 가구(34.2%)과 103만8천 가구(33.6%)로 65세 이상 전체 가구의 67.8%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인가구의 경우 2015년에는 137만 9천 가구, 2035년에는 343만 가구(38.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노인단독가구 증가추이는 노인가구의 증가추이 보다 가파른 것이다. 또한 부부가구의 경우 2015년에 128만 가구, 2035년에 291만9천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더불어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 출생자)나 현재 50대 후반인 예비노인층의 절대다수가 부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부끼리 혹은 혼자 살기를 희망하고 있고,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약 6%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노년기 가구형태변화에 대한 시급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0).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의 보편화에 따라 내부적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경우 다수가 여성노인이고(85.6%), 지역별로 독거노인 비중에 차이가 있어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도시 18.4%, 농어촌 26.9%). 독거 이유도 다양화하고 있어 자녀의 별거 희망이나 타지역 거주 등 자녀요인에 의한 것(51.5%)뿐만 아니라,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나 건강과 같은 독자성을 갖는 이유도 있고(13.1%), 개인생활을 향유하고 싶은 욕구나 기존 거주지에 거주하고 싶은 희망과 같은 노인의 선호에 의한 자발적 단독인 경우(35.5%)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2b).

단독가구의 계속적인 증가는 이들의 사회적 소외의 가능성 및 동거가족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지원 감소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등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노인단독가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부부끼리만 생활하는 경우 노인 혼자 생활하는 독거가구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평균적으로 의존적인 위상으로 기혼자녀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노인에 비하여 생활수준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도 있다(정경희 외, 2012c). 그러나 부부가 모두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노년기 부부가구는 독거가구와는 또 다른 욕구를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접근도 요구된다. 또한 정책적 관심집단인 독거노인의 경우 공통적인 욕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독거노인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년기의 거주형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노인단독가구의 특성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를 위하여 노인단독가구 중 시급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노인단독가구 거주노인의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였다. 노인단독가구 거주노인의 특성 및 욕구를 종합적이며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혼합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노인단독가구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을 뿐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양적인 자료만으로는 이들의 구체적인 생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양적 분석을 위해서는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2012년도 가계동향조사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노인실태조사는 조사의 포괄성을 위하여 항목별 지출현황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적 분석을 통하여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과 비교한 노인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특성, 독거/부부가구별 생활 현황 및 욕구(가족관계 및 사회적 지지망,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 노인단독가구의 내적 다양성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개인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독가구 거주 노인과 비단독가구 거주노인의 특성을 비교하였는데, 총 사례 수는 65세 이상 10,674명이다. 한편, 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특성별 분석을 위해서는 가구단위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부부가구 중 부부 각각에 대한 개

인조사가 이루어진 가구는 약 1/3에 불과하여 부부의 특성과 응답내용을 모두 반영한 분석을 실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조사된 경우는 부부중 생일이 빠른 사람을 선정하여 가구단위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는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특성별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독거가구 2,049가구, 부부가구 4,077가구이며 가구를 대표하는 일인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질적 분석을 위해서는 50대 후반~60대 초반의 예비노인 7명과 65세 이상의 노인 8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각각 1회 실시하였고, 이러한 집단면접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면접할 내용을 정리한 후, 15명에 대한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둘째, 정책개입 대상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양적 자료를 활용한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유형화에는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중 정책적 개입 우선 순위 설정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영역을 기반으로 하되 경험적 분석에 활용한 노인실태조사 상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활용하였다.

셋째, 이러한 유형화에 기초하여 현 정책의 충분성과 적절성을 고찰하였다. 즉 거주형태 변화에 대비한 현 노인복지정책의 정합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입 우선순위 집단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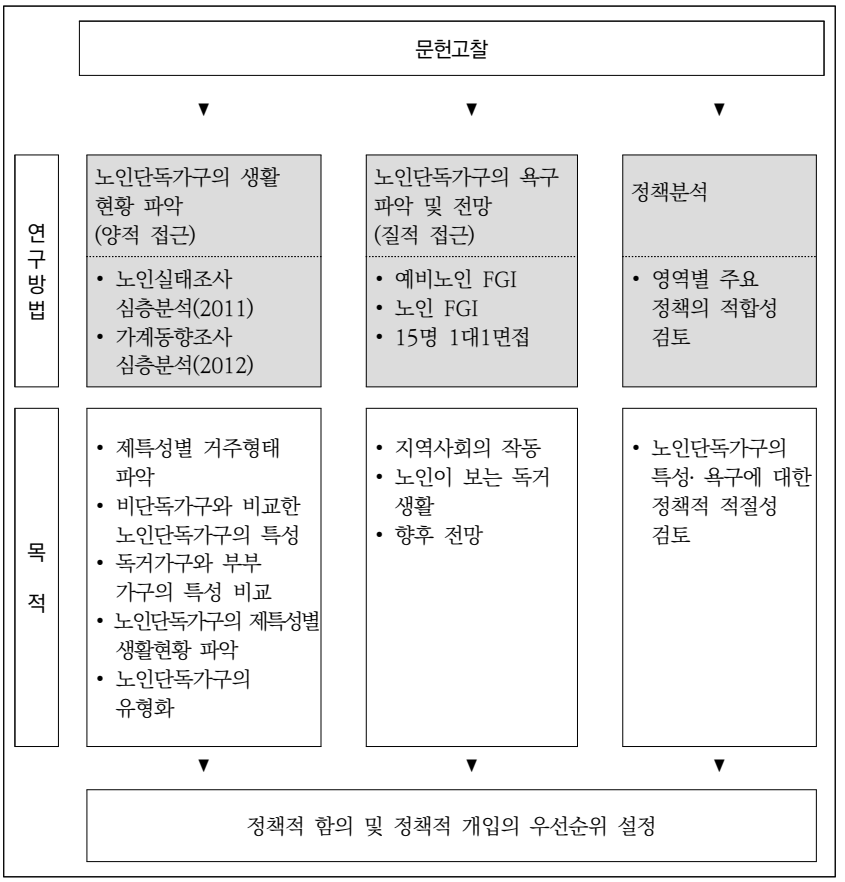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노년기 가구형태 변화 추이
제2절 노년기 가구형태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제3절 시사점

2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노년기 가구형태 변화 추이

지난 약 20년간의 노년기의 가구형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노인실태조사가 있다. 그러나 개괄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기본의 가구형태 변화 추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변화 추이

노년기의 가구형태의 변화추이는 어느정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전체 노인 중 노인독거는 19.6%, 노인부부 48.5%, 자녀동거 27.3%, 기타 4.6%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노인단독가구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68.1%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단독가구 비율은 1994년의 40.4%, 2004년의 55.0%에서 급증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의 비중은 동부지역이 62.9%인데 비하여 읍·면부는 79.1%로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 노인의 가구형태의 변화(1994-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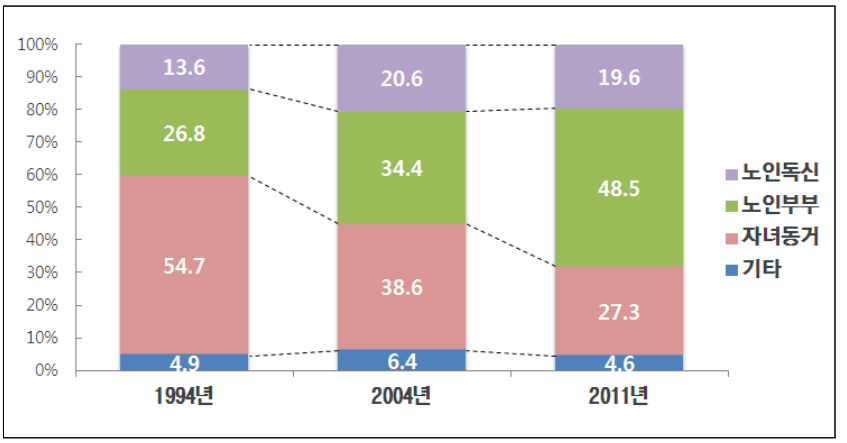

자료: 1994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정경희 외(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보지부
2011 - 정경희 외(2012a). 2011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보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독거가구 거주 노인이 19.8%이며 부부끼리만 거주하는 노인부부가구는 48.6%로 노인 중 68.4%가 노인단독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를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도시거주 노인에 비하여 농어촌 거주 노인에게서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79.1% 대 62.9%), 구성에 있어서도 독거노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23.9% 대 17.6%).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경우 단독가구 생활자의 대부분이 부부가구인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는 독거노인의 상대적 비중이 높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령군별로는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70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감소하는 ∩형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노인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비율이 65~69세군의 경우 65.0%에서 70~74세의 70.8%, 75~70세 73.4%이지만 80~84세까지는 67.6%, 85세 이상은 50.6%이다. 그러나 이를 독거와 노인부부가구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이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독거의 경우 노인단독가구율과 마찬가지로 ∩형의 추세를 보이지만 정점을 이루는 연령대는 80~84세군이다. 반면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연령과 반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노화에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됨에 따라서 노인부부가구 형태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후기노인의 경우 신체적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혼자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독거노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다.

〈표 2-1〉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별 가구형태

(단위: %, 명)

특성	노인독거 가구	노인부부 가구	자녀동거 가구	기타 가구	계 (명)
전체	19.8	48.6	27.0	4.6	100.0 (10,544)
지역					
동부	17.6	45.3	32.1	5.0	100.0 (7,257)
읍·면부	23.9	55.2	17.1	3.8	100.0 (3,417)
성					
남자	6.5	64.5	23.9	5.0	100.0 (4,605)
여자	29.5	36.2	29.9	4.3	100.0 (6.069)
연령					
65~69세	10.5	54.5	28.5	6.5	100.0 (3,179)
70~74세	17.5	53.3	24.7	4.5	100.0 (3,240)
75~79세	24.8	48.6	23.5	3.1	100.0 (2,414)
80~84세	34.5	33.1	29.2	3.2	100.0 (1,183)
85세 이상	28.5	22.1	45.4	4.1	100.0 (658)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 단독가구 형성 이유

대표적인 독거이유는 자녀의 결혼으로 인하여(19.4%), 살고있는 주거지를 떠나기 싫어서(18.5%), 개인생활 유지를 위해서(17.1%)이다. 성별로는 여자독거노인의 경우 자녀의 결혼으로 인하여-라는 응답이 남자독거노인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살고 있는 주거지를 떠나기 싫어서라는 응답도 남자독거노인의 약 두 배에 달하는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남자독거노인은 건강해서라는 응답과 개인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여자독거노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 노인(65세 이상)의 가구형태 별 둘/혹은 혼자만 사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가구형태			
	노인독거 가구	남	녀	노인부부 가구
내가 독립생활이 가능할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3.4	7.4	2.7	7.3
내가 독립생활이 가능할 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9.7	13.1	9.1	5.9
개인 생활 또는 부부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17.1	21.5	16.3	14.1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떠나기 싫어서	18.5	10.1	20.0	7.8
자녀에 대한 가사지원 및 손자/손녀 양육이 부담스러워서	0.4	0.0	0.5	0.6
자녀의 결혼으로 인하여	19.4	13.1	20.5	36.5
자녀가 따로 살기를 원하여서	8.9	9.4	8.8	7.4
자녀가 직장(학업) 관계로 타 지역에 있어서	8.7	8.4	8.7	17.2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서	6.7	5.4	6.9	2.0
모두 딸이기 때문에	1.3	1.3	1.3	0.4
자녀가 없어서	4.8	6.0	4.6	0.5
기타	1.2	4.4	0.7	0.2
계	100.0	100.0	100.0	100.0
(명)	(2,057)	(298)	(1,757)	(5,114)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제2절 노년기 가구형태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본 절에서는 노년기 가구형태와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서기 시작한 해인 2000년(노인인구 7.2%)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노년기 가구형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았다.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크게 세가지 틀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가구형태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인지, 가구형태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고, 둘째, 다양한 가구 형태 중 관심을 둔 주요가구형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을 둔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1. 국내

노년기 가구형태에 관한 국내의 연구 동향은 대표적인 노년학 관련 학술지인 한국노년학회지와 노인복지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논문을 중심으로 검색해 본 결과, 한국노년학회지에서는 약 1,054건의 논문이, 노인복지연구에서는 약 807건의 논문이 검색되었는데, 가구형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검색된 논문들은, 한국노년학회지에서는 약 65건, 노인복지연구에서는 43건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 번째 틀에 기초하여 살펴본 결과, 가구형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연구보다는 이미 결정된 가구형태들이 다른 요인에 영향을 주는 연구들이 눈에 띄었다. 가구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노인가구의 유형 변화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오지연·최옥금, 2011), 치매노인을 모시는 경우 그 형태를 지속할지, 치매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킬

지에 영향을 주는 가족요인에 관한 연구(백주희, 2005) 등이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구 유형변화 요인과 관련해서는 단독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로 이동할 확률이 적었고, 여성이면서 연령대가 높고, 질환이 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이 단독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조손가구로 생각되는 기타가구 역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오지연·최옥금, 2011). 치매노인 입소와 관련해서는 성인 자녀 부양자에 비해 배우자 부양자가 더 빨리 보내는 경향이 있었고, 치매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양자의 역할구속감이 높을수록, 치매노인의 요양시설 입소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백주희, 2005). 그 외 많은 논문들은 가구형태별로 건강이나 경제상태를 분석하거나, 가구형태가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이미 형성된 가구형태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두 번째 틀에 기초하여 살펴보았을 때, 관심을 가진 가구 형태들은 독거가구, 부부가구, (동거/비동거) 자녀 가구, (동거/비동거) 조손가구, 기타 가구, 복수의 가구유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로 구분되어진다.

대체로 한 개의 가구유형보다는 복수의 가구유형에 관심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함께 검토한 연구가 많았으며(검색된 108건 중 44건, 한국노년학회지 65건 중 24건, 노인복지연구 43건 중 20건), 그 다음으로는 독거가구(검색된 108건 중 25건, 한국노년학회지 65건 중 11건, 노인복지연구 43건 중 14건), 조손가구(검색된 108건 중 13건, 한국노년학회지 65건 중 9건, 노인복지연구 43건 중 4건) 순이었다. 즉, 복수의 가구형태에 관심을 가진 논문을 제외하면 특히 독거가구에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손가구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가구의 경우에도 특히 여성 독거노인에 대해 연구한 바가 상대적으로 남성독거 노인보다 많았다. 이는 독거가구의 비율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사회경제학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부모-손자녀의 관계는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조부모들이 손자들의 양육을 대신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역시 자연스레 관심이 많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부부가구나 (동거/비동거)자녀 가구와 관련된 연구는 타 가구형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논문이 적었다.

각 논문이 관심을 둔 삶의 영역을 살펴보면, 정서나 심리상태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검색한 108건 중 60건, 한국노년학회지 65건 중 37건, 노인복지연구 43건 중 23건), 부양과 관련된 연구(검색된 108건 중 14건, 한국노년학회지 65건 중 9건, 노인복지연구 43건 중 5건), 경제상태에 관한 것, 건강상태에 관한 것, 관계망에 관한 것 등을 위주로 연구되었다. 삶의 만족도, 우울증, 갈등 등 정서적인 부분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가구형태에서 연구되었는데, 조손 가족의 경우에는 양육이 주는 스트레스나 의미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부양이 주는 스트레스나 의미, 독거 가구의 경우는 외로움이나 자살 등과 관련하여 연구되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는 독거 가구가 타 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2-3〉 국내 학회지 2종의 가족유형 관련 논문 분포

종류	원인/영향	관심 있는 가구유형	관심있는 주제
한국노년학회지	· 원인: 치매노인의 요양시설 입소에 미치는 영향(백주희, 2005) 등 · 영향: 남녀 독거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의 영향요인(이윤정, 2012), 외 45건 등	· 복합: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비교연구(유광수, 박현선, 2013) 외 23건 · 독거가구: 1인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연구(정운영, 정세은, 2011) 외 10건 · 조손가구: 조손가족 조부모의 소득구성원과 총소득 결정요인(한경혜, 주지현, 이정화, 2008) 외 8건 · 기타 부부가구 및 자녀가구 등에 관한 연구 8건 등	· 정서 및 심리상태: 여성독거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김희경, 이현주, 박순미, 2010) 외 36건 · 부양 관련: 노년기 부모-성인자녀간 지원유형에 관한 연구(정진경, 김고은, 2012) 외 8건 · 경제, 건강, 관계망 등 16건 외 기타주제 등
노인복지학회지	· 원인: 노인가구 유형변화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오지연, 최옥금, 2011) 등 · 영향: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건강상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최영, 2005) 외 42건 등	· 복합: 가족구조와 심리사회적 요인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김기태, 최송식, 박미진 외, 2011) 외 19건 · 독거가구: 무의탁 독거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조경욱, 2002)외 13건 · 조손가구: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화영, 2006) 외 3건 · 기타 부부가구 및 자녀가구 등에 관한 연구 5건 등	· 정서 및 심리상태: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정명숙, 2007) 외 22건 · 부양 관련 : 노인부양가구의 가족갈등에 대한 연구(안지연, 한은영, 2013) 외 4건 · 경제, 건강, 관계망 등 14건 외 기타주제 등
비고	가구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보다 가구형태별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음	여러개의 가구유형을 비교하는 연구가 많으며, 독거가구, 조손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임	정서 및 심리상태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부양관련, 기타 경제·건강관계망 등의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음.

주: 한국노년학회지 및 노인복지학회지 2000년 이후 논문 대상

2. 국외

노년기 가구형태에 관한 국외의 연구 동향은 Journal of Gerontology 및 The Gerontologist 그리고 Research on Ageing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 자료 모두 2000년 이후 방대한 논문이 실렸기 때문에, 몇 가지 키워드[2]를 중심으로 검색하여 살펴보았다. Journal of Gerontology에서는 약 152건의 논문이, Research on Ageing에서는 약 744건(중복 포함)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이 중 관련된 연구 위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틀에 기초하여 살펴본 결과, 가구형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연구보다는 이미 결정된 가구형태들이 다른 요인에 영향을 주는 연구들이 더 많이 검색되었다. 가구형태를 결정짓는 요인과 관련해서는 부모와 자식의 동거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연구(Bettina Isengard & Marc Szydlik, 2012) 등이 있었으며, 가구 내 역할변화나 역동성 변화를 살펴보는 논문들이 있었다(Chuck W.Peek & Raymond T. Coward, 2004). 그 외의 많은 연구들은 가구형태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연구되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틀에 기초하여 연구가 관심을 둔 가구형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크게 독거가구, 부부가구, (동거/비동거) 자녀 가구, (동거/비동거) 조손가구, 기타 가구, 복수의 가구유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로 구분되어진다. 대체로 한 개의 가구유형보다는 복수의 가구유형에 관심을 가진 연구가 많았으며, 독거가구 및 조손가구에 관련된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복합적인 가구형태를 제외하면 독거가구와 조손가구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family, single(one person)/couple households, family structure, demographic transition, childless couple 등

중점적으로 가구형태별로 보고자 했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정서나 심리상태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부양과 관계망과 관련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종이나 문화별 차이에 의한 비교연구들도 진행되었다.

가구형태와 중심이 된 연구주제를 함께 살펴보면, 조손가구의 경우에는 조부모들의 역할과 의미, 감정에 관한 연구들(Catherine Goodman & Merril Silverstein, 2002, Donald C. Reitzes & Elizabeth J. Mutran, 2004, Carol M.Musil, Camille B. Wamer ect, 2006, Catherine Chase Goodman, 2003) 및 경제상태에 관한 연구들(Anastasia H. Prokos & Jennifer Reid Keene, 2012)이 많이 실시되었다. 독거가구에서는 노인들의 상실감이나 외로움 및 우울증 (Deborah S. Carr, 200, Gary R. Lee & Alfren DeMaris, 2007)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동거/비동거)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Neale R. Chumbler, Amy Mehraban Pienta & Jefferey W. Dwyer, 2004)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일반적으로 복수의 가구형태를 살펴본 경우는 정서적인 내용을 주제로 한 연구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노년기 가족과 관계망에 따른 변화에 대한 연구(Russell Ward, Glenn Deane & Glenna spitze, 2014) 및 외로움에 관한 연구(Sharon Shiovitz-Ezra, Liat Ayalon, 2012) 등이 있다. 그 외 가구형태나 가족역할에 대해 인종차이, 문화적 요인, 가치관 차이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표 2-4〉 국외 학회지 2종의 가족유형 관련 논문 분포

종류	원인/영향	관심 있는 가구유형	관심있는 주제
Journal of Gerontolgy, The Gerontologist & Research of Ageing	· 원인: Living Apart (or) Together? Coresidence of Elderly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in Europe(Bettina Isengard and Marc Szydlik, 2012) 외 3건 · 영향: Measuring Resident and Family Member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With Assisted Living(Perry Edelman ect, 2006) 외 27건	· 복합: Family Relations, Social Connections, and Mental Health Among Latino and Asian Older Adults(Man Guo ect, 2014) 외 8건 · 독거가구: Widowhood, Gender, and Depression(Gary R. Lee ect, 2007) 외 6건 · 조손가구: Intergenerational Triad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Catherine Chase Goodman, 2003) 외 4건 · 기타 자녀가구 등에 관한 연구 2건 등	· 정서 및 심리상태: Use of Direct Versus Indirect Approaches to Measure Loneliness In later life(Sharon Shioviz-Ezra ect, 2012) 외 17건 · 부양 관련: Older Parents and Adult Daughters: A Comparison of Communication and Coping During the Decision to Move to a Care Facility(Elizabeth A. Gill ect, 2012) 외 5건 · 경제, 건강, 관계망 등 7건 외 기타주제 등
비고	가구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보다 가구형태별 영향에 대한 연구	여러 개의 가구유형을 비교하는 연구가 많으며, 독거가구, 조손가구에 대한 연구	정서 및 심리상태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부양 관련, 기타 경제·건강·관계망 등의 주제들로 구성. 문화 및 가치관 차이에 관한 연구

주: Journal of Gerontology, The Gerontologist & Research on Ageing 의 2000년 이후 논문 중 검색된 논문 대상

제3절 시사점

기존의 노년기 가구형태 변화에 관한 경험적 자료와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비단독가구와 구분되는 노인단독가구의 특징뿐만 아니라 단독가구 내부의 다양성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먼저 독거가구 뿐만 아니라 노인부부가구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노년기 가구형태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주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권중돈, 2008; 권중돈·엄태영·김유진 외, 2011). 그 결과 노인 부부가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인 가구형태로는 독거가구와 조손가구가 있다. 독거가구의 경우 현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점이 많은 가구이고, 조손가구의 경우 맞벌이 증가등으로 인해 그 비중이 증가되었기에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거가구뿐만 아니라 노인부부로만 구성된 부부단독가구 역시 증가 추세이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의 비중도 일정 규모를 이루고 있어 독거노인 내부의 다양성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둘째, 노인단독가구의 일상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가구형태 중 일부로 노인단독가구를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인 삶의 양상이 잘 보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다양한 특성이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삶에 있어 어떠한 양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양적 자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양적 자료만으로는 단독가구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질적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생활상을 좀

더 심도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독가구로 변화해가는 원인과 과정에 대한 탐구도 필요해 보인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과정과 그러한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취업 및 결혼 등으로 자녀가 독립을 하면서 부부가구가 되거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독거가구가 되기도 하며, 노인단독가구의 경우도 노년기 동안 부부가구에서 독거로 변해가는 등 가구형태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외국논문을 살펴보면, 가족구조 형성에 대해 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라던가(Rita jing-Ann Chou, 2010, Laura M. Funk, Neena L. Chappell & Guipin Liu, 2013), 인종 특성별 차이를 보는 연구들이 실시되었는데, 국내 역시 가치관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노인단독가구(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일반 특성과 생활 현황

제1절 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일반 특성과 생활 현황: 비단독가구 거주노인과의 비교
제2절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 현황 비교
제3절 노인단독가구의 제특성별 생활 현황
제4절 종합

3 노인단독가구(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일반 특성과 생활 현황

본 장에서는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와 2012년도 가계동향조사에 기초하여 비단독가구와 대비되는 노인단독가구의 특징은 무엇이며, 노인단독가구 내에서도 혼자 생활하는 독거가구와 부부가 생활하는 부부가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제특성별로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상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 지를 검토함으로써 노년기 단독가구의 공통점과 다양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1절 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일반 특성과 생활 현황: 비단독가구 거주노인과의 비교

1. 일반 특성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기초하여 단독가구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의 일반특성을 그 외의 노인과 비교한 〈표 3-1〉에 의하면 이들 단독가구 거주 노인 중 읍·면부 거주 노인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수준인 37.2%에 달하고 있으며 남자의 비중이 높아 45.0%이다. 이는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39.1%에 비하여 약 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단독가구 여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지만 비단독가구 거주노인에 비하여 85세 이상의 고연령 노인이 적은 편이라는 특징이 도출된다. 이는 85세 이상의 경우 건강상태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3].

〈표 3-1〉 단독가구 거주 노인과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일반특성 비교

(단위: %, 명)

	노인단독가구			노인비단독가구	전체
	노인독거	노인부부	소계		
지역					
동부	61.0 (1,277)	63.5 (3,286)	62.8 (4,564)	79.0 (2,693)	68.0 (7,257)
읍·면부	39.0 (817)	36.5 (1,886)	37.2 (2,703)	21.0 (715)	32.0 (3,418)
성					
남자	14.4 (301)	57.5 (2,972)	45.0 (3,273)	39.1 (1,332)	43.1 (4,605)
여자	85.6 (1,793)	42.5 (2,200)	55.0 (3,993)	60.9 (2,076)	56.9 (6,069)
연령					
65~69세	15.9 (334)	33.5 (1,735)	28.5 (2,068)	32.6 (1,111)	29.8 (3,181)
70~74세	27.1 (568)	33.4 (1,727)	31.6 (2,294)	27.7 (945)	30.4 (3,241)
75~79세	28.5 (598)	22.7 (1,173)	24.4 (1,771)	18.9 (643)	22.6 (2,413)
80~84세	19.5 (408)	7.6 (392)	11.0 (800)	11.2 (383)	11.1 (1,183)
85세 이상	8.9 (187)	2.8 (145)	4.6 (333)	9.5 (325)	6.2 (657)
(평균연령)	76.0 (2,094)	72.5 (5,172)	73.6 (7,267)	73.9 (3,408)	73.7 (10,674)
교육수준					
무학	55.9 (1,170)	20.1 (1,039)	30.4 (2,209)	34.4 (1,173)	31.7 (3,381)
초등학교	27.9 (584)	39.9 (2,062)	36.4 (2,645)	33.4 (1,137)	35.5 (3,783)
중학교	6.8 (142)	15.3 (791)	12.8 (933)	14.6 (498)	13.4 (1,431)
고등학교	7.0 (146)	15.1 (781)	12.8 (927)	12.1 (411)	12.5 (1,338)
전문대학교 이상	2.5 (52)	9.6 (497)	7.6 (549)	5.5 (189)	6.9 (738)
생존자녀수	3.9 (2,032)	3.7 (5,160)	3.8 (7,191)	3.8 (3,374)	3.8 (10,565)
생존형제자매가 있는 비율	78.1 (1,634)	84.7 (4,382)	82.8 (6,016)	80.8 (2,752)	82.2 (8,767)
생존형제자매수 (전체기준)	2.3 (2,094)	2.8 (5,172)	2.7 (7,267)	2.5 (3,408)	2.6 (10,674)
계(명)	100.0 (2,094)	100.0 (5,177)	100.0 (7,267)	100.0 (3,408)	100.0 (10,674)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교육수준의 경우 전문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의 비중이 단독가구 거주 노인에게서 약간 높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지만, 생존자녀수나 생존형제자매가 있는 비율 및 그 수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다. 즉 인적자

3)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동의정도가 낮은 상태로 자녀부양이 기대되고 있음(정경희 외, 2012b).

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사회적 자원인 자녀나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2. 생활 현황

가. 가족 및 사회 관계

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에 비하여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수혜율은 높지만 제공률에는 큰 차이가 없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가사도움의 경우 수혜율이 50.6%로 비단독가구 거주노인의 36.8%보다 월등히 높지만 제공률은 각각 11.3%와 10.9%로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정기적 현금지원의 경우도 수혜율이 각각 42.0%와 26.3%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경우 실질적·심리적 부양의무감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정서적 도움에 있어서는 오히려 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경우 비동거 자녀에게 정서적 도움을 주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비단독 노인에 비하여 비동거하는 자녀수가 많고 정서적 도움은 각 자녀에게 중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비동거자녀와의 부양의 교환을 유형화해보면 단독가구 거주 노인에게서 양방향 유형이 많아 84.1%에 달하고 있으며,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에게서는 부양제공형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단독가구 노인이 더 높아 75.3%인데, 이는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69.7%보다 5.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갈등이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인 것도 이러한 현상의 한 원인이라 하겠다.

〈표 3-2〉 단독가구 거주 노인과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비교

(단위: %, 명)

			단독가구 노인			비단독가구 노인	노인 전체
			독거노인	노인부부	소계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정서적 도움	수혜율	72.4 (1,421)	71.6 (3,680)	71.8 (5,101)	65.6 (2,092)	69.9 (7,193)
		제공률	57.7 (1,133)	64.5 (3,315)	62.6 (4,448)	56.9 (1,814)	60.8 (6,262)
	가사서비스 도움	수혜율	53.8 (1,056)	49.4 (2,540)	50.6 (3,596)	36.8 (1,173)	46.3 (4,769)
		제공률	9.5 (187)	12.0 (618)	11.3 (805)	10.9 (348)	11.2 (1,153)
	수발 도움	수혜율	59.2 (1,162)	50.9 (2,616)	53.2 (3,779)	41.5 (1,323)	49.6 (5,102)
		제공률	5.8 (114)	8.5 (435)	7.7 (549)	7.4 (236)	7.6 (785)
	정기적 현금지원	수혜율	50.6 (994)	38.6 (1,985)	42.0 (2,979)	26.3 (838)	37.1 (3,817)
		제공률	0.5 (10)	1.3 (69)	1.1 (79)	0.5 (17)	0.9 (96)
	비정기적 현금지원	수혜율	91.4 (1,794)	94.3 (4,849)	93.5 (6,643)	91.8 (2,927)	93.0 (9,570)
		제공률	15.8 (311)	28.1 (1,444)	24.7 (1,755)	20.7 (659)	23.5 (2,414)
	현물 지원	수혜율	90.2 (1,771)	92.7 (4,765)	92.0 (6,536)	87.6 (2,792)	90.6 (9,328)
		제공률	47.3 (928)	67.2 (3,452)	61.7 (4,380)	49.6 (1,579)	57.9 (5,959)
	부양 교환의 유형						
	무교환형		2.8 (55)	0.8 (43)	1.4 (98)	1.5 (47)	1.4 (144)
	제공형		0.1 (2)	0.4 (20)	0.3 (23)	0.1 (4)	0.3 (26)
	수혜형		20.7 (405)	11.8 (605)	14.2 (1,010)	22.0 (698)	16.6 (1,708)
	양방향형		76.4 (1,499)	87.0 (4,468)	84.1 (5,968)	76.4 (2,429)	81.7 (8,397)
자녀와의 관계 만족률			65.0 (1,270)	79.2 (4,027)	75.3 (5,297)	69.7 (2,305)	73.5 (7,602)
친구·이웃과 접촉	거의 매일 왕래하는 비율		54.5 (1,140)	42.3 (2,177)	45.8 (3,317)	36.8 (1,251)	42.9 (4,567)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		56.5 (1,181)	56.0 (2,882)	56.1 (4,063)	50.3 (1,711)	54.3 (5,773)
	주 1회 이상의 왕래 또는 연락 하는 비율		77.9 (1,628)	70.5 (3,628)	72.6 (5,256)	64.2 (2,180)	69.9 (7,437)
사회적 연계망 4)	고립형		4.9 (95)	8.5 (435)	7.5 (529)	1.4 (46)	5.6 (575)
	전통적 가족중심형		0 (0)	0 (0)	0 (0)	25.8 (836)	8.1 (836)
	수정가족중심형		8.7 (168)	15.3 (780)	13.5 (948)	2.1 (69)	9.9 (1,017)
	지역사회 중심형		32.5 (627)	25.7 (1,309)	27.6 (1,935)	3.8 (122)	20.1 (2,057)
	소규모 다층형		23.3 (449)	25.4 (1,294)	24.8 (1,743)	39.5 (1,280)	29.5 (3,023)
	대규모 다층형		30.5 (589)	25.1 (1,278)	26.6 (1,867)	27.4 (886)	26.8 (2,75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4) 사회적 관계망의 유형화는 고립형, 가족중심형, 가족중심형, 지역사회 중심형, 소규모 다층형, 대규모 다층형으로 구분하였음. 관계망의 유형은 다양성과 크기를 고려하여 조적적 정의를 통화 유형화하였음. 다양형은 자녀와의 동거여부, 별거자녀와의 밀접한 관계, 지역사회의 연계정도를 고려하였으며, 여기에 연계망의 크기를 반영하여 정의하였으며, 본 유형화의 정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자녀뿐만 아니라 친구·이웃도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 친구·이웃과의 왕래 및 연락 빈도를 살펴보면 긴밀하게 왕래하거나 연락하는 비율이 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경우가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에 비하여 높다. 주 1회 이상 왕래하거나 연락하는 비율의 경우 단독가구 거주 노인은 72.6%로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64.2%보다 약 8% 높다.

또한 사회적 연계망 유형화에 따르면 단독가구 거주 노인에게서는 수정확대가족이, 비단독가구 거주노인에게서는 전통적 가족중심형이 높다. 단독가구 거주 노인에게서는 상대적으로 고립형의 비중이 높고(7.5% 대 1.4%),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에게서는 소규모 다층형(39.5% 대 24.8%)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경우는 고립의 위험이,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에게서는 사회적 연계망의 축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경제상태

단독가구 거주노인의 경제생활 현황을 살펴보면 가구균등화소득이 95.5만원으로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150.6만원의 약 2/3에 불과하다. 더불어 자가소유율도 74.8%로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81.4%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경제적 충분성과 안전성이 모두 낮은 상황임을 볼 수 있다.

유형	일차적 비공식집단(자녀)		이차적 비공식 집단
	자녀와 동거	별거자녀와 밀접한 접촉	친구·이웃, 참여단체
1. 고립형	×	×	×
2. 가족중심형	○	또는 ○	×
3. 지역사회 중심형	×	×	○
4. 다층형: 소규모	○	×	○
	×	○	○
5. 다층형: 대규모	○	○	○
	연계망수	평균이하: 소규모/ 평균이상: 대규모	

경제상태 만족률은 단독가구 거주 노인이 18.6%이고 비단독가구 거주노인이 16.1%로 모두 큰 차이 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후소득의 안전망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공적 연금수급률이 25.8%로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24.2%와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수급률도 각각 63.5%와 64.6%로 유사하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어 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7.1%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며 등록장애인 비율도 14.6%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노인을 위한 공적 제도에 있어서는 단독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적용을 받는 비율은 단독가구 거주 노인에게서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독가구 거주 노인에게서 집중적인 공적인 기본생활 확보가 필요한 노인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 단독가구와 비단독가구의 소득실태 비교

(단위: 만원, %, 명)

	단독가구 노인			비단독가구 노인	노인 전체
	독거노인	노인부부	소계		
가구균등화소득	70.0 (2,094)	105.8 (5,172)	95.5 (7,267)	150.6 (3,408)	113.1 (10,674)
자가소유율	52.4 (1,097)	83.9 (4,340)	74.8 (5,437)	81.4 (2,775)	76.9 (8,212)
경제만족률	11.6 (242)	21.5 (1,100)	18.6 (1,343)	16.1 (538)	17.8 (1,881)
공적연금수급률	19.6 (410)	28.3 (1,463)	25.8 (1,873)	24.2 (826)	25.3 (2,698)
기초노령연금수급률	79.9 (1,673)	56.9 (2,942)	63.5 (4,614)	64.6 (2,201)	63.9 (6,816)
기초생활보장률	15.4 (322)	3.7 (192)	7.1 (513)	4.0 (137)	6.1 (650)
등록장애인 비율	12.6 (264)	15.5 (800)	14.6 (1,064)	11.5 (391)	13.6 (1,455)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한편 지출과 관련해서는[5] 노인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월 평균 지출액은 786만원으로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1,175만원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가구균등화 소득과 유사한 규모의 차이이다. 조사된 소득과 지출을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한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본 〈표 3-4〉에 의하면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적자(deficit)를 보이는 가구비율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39.7%이며, 이는 비단독가구의 15.7%의 24%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한 절대빈곤율도 46.3%로 비단독가구노인의 20.2%의 두 배를 훌쩍 넘고 있다. 즉 모든 지표를 통해서 단독가구 거주 노인이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표 3-4〉 단독가구와 비단독가구의 적자비율 비교

(단위: %, 가구, 명, 천원)

	노인단독가구			비단독가구	노인 전체	노인개인[1]
	노인독거	노인부부	소계			
전체(명)	26.9 (740)	35.5 (976)	62.3 (1,716)	37.7 (1,037)	100.0 (2,753)	100.0 (3,700)
가구소득[2]	718	1,237	955	1,976	1,349	1,331
소비지출액[3]	685	906	786	1,175	936	919
적자가구율[4]	46.8	31.3	39.7	15.7	30.4	30.2
절대 빈곤율[5]	49.5	42.5	46.3	20.2	36.2	38.0

주: 1) 65세 이상 노인 개인단위 기준이며, 가계동향조사는 가구가중치만 제공되므로 해당가구의 노인인구수에 가구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개인가중치를 반영함.
2) 경상소득 기준이며,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한 수치임.
3)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한 수치임.
4) 경상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이 음(-)인 가구를 의미하며, 가구가중치가 반영됨.
5) 최저생계비 기준임.

자료: 통계청, 2012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5) 지출과 관련해서는 노인실태조사에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분석하였음. 본 자료는 가구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주의 연령에 기초하여 연령군 구분이 이루어져 있음. 따라서 지출관련 분석결과는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단위의 분석결과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한편 〈표 3-5〉를 통하여 소비의 구성을 살펴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비중이 27.5%를 차지하고 다음이 주거 및 수도광열비로 22.1%, 보건비가 16.6%로 10%를 넘는 항목들이다. 한편 비단독가구 거주노인의 경우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비중이 19.1%로 가장 구성비가 큰 항목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단독가구 거주노인에 비해서는 8.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즉 단독가구 거주노인의 엥겔지수가 높다는 점에서 이들 노인의 생활수준이 낮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성비가 높은 항목은 주거 및 수도광열비로 12.9%인데, 이 또한 단독가구 거주노인의 22.1%에 비하여 9.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세번째로 구성비가 높은 항목은 음식·숙박비로 12.4%로 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6.5%에 비하여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보건비의 비중은 8.5%인데 이는 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16.6%의 약 1/2에 불과한 것으로 가구지출 중 노인을 위한 보건비 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표 3-6〉은 주요 소비지출 항목(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비, 보건비)의 소비지출 세부금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한 액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빵이나 떡류의 지출이나 육류, 육류가공품, 유제품 및 알, 유지류, 커피 및 차, 쥬스 및 기타음료의 지출액이 비단독가구 거주노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이를 통하여 단독가구 거주노인은 밥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있으며 유제품이나 기호식품의 구매가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 및 수도광열비의 세부항목별 지출액을 비교해보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실제 주거비가 4.5만원으로 비단독가구 거주의 2만원의 두 배를 넘고 있고, 주택유지 및 수선 비용도 2만9천원으로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약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지출에 있어 필수적인 주거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다. 보건비의 경

우는 의약품, 기타 의약품과 치과서비스, 입원서비스에 있어 모두 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단독가구와 비단독가구의 소비지출 구성 비교

(단위: %, 가구, 명, 천원)

특성	노인단독가구			그외 노인가구[2]	노인가구 (전체)	노인개인[3]
	노인독거	노인부부[1]	소계			
전체(명)	26.9 (740)	35.5 (976)	62.3 (1,716)	37.7 (1,037)	100.0 (2,753)	100.0 (3,700)
소비지출[4]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61 (26.9)	217 (28.3)	187 (27.5)	196 (19.1)	191 (24.3)	193 (24.9)
주류 및 담배	7 (1.1)	12 (1.7)	9 (1.4)	16 (1.6)	12 (1.5)	12 (1.5)
의류 및 신발	27 (3.5)	39 (3.7)	33 (3.6)	73 (5.7)	48 (4.4)	47 (4.3)
주거 및 수도광열	173 (24.9)	158 (18.8)	166 (22.1)	133 (12.9)	153 (18.6)	150 (18.3)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6 (4.7)	50 (4.2)	42 (4.5)	49 (3.6)	45 (4.2)	43 (4.1)
보건	102 (14.8)	129 (14.4)	115 (16.6)	97 (8.5)	108 (12.3)	111 (12.6)
교통	33 (4.4)	69 (6.6)	50 (5.4)	157 (11.1)	91 (7.6)	86 (7.5)
통신	21 (3.3)	30 (3.7)	25 (3.5)	72 (6.8)	44 (4.8)	42 (4.8)
오락문화	24 (3.7)	51 (4.5)	36 (4.1)	57 (4.6)	44 (4.3)	44 (4.3)
교육	2 (0.1)	2 (0.2)	2 (0.2)	81 (5.6)	33 (2.3)	30 (2.1)
음식·숙박	42 (5.9)	69 (7.3)	55 (6.5)	144 (12.4)	89 (8.8)	86 (8.7)
기타 상품 및 서비스	56 (6.5)	79 (6.5)	67 (6.5)	100 (7.9)	79 (7.1)	76 (6.9)
계	685 (100.0)	906 (100.0)	786 (100.0)	1,175 (100.0)	936 (100.0)	919 (100.0)

특성	노인단독가구			그외 노인가구[2]	노인가구 (전체)	노인개인[3]
	노인독거	노인부부[1]	소계			
소비지출[5]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61 (26.9)	307 (28.3)	228 (27.5)	370 (19.1)	283 (24.3)	292 (24.9)
주류 및 담배	7 (1.1)	16 (1.7)	11 (1.4)	30 (1.6)	19 (1.5)	18 (1.5)
의류 및 신발	27 (3.5)	55 (3.7)	40 (3.6)	143 (5.7)	80 (4.4)	77 (4.3)
주거 및 수도광열	173 (24.9)	223 (18.8)	196 (22.1)	248 (12.9)	216 (18.6)	216 (18.3)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6 (4.7)	70 (4.2)	52 (4.5)	91 (3.6)	67 (4.2)	65 (4.1)
보건	102 (14.8)	183 (14.4)	139 (14.6)	183 (8.5)	156 (12.3)	163 (12.6)
교통	33 (4.4)	97 (6.6)	63 (5.4)	305 (11.1)	156 (7.6)	147 (7.5)
통신	21 (3.3)	43 (3.7)	31 (3.5)	140 (6.8)	73 (4.8)	71 (4.8)
오락문화	24 (3.7)	73 (4.5)	46 (4.1)	110 (4.6)	71 (4.3)	71 (4.3)
교육	2 (0.1)	3 (0.2)	3 (0.2)	172 (5.6)	68 (2.3)	62 (2.1)
음식·숙박	42 (5.9)	98 (7.3)	68 (6.5)	275 (12.4)	148 (8.8)	144 (8.7)
기타 상품 및 서비스	56 (6.5)	112 (6.5)	82 (6.5)	191 (7.9)	124 (7.1)	119 (6.9)
계	685 (100.0)	1,281 (100.0)	958 (100.0)	2,257 (100.0)	1,459 (100.0)	1,447 (100.0)

주: 1) 부부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을 의미하며, 제특성 구분은 최고령자 기준임.
2) 노인단독가구가 아니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노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제특성 구분은 최고령자 기준임.
3) 65세 이상 노인 개인단위 기준이며, 가계동향조사는 가구가중치만 제공되므로 해당가구의 노인인구수에 가구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개인가중치를 반영함.
4)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한 수치이며 ( )는 %를 의미함.
5)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며 ( )는 %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12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표 3-6〉 단독가구와 비단독가구의 주요 소비지출의 세부금액 비교[1)]

(단위: %, 가구, 명, 천원)

특성	노인단독가구			그외 노인가구[3)]	노인가구 (전체)	노인개인[4)]
	노인독거	노인부부[2)]	소계			
전체(명)	26.9 (740)	35.5 (976)	62.3 (1,716)	37.7 (1,037)	100.0 (2,753)	100.0 (3,70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곡물, 곡물가공품	24 (24)	31 (43)	27 (33)	26 (49)	27 (39)	28 (41)
빵 및 떡류	6 (6)	7 (10)	6 (7)	10 (19)	8 (12)	7 (12)
육류, 육류가공품	20 (20)	33 (47)	26 (32)	31 (60)	28 (43)	29 (45)
신선수산동물, 염건수산동물, 기타수산동물가공	22 (22)	30 (42)	26 (31)	23 (43)	25 (36)	25 (37)
유제품 및 알, 유지류	11 (11)	14 (20)	12 (15)	16 (30)	14 (21)	13 (21)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50 (50)	66 (94)	58 (70)	52 (97)	55 (81)	56 (83)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22 (22)	30 (42)	26 (31)	28 (53)	26 (40)	27 (41)
커피 및 차, 쥬스 및 기타음료	5 (5)	7 (10)	6 (8)	10 (18)	7 (12)	7 (12)
주거 및 수도광열						
실제주거비	59 (59)	29 (41)	45 (51)	20 (36)	36 (45)	32 (42)
주택유지 및 수선	29 (29)	30 (43)	29 (35)	15 (27)	24 (32)	23 (32)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8 (8)	10 (14)	9 (11)	12 (23)	10 (15)	10 (16)
기타주거관련서비스	18 (18)	21 (30)	19 (23)	17 (33)	19 (27)	19 (28)
연료비	60 (60)	67 (95)	63 (76)	69 (129)	65 (96)	65 (98)

특성	노인단독가구			그외 노인가구[3]	노인가구 (전체)	노인개인[4]
	노인독거	노인부부[2]	소계			
보건						
의약품, 기타 의약품	37 (37)	40 (57)	39 (46)	29 (54)	35 (49)	36 (52)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4 (4)	3 (5)	3 (4)	4 (7)	4 (5)	4 (5)
외래의료서비스	28 (28)	35 (50)	31 (38)	28 (52)	30 (43)	31 (45)
치과서비스	16 (16)	24 (34)	20 (24)	17 (32)	19 (27)	19 (28)
기타의료서비스	0.3 (0.3)	1 ((1)	0.6 (0.8)	0.9 (2)	0.7 (1)	0.8 (1)
입원서비스	18 (18)	25 (36)	21 (26)	19 (36)	20 (30)	21 (31)

주: 1)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한 금액이며, ( )는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하지 않은 것임.
2) 부부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을 의미하며, 제특성 구분은 최고령자 기준임.
3) 노인단독가구가 아니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노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제특성 구분은 최고령자 기준임.
4) 65세 이상 노인 개인단위 기준이며, 가계동향조사는 가구가중치만 제공되므로 해당가구의 노인인구수에 가구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개인가중치를 반영함.
자료: 통계청, 2012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다. 건강상태

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평균연령은 비슷하지만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에 비하여 8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ADL 제한율, 낙상경험률, 시력 및 청력, 인지저하자 비율, 낙상경험률 등이 약간씩 낮다. 더불어 건강행위와 관련해서는 건강검진율과 운동실천율이 높다. 그러나 흡연과 과음주율은 더 높아 구성비가 높은 70대 노인들이 아직 흡연과 과음주를 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7〉 단독가구 거주 노인과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비교

(단위: %, 명)

		단독가구 노인						비단독가구 노인		노인 전체	
		독거노인		노인부부		소계					
건강상태	중복질환율	79.1	(1,656)	67.5	(3,491)	70.8	(5,147)	68.8	(2,344)	70.2	(7,492)
	ADL제한율	6.6	(139)	6.0	(312)	6.2	(451)	9.4	(319)	7.2	(770)
	낙상경험률	26.9	(564)	18.1	(934)	20.6	(1,497)	22.3	(761)	21.2	(2,258)
	시력불량률[1]	33.0	(691)	25.8	(1,336)	27.9	(2,027)	32.6	(1,110)	29.4	(3,137)
	청력불량률[1]	24.6	(512)	17.6	(909)	19.6	(1,421)	22.5	(767)	20.5	(2,188)
	씹기불량률[1]	65.1	(1,361)	49.3	(2,548)	53.9	(3,908)	54.8	(1,865)	54.2	(5,773)
	우울증 유병률	41.2	(860)	23.6	(1,210)	28.7	(2,070)	30.1	(1,005)	29.2	(3,075)
	인지저하자비율	15.1	(317)	17.7	(914)	16.9	(1,231)	18.0	(614)	17.3	(1,845)
	건강만족률	25.8	(539)	36.6	(1,875)	33.5	(2,414)	35.0	(1,168)	34.0	(3,582)
건강행위	흡연율	8.7	(184)	14.4	(747)	12.8	(932)	11.6	(395)	12.4	(1,326)
	과음주율	6.6	(138)	18.0	(929)	14.7	(1,067)	10.6	(360)	13.4	(1,426)
	영양관리개선 필요율	5.8	(120)	0.9	(46)	2.3	(165)	1.2	(42)	2.0	(208)
	건강검진율	77.4	(1,621)	85.7	(4,433)	83.3	(6,054)	77.0	(2,625)	81.3	(8,679)
	운동실천율	46.5	(974)	53.0	(2,740)	51.1	(3,714)	47.6	(1,623)	50.0	(5,337)

주: 1) 나쁜편 또는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라. 사회참여

다양한 사회참여실태를 살펴보면 다른 영역에 비하여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표 3-8〉 참조). 단독가구 거주 노인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참가율(36.8% 대 26.8%), 여가문화활동 참가율(광의: 73.6% 대 67.6%)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체활동활동 참여율은 단독가구 거주 노인이 약간 낮은 수준이다. 즉 단독가구 거주 노인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며 조금은 개인단위의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한편,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률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모두 단독가구 거주 노인에게서 높은데, 특히 경로당의 경우 단독가구 거주 노인은 36.4%로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28.4%에 비하여 8% 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관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여가문화활동참가율의 차이는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률로 이어져, 단독가구 거주 노인이 39.5%로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34.9%보다 높다.

노인이 희망하는 노후생활의 모습으로는 단독가구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건강유지가 가장 높아 52%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창출을 하면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싶다는 응답도 20.5%로 높은 편이다. 반면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경우는 편히 쉬기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16.4%이다.

〈표 3-8〉 단독가구 거주 노인과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 실태 비교

(단위: %, 명)

		단독가구 노인						비단독가구 노인		노인 전체	
		독거노인		노인부부		소계					
경제활동참가율		25.5	(534)	41.4	(2,140)	36.8	(2,674)	26.8	(912)	33.6	(3,586)
평생교육	현재 참여율	7.0	(147)	6.8	(351)	6.9	(499)	6.1	(208)	6.6	(706)
	참여 희망률	13.8	(288)	14.9	(762)	14.6	(1,050	14.8	(494)	14.6	(1,544)
여가문화활동	협의의 참여율	26.4	(554)	29.5	(1,526)	28.6	(2,080)	23.5	(801)	27.0	(2,881)
	광의의 참여율	69.6	(636)	75.2	(1,282)	73.6	(5,348)	67.6	(2,305)	71.7	(3,021)
	여가문화활동 만족률	34.1	(711)	41.7	(2,132)	39.5	(2,842)	34.9	(1,162)	38.0	(4,004)
자원봉사활동	현재 참여율	2.4	(51)	4.7	(242)	4.0	(293)	3.3	(113)	3.8	(406)
	참여 희망률	10.6	(127)	10.6	(544)	9.3	(671	11.2	(375)	9.9	(1,045)
단체활동	현재 참여율	22.1	(462)	45.6	(2,359)	38.8	(2,821)	35.7	(1,218)	37.8	(4,039)
	참여 빈도 (월1회이상)	17.2	(360)	35.2	(1,822)	30.3	(2,182)	33.3	(1,015)	29.9	(3,197)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경로당	42.6	(891)	33.9	(1,752)	36.4	(2,643)	28.4	(966)	33.8	(3,609)
	노인복지관	10.5	(220)	8.5	(439)	9.1	(659)	8.4	(286)	8.9	(945)
희망하는 노후생활	소득 창출	13.6	(283)	23.2	(1,189)	20.5	(1,473)	17.6	(588)	19.6	(2,061)
	건강 유지	57.4	(1,196)	50.8	(2,599)	52.7	(3,794)	51.6	(1,720)	52.3	(5,514)
	편히 쉬기	17.7	(369)	12.1	(619)	13.7	(988)	16.4	(546)	14.6	(1,534)
	기타	11.3	(236)	13.9	(711)	13.1	(947)	14.4	(480)	13.5	(1,427)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마. 생활 환경과 안전 실태

물리적 및 심리적 안전실태를 살펴본 〈표 3-9〉에 의하면 단독가구 거주 노인이 물리적으로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파트 거주율이 낮고 생활하기 불편하다고 보이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20.6%로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15.0%보다 5%포인트 정도 높다. 한편 심리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9〉 단독가구 거주 노인과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생활 현황과 안전 실태 비교

(단위: %, 명)

		단독가구 노인						비단독가구 노인		노인 전체	
		독거노인		노인부부		소계					
생활 현황	주택종류 (아파트 거주율)	18.5	(388)	25.5	(1,318)	23.5	(1,706)	32.4	(1,105)	26.3	(2,811)
	불편한 주택 거주율	29.5	(617)	16.9	(876)	20.6	(1,493)	15.0	(511)	18.8	(2,004)
안전 실태	안전사고 경험률	6.4	(135)	4.8	(249)	5.3	(384)	4.0	(135)	4.9	(519)
	학대 경험률	15.8	(330)	11.1	(566)	12.4	(896)	13.2	(439)	12.7	(1,335)
	자살 생각률	15.1	(315)	9.2	(472)	10.9	(787)	11.8	(394)	11.2	(1,181)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제2절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 현황 비교

자녀 또는 다른 친인척과 동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인단독가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독거가구와 배우자와 생활하는 부부가구의 구체적인 생활상에는 차이가 많을 수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독거노인과 배우자와만 생활하는 부부가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일반 특성

〈표 3-1〉을 보면 독거가구의 경우 대부분이 여자로 85.6%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구성을 보면 독거가구의 평균연령이 높아 76세로 노인부부의 72.5세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독거가구의 약 30%가 80세 이상임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 또한 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 거주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독거가구의 절반이 무학인 반면 노인부부가구는 약 1/4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또한, 생존자녀수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생존 형제자매는 부부가구 거주 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가구의 경우 추가적으로 부부간의 교육수준과 연령구성을 비교해볼 수 있다. 〈표 3-10〉과 〈표 3-11〉을 보면 부부간의 상당한 수준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간 연령구성의 경우 부부가 모두 60대로 아직 본격적인 신체적 노화가 시작되기 전인 경우가 24.9%로 부부가구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부가 모두 75세 이상인 비율은 21.3%, 그 외의 연령구성이 53.7%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령구성을 반영하여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가 모두 60대인 경우, 부부가 모두 75세 이상인 부부가구와 그 외의 가구를 구분하여 생활상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0〉 부부가구의 연령 구성

(단위: %, 가구)

남편 / 아내	노인부부가구						독거가구
	65세 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65~69세	14.0	10.9	5.2	1.0	0.1	0.0	15.9
70~74세	3.2	12.9	11.2	4.4	0.5	0.0	27.1
75~79세	0.2	2.9	10.1	8.5	2.0	0.3	28.5
80~84세	0.0	0.1	1.6	4.3	2.3	0.5	19.5
85세 이상	0.0	0.0	0.3	1.1	1.5	0.8	8.9
계	17.5	26.7	28.4	19.3	6.4	1.6	100.0
(가구)	(648)	(991)	(1,054)	(716)	(239)	(59)	(2,094)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노인부부 3,707가구(결측 368가구 제외), 독거 2,094가구.

교육수준의 경우 부부가 동일한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 경우가 45.8%이며 대체적으로 남편의 학력이 아내보다 높은 상향성을 보이고 있다. 부부가 모두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비율은 45.4%, 부부가 모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져 부부가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가 14.3%, 그 외의 경우가 40.3%이다. 본 분석에는 부부가구의 경우 이러한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교육수준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11〉 부부가구의 교육수준 구성

(단위: %, 가구)

남편 / 아내	노인부부가구					독거가구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무학	9.9	10.2	3.3	1.6	0.3	23.3
초등학교	2.1	23.2	10.9	8.5	1.4	32.6
중학교	0.2	1.2	4.1	6.3	2.0	27.9
고등학교	0.0	0.1	0.5	4.6	5.6	13.8
전문대학교 이상	·	·	0.0	0.1	4.0	2.5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노인부부 4,066가구(결측 10가구 제외), 독거 2,094가구.

2. 생활 현황[6)]

노년기 생활의 가장 기반이 되는 가족 및 사회적 자원에 있어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여부를 〈표 3-12〉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사회적 자원과 자녀와의 관계 비교를 통하여 발견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가사서비스나 수발 등과 같은 도구적 도움에 있어 독거노인의 수혜율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정기적 현금지원 수혜율 또한 독거노인에게서 높다. 이러한 점들은 부부가구노인에 비하여 독거노인은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공률은 모든 항목에서 부부가구노인에게서 높다. 즉 부부가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비동거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부양의 수혜와 제공실태를 요약한 부양교환의 유형의 경우 부부가구노인에게서 양방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87.4%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독거노인의 76.4%에 비하여 약 10%포인트 높은 것이며, 반면 부부가구노인은 제공만 하는 유형이 11.3%로 독거노인의 20.7%에 비하여 9.4%포인트 낮다. 이는 독거노인에 비하여 부부가구노인에게서 부양의 활발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주관적인 측면에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에 비하여 부부가구노인에게서 만족률이 높아 78.7%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독거노인에 비하여 13.7%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며 비단독가구노인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

6) 이하 결과는 가구단위의 분석결과임. 이를 위하여 부부가구의 경우는 부부가 모두 조사된 경우 1인만을 선정(생년월일이 빠른 일인)하여 가구단위 자료를 구축하였음. 이는 부부가구 중 부부가 모두 조사된 경우는 약 1/3에 불과하므로 비교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분석결과 개인단위 분석과 가구단위 분석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개인특성과 응답내용이 중요한 경우는 선정된 1인의 응답내용을, 가구단위의 자료가 유의미한 경우(예: 가구소득, 가구지출 등)는 가구단위의 정보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사회적 연계망에 있어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점이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수정가족중심형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부부의 경우는 14.6%가 수정가족중심형으로,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자녀가 있지만 부부가구노인의 경우는 동비율이 8.7%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부가구노인에 비하여 별거자녀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부양의 수혜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 받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생활의 경우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수준 및 구성, 자산, 지출 등의 실태를 비교하였다(〈표 3-13〉 참조). 가구균등화 소득이 독거가구는 70만원, 부부가구는 108만4천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가소유율도 49.6%와 81.1%, 적자가구비율은 46.8%와 31.3%, 절대빈곤율은 49.5%와 42.5%로 모든 지표에 있어서 경제적 삶의 질에 있어 독거노인이 훨씬 낮음을 볼 수 있다.

〈표 3-12〉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가족 및 사회관계 비교

(단위: 명, %, 가구)

			독거가구		부부가구	
			명, %	(가구)[1]	명, %	(가구)[1]
사회적 자원	생존자녀 수 (명)		3.9	(2,032)	3.6	(4,066)
	생존 형제자매 수 (명)		2.3	(2,094)	2.9	(4,077)
	가까운 친구이웃 수 (명)		2.4	(2,094)	2.8	(4,077)
별거자녀와의접촉 및 연락	월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		77.7	(1,948)	83.1	(4,042)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		82.1	(1,948)	86.8	(4,042)
	주1회 이상의 연락 또는 월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		89.1	(1,948)	93.2	(4,042)
별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정서적 도움	수혜율	72.4	(1,962)	71.3	(4,049)
		제공률	57.7	(1,962)	64.4	(4,049)
	가사서비스 도움	수혜율	53.8	(1,962)	48.4	(4,049)
		제공률	9.5	(1,962)	12.4	(4,049)
	수발 도움	수혜율	59.2	(1,962)	50.1	(4,049)
		제공률	5.8	(1,962)	8.4	(4,049)
	정기적 현금 지원	수혜율	50.6	(1,962)	36.0	(4,049)
		제공률	0.5	(1,962)	1.6	(4,049)

			독거가구		부부가구	
			명, %	(가구)[1]	명, %	(가구)[1]
	비정기적 현금 지원	수혜율	91.4	(1,962)	94.1	(4,049)
		제공률	15.9	(1,962)	29.7	(4,049)
	현물지원	수혜율	90.2	(1,962)	92.4	(4,049)
		제공률	47.3	(1,962)	68.0	(4,049)
	부양의 교환 유형	무교환	2.8	(1,962)	0.8	(4,040)
		제공형	0.1		0.5	
		수혜형	20.7		11.3	
		양방향성	76.4		87.4	
자녀와의 관계 만족률			65.0	(1,954)	78.7	(4,003)
친구·이웃과의 접촉	거의 매일 왕래하는 비율		54.5	(2,091)	42.9	(4,077)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		56.5	(2,091)	57.6	(4,077)
	주1회 이상의 왕래 또는 연락하는 비율		77.9	(2,091)	71.7	(4,077)
사회적 연계망 유형	고립형		4.9	(1,927)	8.5	(4,010)
	수정 가족중심형		8.7		14.6	
	지역사회 중심형		32.5		26.2	
	소규모 다층형		23.3		26.8	
	대규모 다층형		30.6		23.9	

주: 1) 분석대상이 된 전체 독거가구수 및 부부가구수임.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한편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적연금수급률이 독거노인 19.6% 부부가구노인은 28.3%로 부부가구노인이 비단독가구 노인의 24.2%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초노령연금수급률은 79.9%와 56.9%로 2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있다. 반면 등록장애인비율은 독거노인 12.6%, 부부가구노인 15.0%이며, 이러한 수준은 모두 비단독가구 노인의 11.5%보다 높은 것이다.

한편 지출실태를 비교해보면 독거노인이 68만5천원이며 부부가구노인은 128만1천원이지만 가구균등화한 부부가구노인의 소비지출액은 90만6천원으로 독거노인과의 차이는 적은 편이다. 또한 소비구성비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경우 주거 및 수도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4.9%로 부부가구노인의 18.8%보다 높다. 세부항목별로 비교해보면 부부가구노인의 경우 육류, 육류가공물 지출액과 신선수산동물 등 모든 식료품 지출

항목별 지출액이 좀 더 많다. 특히 실제 거주비 지출이 높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주거생활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겠다. 반면 부부가구노인의 경우는 보건비의 지출액이 10만 2천원과 12만 9천원(가구균등화지수 반영 전은 18만 3천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외래의료비와 입원의료비의 액수와 비중의 차이는 매우 크다. 또한 부부가구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락문화 및 음식·숙박비의 비중이 높아 좀 더 활동적인 지출행태를 보이고 있다(〈표 3-5〉와 〈표 3-6〉 참조). 즉 독거가구는 기본적인 주거비 지출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부가구는 식품 및 의료비의 지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상태 만족률은 독거가구가 11.6%, 부부가구가 22.6%로 약 두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에 있어서 모두 부부가구노인의 삶의 질이 높은 것이다.

〈표 3-13〉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경제 상태 비교

(단위: 만원, %, 가구)

특성		독거가구		부부가구	
		만원, %	(가구)[1]	만원, %	(가구)[1]
가구균등화 소득(월)		70.0	(2,094)	108.4	(4,077)
소득원별 유무	근로소득	15.9	(2,094)	27.7	(4,077)
	사업소득	14.8	(2,094)	37.4	(4,077)
	재산소득	23.7	(2,094)	41.5	(4,077)
	사적이전	93.8	(2,094)	97.7	(4,077)
	공적이전소득	89.6	(2,094)	84.5	(4,077)
	기타소득	12.5	(2,094)	23.3	(4,077)
가구소득의 소득원별 구성비	근로소득구성비	7.6	(2,094)	13.2	(4,077)
	사업소득구성비	6.3	(2,094)	18.2	(4,077)
	재산소득구성비	6.8	(2,094)	11.0	(4,077)
	사적소득구성비	45.0	(2,094)	27.2	(4,077)
	공적소득구성비	32.6	(2,094)	28.4	(4,077)
	기타소득구성비	1.7	(2,094)	2.1	(4,077)
자가율		49.6	(2,094)	81.1	(4,077)
적자가구율[2]		46.8	(2,094)	31.1	(4,077)
절대 빈곤율[2]		49.5	(2,094)	42.5	(4,077)

특성		독거가구		부부가구	
		만원, %	(가구)[1]	만원, %	(가구)[1]
기초생활보호대상율		15.2	(2,094)	3.5	(4,034)
등록장애인율		12.6	(2,094)	15.0	(4,077)
부동산 자산	보유율	72.4	(2,094)	93.2	(4,077)
	규모(전체)	2092.1	(2,092)	27772.7	(4,064)
	규모(소유자만)	12815.9	(1,154)	29670.4	(3,790)
금융자산	보유율	78.2	(2,094)	89.3	(4,077)
	규모(전체)	2086.0	(2,086)	3395.3	(4,026)
	규모(소유자만)	1198.9	(1,692)	3809.6	(3,588)
부채	보유율	15.8	(2,094)	33.1	(4,077)
	규모(전체)	2092.2	(2,092)	1916.3	(4,062)
	규모(소유자만)	4664.2	(329)	5831.3	(1,335)
주택	소유율(자가+명의)	52.4	(2,094)	84.0	(4,077)
	시가(자가+명의)	12260.8	(1,086)	20425.7	(2,822)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63.4	(2,094)	123.4	(3,389)
생활비 주부담자	본인 스스로	34.0	(2,094)	44.8	(4,077)
	(손)자녀 및 그 배우자	48.2		21.7	
	정부 및 사회단체	17.2		5.2	
	기타(배우자 포함)	0.6		28.3	
경제상태 만족률		11.6	(2,086)	22.6	(4,034)

주: 1) 분석대상이 된 전체 독거가구수 및 부부가구수임.
2) 〈표 3-4〉 참조.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건강상태의 경우 대부분의 지표에 있어 독거가구의 지표가 모두 좋지 않아 단독가구 중 독거가구의 건강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함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독거가구의 경우 특히 씹기 상태가 좋지 않고(65.1%) 낙상경험률이 높으며(26.9%), 우울증 유병률(41.2%)이 특히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에 비하여 낮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요한다. 또한 독거가구의 음주나 흡연율은 낮지만 적극적인 건강행위인 운동이나 건강검진율이 부부가구에 비하여 월등히 낮아서(운동실천율: 46.5% 대 54.1%, 건강검진율: 77.4% 대 85.7%) 건강관리 또한 소홀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관적인 건강만족률에도 이어져 부부가구의 만족률이 독거가구에 비하여 10%포인트 이상 높다(〈표 3-14〉 참조).

〈표 3-14〉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건강 상태 비교

(단위: 개, %, 가구)

특성				독거가구		부부가구	
				개, %	(가구)[1]	개, %	(가구)[1]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 (의사진단)		0개	5.9	(2,094)	13.6	(4,077)
			1개	15.1		21.2	
			2개	23.2		24.7	
			3개 이상	55.8		40.5	
			(평균(개))	3.0	(2,094)	2.4	(4,077)
	기능상태 제한 상태		기능제한 없음	83.0	(2,094)	89.9	(4,077)
			IADL만 제한	10.4		4.5	
			ADL도 제한	6.6		5.7	
	감각 기능	시력	불량률(나쁜편+나쁨)	33.0	(2,091)	21.7	(4,075)
			보조기 사용률	54.3	(2,094)	60.9	(4,077)
		청력	불량률(나쁜편+나쁨)	24.6	(2,085)	12.1	(4,066)
			보조기 사용률	4.2	(2,094)	3.7	(4,077)
		씹기	불량률(나쁜편+나쁨)	65.1	(2,090)	27.3	(4,074)
			보조기 사용률	61.7	(2,094)	48.1	(4,077)
	우울증상 유병률			41.2	(2,087)	21.9	(4,034)
	인지저하자비율(MMSE-KC)			15.1	(2,094)	17.5	(4,077)
	낙상률			26.9	(2,094)	17.3	(4,077)
	건강에 대한 만족률			25.9	(2,087)	40.1	(4,036)
건강행위	흡연율			8.7	(2,094)	15.9	(4,076)
	과음주율			6.5	(2,094)	20.3	(4,076)
	운동실천율			46.5	(2,094)	54.1	(4,077)
	건강검진 수진율			77.4	(2,094)	85.7	(4,077)
	건강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15.1	(2,094)	11.8	(4,076)
	영양관리 상태		양호(0~2점)	38.9	(2,068)	80.8	(4,058)
			영양관리주의요구(3~5점)	55.3		18.3	
			영양관리개선필요(6점 이상)	5.8		0.9	
			(평균(점))	3.0	(2,068)	1.5	(4,058)

주: 1) 분석대상이 된 전체 독거가구수 및 부부가구수임.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사회참여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점이 발견되었다(〈표 3-15〉 참조). 독거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25.5%로 부부가구노인의 43.5%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가문화활동, 자

원봉사, 단체활동 등에 있어서 부부가구가 독거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구의 여가만족률이 42.9%로 독거가구의 34.1% 보다 높다.

〈표 3-15〉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사회참여 실태 비교

(단위: %, 가구)

특성		독거가구		부부가구	
		%	(가구)[1]	%	(가구)[1]
경제활동참가율		25.5	(2,094)	43.5	(4,077)
평생교육	현재 참여율	7.1	(2,094)	6.2	(4,077)
	참여 희망률	13.8	(2,087)	14.6	(4,034)
여가문화활동	협의의 참여율	26.4	(2,094)	29.3	(4,077)
	광의의 참여율	69.6	(2,094)	76.1	(4,076)
	여가문화활동 만족률	34.1	(2,082)	42.9	(4,028)
자원봉사활동	현재 참여율	2.4	(2,094)	5.5	(4,077)
	참여 희망률	6.1	(2,086)	12.0	(4,033)
단체활동	현재 참여율	22.1	(2,094)	47.9	(4,077)
	참여빈도(월1회 이상)	17.2	(2,094)	37.1	(4,077)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률	경로당	42.6	(2,094)	32.5	(4,077)
	노인복지관	10.5	(2,094)	7.9	(4,077)
희망하는 노후형태	소득창출	13.6	(2,085)	26.2	(4,034)
	건강유지	57.3		47.8	
	편히 쉰다	17.7		11.9	
	기타(취미활동. 종교활동)	11.4		14.1	

주: 1) 분석대상이 된 전체 독거가구수 및 부부가구수임.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한편 〈표 3-16〉을 통하여 생활 환경과 안전 실태를 살펴보면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가 분명하여, 독거가구에서 아파트 거주율(18.5% 대 25.5%)이 낮고, 생활하기 불편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29.5%로 부부가구의 16.2%보다 월등히 높을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경험률도 높다. 학대경험률이나 자살생각률에 있어서도 독거가구가 부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신체적·심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3-16〉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 환경과 안전 실태 비교

(단위: %, 가구)

특성			독거가구		부부가구	
			%	(가구)[1]	%	(가구)[1]
생활 환경	주택종류	단독주택	62.9	(2,094)	58.4	(4,076)
		아파트	18.5		25.5	
		연립주택	3.6		3.3	
		다세대	12.4		9.8	
		기타	2.6		3.0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율		29.5	(2,094)	16.2	(4,077)
안전 실태	안전사고 경험률		6.5	(2,094)	4.3	(4,074)
	학대 경험률		15.8	(2,085)	11.3	(4,034)
	자살 생각률		15.1	(2,086)	9.3	(4,033)

주: 1) 분석대상이 된 전체 독거가구수 및 부부가구수임.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제3절 노인단독가구의 제특성별 생활 현황

본절은 제특성별 생활 현황에 있어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서 초점을 둔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지역, 연령, 성,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교육수준과 경제상태이다. 이중 지역과 가구소득은 부부가 모두 공유하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주요 관심변수이다. 또한 연령과 교육수준은 가구원 사항 조사에서 개인조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되었으므로 부부 모두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부부가구 분석에서는 부부의 연령과 교육수준을 반영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7].

7) 이하 분석표에는 가독성 제고를 위하여 사례수 보고를 생략하고자 함. 제2절의 관련표에 제시된 사례수에서 각 항목별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1. 가족 및 사회 관계

제특성별 가족 및 사회관계를 비교해보면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표 3-17〉~〈표 3-20〉 참조). 첫 번째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유사하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도시에 비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 생존자녀 및 손자녀수가 많다. 이는 이들이 공유하는 동시대인으로서의 공통점 때문일 것이다. 연령이 높은 노인은 그 시대의 높은 출산력으로 인하여 자녀와 손자녀를 많이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연령이 높거나 전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도 동일하여 수준이 높은 경우 생존자녀와 손자녀가 적은 반면 가까운 친구·이웃의 수가 많은 경향성을 공유하고 있다. 즉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인적·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은 정비례하는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둘째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연락에 있어 제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성은 동일하지만 그 강도에 있어 몇 가지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3-19〉와 〈표 3-20〉 참조). 연령에 따른 별거자녀와의 접촉·연락 빈도의 차이는 독거가구보다는 부부가구에서 좀 더 분명한데, 이는 평균적으로 독거가구의 경우 자녀와의 접촉·연락빈도가 부부가구보다 낮아서 특성별 변이가 발생할 여지가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독거부부의 경우 더 분명하게 도출되었다. 독거가구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연락빈도가 낮지만 부부가구의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독거가구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비동거 자녀가 타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요인 중 하나인 것으

로 판단된다.

셋째,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에 있어서 제특성별 유사한 경향성이 발견된다. 즉 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외하고는 도움을 받는 수혜율이 도시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이 높다.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적 수혜율과 제공률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사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수혜율은 증가하고 제공률은 감소한다. 그러나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에 있어서 부부가구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독거가구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을 받는 비율의 차이가 뚜렷하다. 또한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교육수준이 높으면 가사서비스 수혜율이 낮고 제공률이 높은 경향성이 발견된다. 또한 가구소득의 경우는 중간층이 가장 수혜율과 제공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부양의 교환실태를 종합한 교환의 유형에 있어서 특성별 제공형의 비중은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방적인 제공형의 비중이 도시지역에서 높은 것은 독거·부부가구에서 공통적이지만 부부가구가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제공형의 비중이 독거의 경우 23.4%와 16.5%로 농어촌 지역 독거가구가 약 2/3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부부가구의 경우는 14.7%와 5.4%로 약 1/3에 불과하다. 또한 가구소득별 유형 분포에서는 독거가구의 비하여 부부가구의 경우 양방향성의 비중이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뚜렷히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3-17〉 노인단독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별거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1. 독거가구

(단위: %, 명, 가구)

특성	지역		연령					성		전체
	동부	읍·면부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남자	여자	
생존자녀 수	3.50	4.41	3.00	3.79	4.01	4.36	4.04	3.41	3.94	3.86
생존 형제자매 수	2.38	2.21	2.91	2.89	2.25	1.68	1.09	2.26	2.32	2.31
가까운 친구이웃 수	2.34	2.43	2.80	2.45	2.36	2.10	2.04	2.64	2.33	2.38
접촉 및 연락										
월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	78.6	76.6	70.7	80.3	77.7	78.1	81.0	67.7	79.3	77.7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	80.2	84.9	80.5	84.5	80.3	82.1	83.8	71.1	83.8	82.1
주1회 이상의 연락 또는 월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	87.8	91.0	85.9	90.8	88.7	88.4	92.5	76.7	91.1	89.1
도움의 교환										
정서적 도움										
수혜율	69.3	76.9	74.0	75.7	73.9	63.9	72.8	59.7	74.4	72.4
제공률	54.9	62.0	62.0	64.4	57.1	50.8	46.2	43.8	60.0	57.7
가사서비스 도움										
수혜율	47.8	62.6	47.2	50.8	51.8	57.6	72.4	49.1	54.5	53.8
제공률	9.5	9.6	17.0	13.0	6.4	6.5	2.3	2.6	10.7	9.5
수발 도움										
수혜율	55.3	65.0	47.2	56.8	60.5	63.8	74.1	45.4	61.5	59.2
제공률	6.2	5.2	8.7	9.0	4.3	2.9	1.7	4.8	5.9	5.8
정기적 현금지원										
수혜율	51.4	49.6	34.1	48.3	53.9	56.3	63.0	34.4	53.3	50.6
제공률	0.5	0.5	0.3	0.9	0.5	0.5	0.0	1.1	0.4	0.5
비정기적 현금지원										
수혜율	89.2	94.7	89.7	90.6	92.2	91.6	94.2	81.7	93.0	91.4
제공률	18.3	12.2	19.7	16.7	16.3	12.6	12.1	22.7	14.7	15.9
현물지원										
수혜율	87.3	94.6	87.3	90.6	88.8	91.9	94.3	82.1	91.5	90.2
제공률	38.1	60.8	58.7	53.9	45.6	38.8	30.6	37.7	48.8	47.3
부양의 교환 유형										
무교환	4.0	1.0	4.7	2.0	3.6	1.6	1.7	7.7	2.0	2.8
제공형	0.1	0.1	0.7	0.0	0.0	0.0	0.0	0.4	0.1	0.1
수혜형	23.4	16.5	15.0	15.8	18.3	28.1	37.0	28.9	19.3	20.7
양방향성	72.5	82.3	79.7	82.2	78.2	70.3	61.3	63.0	78.6	76.4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률	60.3	71.8	69.1	65.3	63.1	61.4	71.1	53.7	66.8	65.0

2. 부부가구

특성	지역		연령			전체
	동부	읍·면부	부부 모두 70세 미만	부부 모두 75세 이상	그 외 연령군	
생존자녀 수	3.30	4.19	2.98	4.54	3.70	3.62
생존 형제자매 수	2.92	2.73	3.32	1.88	2.82	2.85
가까운 친구이웃 수	2.90	2.62	3.09	2.24	2.72	2.79
접촉 및 연락						
월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	84.6	80.4	80.9	86.4	81.9	83.1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	85.9	88.2	87.3	88.4	85.1	86.8
주1회 이상의 연락 또는 월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	92.8	93.8	92.1	94.6	92.5	93.2
도움의 교환						
정서적 도움						
수혜율	69.6	74.1	74.7	69.1	70.6	71.3
제공률	63.3	66.5	69.9	57.0	64.2	64.4
가사서비스 도움						
수혜율	44.4	55.4	47.2	56.5	47.2	48.4
제공률	13.2	11.1	13.8	8.0	12.6	12.4
수발 도움						
수혜율	47.6	54.4	41.5	61.0	50.8	50.1
제공률	8.9	7.6	9.0	5.6	7.9	8.4
정기적 현금지원						
수혜율	39.4	29.9	30.0	49.7	36.5	36.0
제공률	2.0	0.9	2.2	0.6	1.7	1.6
비정기적 현금지원						
수혜율	92.6	96.8	93.9	92.9	91.6	94.1
제공률	31.2	27.2	33.7	24.8	28.4	29.7
현물지원						
수혜율	90.8	95.3	93.9	92.9	91.6	92.4
제공률	59.5	82.9	69.6	58.4	70.1	68.0
부양의 교환 유형						
무교환	1.1	0.2	0.4	0.6	1.2	0.8
제공형	0.7	0.2	0.1	0.1	0.9	0.5
수혜형	14.7	5.4	10.1	17.1	10.0	11.3
양방향성	83.5	94.2	89.4	82.1	88.0	87.4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률	77.1	81.5	80.2	74.9	79.1	78.7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표 3-18〉 노인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별거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1. 독거가구

(단위: %, 가구)

특성	교육수준					경제상태					전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생존자녀 수	4.13	3.69	3.38	3.03	3.43	3.79	3.97	3.66	4.14	4.05	3.86
생존 형제자매 수	2.07	2.53	2.75	2.85	2.64	2.06	2.39	2.70	2.87	4.19	2.31
가까운 친구이웃 수	2.20	2.53	2.15	2.90	3.80	2.03	2.53	2.77	3.19	4.42	2.38
접촉 및 연락											
월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	77.3	80.7	70.8	75.0	78.4	71.7	79.6	85.8	92.7	92.3	77.7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	83.1	82.4	77.5	78.8	76.5	74.4	85.9	89.0	96.4	100.0	82.1
주1회 이상의 연락 또는 월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	90.8	88.9	82.5	85.5	80.0	85.2	91.0	92.1	96.4	100.0	89.1
도움의 교환											
정서적 도움											
수혜율	71.3	76.1	65.6	73.7	70.0	66.9	75.6	77.3	75.0	76.9	72.4
제공률	55.3	62.5	56.3	61.7	52.9	50.6	61.6	64.8	62.5	75.0	57.7
가사서비스 도움											
수혜율	57.7	52.5	42.2	51.1	19.6	50.1	57.5	54.3	46.4	53.8	53.8
제공률	8.4	12.9	5.5	10.4	5.9	7.3	11.0	11.8	8.9	0.0	9.5
수발 도움											
수혜율	62.6	59.4	45.7	55.2	29.4	54.7	61.7	63.5	67.9	53.8	59.2
제공률	5.4	6.8	3.1	8.2	3.9	4.1	7.2	7.5	1.8	0.0	5.8
정기적 현금지원											
수혜율	50.4	54.9	41.4	53.4	23.5	42.2	61.3	42.0	50.9	33.3	50.7
제공률	0.0	1.5	0.8	0.0	2.0	0.0	0.7	1.2	0.0	0.0	0.5
비정기적 현금지원											
수혜율	92.9	92.2	87.5	86.6	70.6	90.3	92.0	91.8	92.9	100.0	91.4
제공률	12.9	16.4	21.9	29.1	27.5	9.7	16.0	29.7	35.7	25.0	15.9
현물지원											
수혜율	92.2	90.7	81.3	87.2	70.6	87.7	92.5	91.0	85.5	100.0	90.2
제공률	47.1	52.1	45.3	39.1	25.5	37.8	52.5	60.5	37.5	61.5	47.3
부양의 교환 유형											
무교환	1.9	2.4	8.6	4.5	7.8	4.3	1.8	2.4	0.0	0.0	2.8
제공형	0.0	0.0	0.8	0.8	0.0	0.3	0.0	0.0	0.0	0.0	0.1
수혜형	24.1	15.3	14.8	18.0	25.5	27.6	17.6	9.8	23.2	0.0	20.7
양방향성	74.0	82.3	75.8	76.7	66.7	67.8	80.6	87.8	76.8	100.0	76.4
자녀와의 관계 만족률	63.7	68.4	57.8	69.2	62.0	53.0	70.4	77.0	89.1	83.3	65.0

2. 부부가구

특성	교육수준			경제상태					전체
	부부 모두 초등 학교 이하	부부 모두 고등 학교 이상	그 외 학력군	50 만원 미만	50~ 100 만원 미만	100~ 200 만원 미만	200~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생존자녀 수	4.00	2.79	3.49	3.82	3.80	3.42	3.06	2.94	3.62
생존 형제자매 수	2.56	3.24	3.04	2.47	2.67	3.23	3.12	3.64	2.85
가까운 친구이웃 수	2.39	3.74	2.92	2.12	2.44	3.27	4.01	4.72	2.79
접촉 및 연락									
월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	80.9	82.8	85.6	79.5	80.8	87.6	84.7	92.4	83.1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	84.4	89.2	88.4	76.1	86.2	91.2	92.9	100.0	86.8
주1회 이상의 연락 또는 월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	92.1	94.4	93.9	87.3	92.1	96.7	97.2	100.0	93.2
도움의 교환									
정서적 도움									
수혜율	70.3	71.1	72.4	69.1	71.2	72.9	70.2	71.2	71.3
제공률	61.4	68.4	66.6	56.9	63.0	69.2	69.5	73.7	64.4
가사서비스 도움									
수혜율	51.5	40.5	47.8	44.8	50.3	50.7	37.4	44.1	48.4
제공률	9.9	15.4	14.3	10.8	11.3	15.5	11.7	11.9	12.4
수발 도움									
수혜율	53.2	38.2	50.8	51.0	52.7	49.4	38.1	38.1	50.1
제공률	6.8	11.8	9.0	4.5	8.2	10.0	7.8	21.2	8.4
정기적 현금지원									
수혜율	35.6	29.2	38.7	42.9	42.5	27.1	21.0	14.4	36.0
제공률	0.8	5.2	1.2	0.1	0.4	2.3	4.3	13.6	1.6
비정기적 현금지원									
수혜율	94.9	92.6	94.0	95.8	94.0	95.2	90.0	85.6	94.1
제공률	22.3	45.3	32.5	14.9	22.2	38.6	59.4	76.3	29.7
현물지원									
수혜율	92.8	92.2	92.0	91.0	91.4	93.9	93.6	99.2	92.4
제공률	69.8	69.9	65.3	54.3	66.6	73.7	79.4	89.0	68.0
부양의 교환 유형									
무교환	0.5	0.9	1.0	1.2	1.2	0.1	0.0	0.0	0.8
제공형	0.6	0.0	0.6	0.4	0.9	0.0	0.0	0.0	0.5
수혜형	12.2	8.3	11.5	20.0	11.9	8.3	3.9	0.0	11.3
양방향성	86.7	90.8	86.9	78.4	86.0	91.6	96.1	100.0	87.4
자녀와의 관계 만족률	77.9	82.3	78.3	65.7	79.3	83.2	79.5	98.3	78.7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표 3-19〉 노인단독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친구·이웃과의 접촉·연락빈도 및 사회적 연계망

1. 독거가구

(단위: %, 명, 가구)

특성	지역		연령					성		전체
	동부	읍·면부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남자	여자	
친구·이웃										
거의 매일 접촉하는 비율	44.9	69.4	50.9	52.8	59.4	52.0	55.6	41.9	56.6	54.5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	58.3	53.6	65.0	59.4	56.3	53.6	39.6	46.8	58.1	56.5
주1회 이상의 연락 또는 접촉하는 비율	73.8	84.3	76.6	77.5	81.0	76.2	74.5	63.1	80.3	77.9
사회적 연계망										
고립형	7.1	1.8	9.3	4.9	4.0	3.7	3.4	12.0	3.8	4.9
수정 가족중심형	11.9	4.1	7.9	10.1	7.8	7.9	9.8	12.4	8.1	8.7
지역사회 중심형	26.5	41.2	34.5	29.9	34.6	33.5	29.3	36.0	32.0	32.5
소규모 다층형	25.9	19.5	25.5	24.9	21.1	20.1	28.2	19.8	23.8	23.3
대규모 다층형	28.6	33.4	22.8	30.3	32.4	34.8	29.3	19.8	32.2	30.6

2. 부부가구

특성	지역		연령			전체
	동부	읍·면부	부부 모두 70세 미만	부부 모두 75세 이상	그 외 연령군	
친구·이웃						
거의 매일 접촉하는 비율	31.0	63.5	36.1	44.0	46.0	42.9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	57.0	58.8	66.0	43.5	57.4	57.6
주1회 이상의 연락 또는 접촉하는 비율	65.9	81.7	73.8	63.0	73.4	71.7
사회적 연계망						
고립형	11.0	4.1	10.2	6.6	9.0	8.5
수정 가족중심형	20.0	5.2	18.1	16.6	11.3	14.6
지역사회 중심형	19.0	38.6	21.1	27.2	28.5	26.2
소규모 다층형	28.3	24.4	32.1	18.7	26.5	26.8
대규모 다층형	21.7	27.7	18.5	30.9	24.7	23.9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표 3-20〉 노인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친구·이웃과의 접촉·연락빈도 및 사회적 연계망

1. 독거가구

(단위: %, 명, 가구)

특성	교육수준					경제상태					전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친구·이웃											
거의 매일 접촉하는 비율	61.8	50.6	42.0	31.5	30.8	59.3	52.9	48.9	37.5	23.1	54.5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	52.3	65.1	51.7	56.8	64.2	51.0	59.3	64.5	53.6	83.3	56.5
주1회 이상의 연락 또는 접촉하는 비율	78.9	80.4	71.1	66.2	77.4	77.9	78.6	76.7	67.9	84.6	77.8
사회적 연계망											
고립형	2.9	5.3	11.0	13.1	8.3	4.5	5.2	5.2	3.6	7.7	4.9
수정 가족중심형	7.9	7.2	11.9	13.8	22.9	6.3	8.3	13.1	16.1	53.8	8.7
지역사회 중심형	35.8	31.4	28.8	16.9	20.8	40.0	30.4	21.4	19.6	0.0	32.5
소규모 다층형	21.9	24.3	21.2	31.5	25.0	22.8	23.5	27.4	14.3	7.7	23.4
대규모 다층형	31.4	31.8	27.1	24.6	22.9	26.5	32.6	32.9	46.4	30.8	30.6

2. 부부가구

특성	교육수준			경제상태					전체
	부부 모두 초등학교 이하	부부 모두 고등학교 이상	그 외 학력군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친구·이웃									
거의 매일 접촉하는 비율	52.3	23.2	39.2	45.1	45.1	40.7	38.8	25.4	42.9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	53.3	73.3	56.8	47.0	55.4	62.3	68.7	82.2	57.6
주1회 이상의 연락 또는 접촉하는 비율	72.7	76.9	68.6	67.0	70.2	74.3	77.7	83.9	71.7
사회적 연계망									
고립형	6.3	13.6	9.1	14.3	7.8	6.7	8.8	1.7	8.5
수정 가족중심형	11.7	21.5	15.2	9.0	14.0	17.5	18.4	17.8	14.6
지역사회 중심형	31.7	18.0	22.9	31.6	28.8	20.8	22.3	16.1	26.2
소규모 다층형	25.2	26.7	28.9	22.1	27.6	28.2	26.1	29.7	26.8
대규모 다층형	25.1	20.2	23.9	22.9	21.8	26.7	24.4	34.7	23.9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넷째, 친구·이웃 등 Cantor의 분류에 의한 2차 비공식관계에서의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에 있어 농어촌지역에서의 활발한 접촉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되었고 교육수준이 낮거나 높은 가구에서 친구·이웃과의 접촉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제상태에 따른 경향성에서는 차이가 있어 독거가구의 경우는 고립형과 수정가족중심형의 비중에서의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지만 부부가구의 경우는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대규모 다층형의 비중이 뚜렷이 높다.

한편 독거가구인 경우 성별 차이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자원은 여자의 경우 더 많고 더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고 부양의 교환도 활발하지만 가까운 친구·이웃은 남자가 더 많다. 그러나 실제 친구·이웃과의 접촉은 여자가 더 활발하다. 종합하여 사회적 연계망 유형을 비교해보면 남자는 고립형이 여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여자는 다층형이 많다.

이상과 같은 노인단독가구의 제특성별 가족 및 사회관계분석에서 도출된 노인단독가구의 다양성을 정리해보면 〈표 3-21〉과 같다.

〈표 3-21〉 가족 및 사회관계 관련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제특성별 다양성

영역	독거가구	부부가구
지역	**(손)자녀수가 도시에 비하여 농어촌에서 많음** (독거가구:3.5명 대 4.4명, 부부가구: 3.3.명 대 4.2명) **도시에 비하여 농어촌의 많은 자녀와 자녀로부터의 부양의 수혜** 자녀로부터의 수혜율: 도시〈농어촌 (단, 정기적인 현금지원은 예외)	
	수혜형의 비중 도시〉농어촌 (23.4% 대 16.5%)	도시〉〉농어촌 (14.7% 대 5.4%)
	농어촌 지역에서의 친구·이웃과의 활발한 접촉 (주1회 이상의 연락 또는 접촉율: 독거가구 73.8% 대 84.3%, 부부가구 65.9% 대 81.7%)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손)자녀수, 형제자매수 많음**	
	연령에 따른 비동거자녀와의 접촉 빈도의 차이: 독거〉부부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적 수혜율 및 제공률 감소	
	연령이 높을수록 가사서비스와 경제적 지원 수혜율 증가, 제공률 감소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의 수혜율 증가, 제공률 감소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의 차이 적음**
성	가족자원, 접촉 빈도: 여자〉남자	-
	친구·이웃수: 여자〈남자	-
	친구·이웃과의 접촉: 여자〉남자	-
	고립형: 여자(3.7%)〈남자(12.0%)	-
	다층형: 여자(56.0%)〉남자(39.6%)	-
교육수준	높을수록 **(손)자녀수, 형제자매수가 적고 가까운 친구·이웃이 많은 경향**	
	높을수록 비동거자녀와의 접촉 빈도 낮음	대체적으로 교육수준과 무관
	높을수록 가사서비스 수혜율 낮고 제공률 높음	
	교육수준이 높거나 낮은 경우 친구·이웃과 활발한 접촉	
소득수준	높을수록 (손)자녀수, 형제자매수가 적고 가까운 친구·이웃이 많은 경향	
	중간층이 비동거자녀와의 부양의 수혜율과 제공률 모두 높음	
	높을수록 양방향형의 비중 높음(독거가구: 67.8%~100.0%, 부부가구: 78.4%~96.1%)	
	수준이 높을수록 고립형과 수정가족중심형 비중 높음	수준이 높을수록 대규모 다층형의 비중이 높은 경향 뚜렷

2. 경제 상태

경제상태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첫째, 가구소득은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공통적으로 도시지역이 더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많으며 교육수준과 정비례하는 관계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은 근로소득이 농어촌 지역은 사업소득이 높다는 특징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전 소득에 있어서는 가구형태별 지역별 차이의 양상이 다르다. 즉 독거가구의 경우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 거주인 경우 사적소득의 구성이 높고 공적소득 구성비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없다. 반면 부부가구의 경우는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 모두 도시지역에서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사적소득의 구성비가 낮은 대신 공적 소득의 구성비가 높다는 특징은 부부가구에서는 분명하게 관찰되지만 독거가구의 경우는 경향성이 약하다. 이는 전체적으로 독거가구의 경우 사적소득 구성이 45.0%에 달하여 부부가구의 27.2%보다 월등히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3-22〉와 〈표 3-23〉 참조).

한편 자산실태를 살펴보면 독거가구나 부부가구 사이에 구체적인 양상의 차이가 도출되었는데, 독거가구의 경우 부동산 보유율이 도시지역이 높은 반면(77.0% 대 65.2%), 부부가구의 경우는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는 도시지역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부동산 보유율이나 금융자산 보유율에서는 교육수준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소유액은 교육수준과 정비례하는 관계성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재산 보유율에서는 독거가구나 부부가구 모두 보유율은 농어촌이 높지만 보유액수 자체는 도시지역이 높은 공통점이 도출되었다.

경제적 측면의 공적 보호에 있어서도 독거가구나 부부가구 모두 도시 지역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생활보호 대상율이 높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독거가구의 절대적인 경제수준이 낮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등록장애인율에 있어서는 가구형태별 차이고 적을 뿐만 아니라 특성별 차이도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상이한 특징을 볼 수 있다(〈표 3-24〉와 〈표 3-25〉 참조).

독거가구의 경우 성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을 많이 갖고 있지만, 여자는 기초노령연금과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노인단독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소득원, 구성비 및 공적 보호 실태

1. 독거가구

(단위: 만원, %, 가구)

특성	지역		연령					성		전체
	동부	읍·면부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남자	여자	
가구균등화 소득(월)	75.2	62.0	82.1	75.3	64.8	65.8	58.5	94.1	66.0	70.0
가구소득의 소득원별 소유율										
근로소득	17.6	13.2	30.8	21.9	12.4	6.9	1.6	23.3	14.7	15.9
사업소득	7.7	25.8	26.4	17.6	13.7	6.6	6.4	15.6	14.6	14.8
재산소득	23.9	23.5	27.5	27.7	21.4	21.6	16.0	29.1	22.8	23.7
사적이전	91.5	97.4	88.3	95.1	94.0	95.1	95.7	85.7	95.1	93.8
공적이전소득	86.0	95.3	83.8	90.7	89.3	91.9	93.1	87.7	90.0	89.6
기타소득	9.7	16.7	13.8	12.9	12.1	11.5	11.8	13.6	12.3	12.5
가구소득의 소득원별 구성비										
근로소득구성비	8.7	5.8	17.8	9.5	5.4	2.9	0.5	14.9	6.3	7.6
사업소득구성비	4.1	9.6	12.4	7.5	5.2	2.5	3.2	6.0	6.3	6.3
재산소득구성비	8.5	4.2	9.2	8.5	5.7	5.7	3.6	10.1	6.3	6.8
사적소득구성비	43.8	46.9	28.6	42.2	50.1	50.9	54.0	32.6	47.1	45.0
공적소득구성비	32.9	32.3	30.3	30.7	32.5	35.2	37.8	34.8	32.2	32.6
기타소득구성비	2.0	1.2	1.7	1.6	1.2	2.9	1.1	1.6	1.7	1.7
기초생활보호율	17.8	11.1	16.5	11.3	15.6	17.4	18.9	16.6	14.9	15.2
등록장애인율	12.4	12.9	15.3	14.8	14.2	8.6	4.8	17.6	11.8	12.6

2. 부부가구

특성	지역		연령			전체
	동부	읍·면부	부부 모두 70세 미만	부부 모두 75세 이상	그 외 연령군	
가구균등화 소득(월)	118.3	91.3	126.8	87.0	103.0	108.4
가구소득의 소득원별 소유율						
근로소득	31.8	20.6	35.2	12.1	26.6	27.7
사업소득	18.0	71.1	42.9	26.4	37.8	37.4
재산소득	42.7	39.5	41.2	36.5	45.2	41.5
사적이전	97.1	98.9	98.3	99.0	97.1	97.7
공적이전소득	82.8	87.4	85.1	86.5	84.3	84.5
기타소득	9.7	46.9	22.4	19.9	26.7	23.3
가구소득의 소득원별 구성비						
근로소득구성비	16.5	7.6	19.1	3.7	11.8	13.2
사업소득구성비	9.8	33.0	24.0	10.8	17.3	18.2
재산소득구성비	13.4	6.8	10.2	10.7	11.9	11.0
사적소득구성비	28.3	25.2	20.0	39.5	28.1	27.2
공적소득구성비	30.8	24.2	25.0	33.4	28.5	28.4
기타소득구성비	1.5	3.2	2.0	2.0	2.4	2.1
기초생활보호율	4.5	1.8	2.9	3.8	4.0	3.5
등록장애인율	15.1	14.8	16.6	14.3	14.9	15.0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표 3-23〉 노인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소득원, 구성비 및 공적 보호 실태

1. 독거가구

(단위: 만원, %, 가구)

특성	교육수준					경제상태					전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가구균등화 소득(월)	58.0	73.9	84.2	96.7	182.4	38.3	66.3	133.2	230.9	519.6	70.0
소득원별 유무											
근로소득	15.5	15.9	19.7	16.6	13.2	11.1	17.9	23.3	14.5	61.5	15.9
사업소득	15.6	17.0	13.3	6.2	1.9	8.0	19.1	21.8	20.0	7.7	14.7
재산소득	19.9	27.2	25.4	28.8	50.0	14.0	25.2	43.0	53.6	61.5	23.7
사적이전	94.5	93.8	90.9	91.8	88.5	90.4	96.3	95.8	96.4	100.0	93.8
공적이전소득	94.0	88.0	83.8	69.7	82.7	96.0	87.9	80.6	60.7	83.3	89.6
기타소득	13.8	11.3	8.5	11.6	9.6	12.4	11.7	13.0	25.0	8.3	12.5
가구소득의 소득원별 구성비											
근로소득구성비	7.3	7.0	11.9	8.5	4.7	4.8	7.9	13.3	11.0	40.6	7.6
사업소득구성비	6.3	7.1	7.6	3.9	0.1	3.0	7.8	11.7	9.4	0.5	6.3
재산소득구성비	4.7	8.5	8.2	10.6	21.9	3.1	8.2	11.5	14.6	32.8	6.8
사적소득구성비	46.2	45.5	38.6	42.7	37.4	44.0	50.0	36.1	28.7	16.4	45.0
공적소득구성비	34.2	30.6	32.7	27.8	35.6	43.6	24.7	26.1	22.8	8.2	32.7
기타소득구성비	1.4	1.3	1.1	6.4	0.4	1.4	1.3	1.3	13.6	1.6	1.7
기초생활보호율	16.9	12.2	16.2	12.4	15.1	24.4	11.0	2.7	0.0	0.0	15.2
등록장애인율	11.5	15.6	9.2	14.4	7.7	14.0	12.5	8.8	14.3	0.0	12.7

2. 부부가구

특성	교육수준			경제상태					전체
	부부 모두 초등 학교 이하	부부 모두 고등 학교 이상	그 외 학력군	50 만원 미만	50~ 100 만원 미만	100~ 200 만원 미만	200~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가구균등화 소득(월)	81.7	197.6	106.6	38.6	71.9	137.0	244.2	489.1	108.4
가구소득원별 유무									
근로소득	28.0	27.7	27.4	17.1	27.8	35.6	18.8	34.0	27.7
사업소득	45.4	21.6	34.3	23.9	39.9	45.4	25.2	32.7	37.4
재산소득	36.0	52.7	43.5	29.9	34.4	49.2	67.1	87.8	41.5
사적이전	97.9	97.5	97.5	97.1	97.2	98.7	97.4	100.0	97.7
공적이전	86.4	81.3	83.5	87.6	87.9	79.1	79.5	76.3	84.5
기타소득	31.6	9.1	19.1	17.8	27.2	23.6	16.2	9.3	23.3
가구소득의 소득원별 구성비									
근로소득구성비	12.3	15.0	13.6	5.4	12.7	18.9	10.0	19.8	13.2
사업소득구성비	21.3	12.4	16.9	7.8	17.8	25.2	17.4	21.0	18.2
재산소득구성비	8.3	16.8	11.8	7.1	9.1	12.1	22.0	27.2	11.0
사적소득구성비	29.2	19.9	27.5	43.8	31.7	16.4	8.5	6.8	27.2
공적소득구성비	26.1	34.7	28.8	34.0	26.4	26.0	39.1	24.8	28.4
기타소득구성비	2.7	1.8	1.5	2.1	2.2	1.7	3.1	1.5	2.1
기초생활보호율	4.5	1.0	3.2	5.7	5.3	0.4	-	-	3.5
등록장애인율	16.1	8.6	16.0	19.0	17.8	9.5	13.1	5.9	15.0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표 3-24〉 노인단독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자산 실태

1. 독거가구

(단위: 만원, %, 가구)

특성	지역		연령					성		전체
	동부	읍·면부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남자	여자	
부동산 보유율	77.0	65.2	82.9	79.8	69.6	65.2	56.1	76.7	71.7	72.4
규모(전체)	10988.7	6604.6	10343.5	10824.5	8237.6	8037.1	8707.0	14255.0	8439.7	2092.1
규모(소유자만)	14277.7	10123.5	12455.7	13567.9	11844.7	12352.7	15545.9	18554.8	11780.7	12815.9
금융자산 보유율	74.3	84.2	79.9	78.7	79.1	77.6	72.2	78.1	78.2	78.2
규모(전체)	1171.4	570.1	940.9	1283.3	907.1	698.7	491.9	2154.1	733.4	2086.0
규모(소유자만)	1578.8	677.2	1176.0	1635.0	1149.7	900.6	682.2	2765.9	938.7	1198.9
부채 보유율	19.9	9.4	26.0	21.0	11.7	11.3	4.8	19.9	15.1	15.8
규모(전체)	1074.0	199.4	1182.6	1015.8	460.2	564.3	316.9	1278.6	641.7	2092.2
규모(소유자만)	5408.6	2157.9	4558.5	4866.5	3945.8	5001.0	7018.2	6377.3	4279.0	4664.2
주택 소유율(자가+명의)	47.5	60.1	59.6	62.5	48.7	43.1	41.2	48.5	53.0	52.4
주택 시가(자가+명의)	18835.9	4182.6	13484.9	10466.3	11329.0	15791.7	12858.2	13883.5	12009.4	12260.8

2. 부부가구

특성	지역		연령			전체
	동부	읍·면부	부부 모두 70세 미만	부부 모두 75세 이상	그 외 연령군	
부동산 보유율	93.1	93.3	95.7	87.2	94.0	93.2
규모(전체)	29456.9	24835.5	29649.4	25427.5	27440.3	27772.7
규모(소유자만)	31506.3	26476.7	30906.8	29055.7	29024.3	29670.4
금융자산 보유율	87.1	93.1	89.8	89.3	88.9	89.3
규모(전체)	3894.6	2536.7	2974.1	3638.3	3661.9	3395.3
규모(소유자만)	4484.1	2726.8	3319.8	4080.1	4123.0	3809.6
부채 보유율	35.9	28.3	38.5	21.7	32.9	33.1
규모(전체)	2462.7	965.0	2183.1	1526.6	1896.9	1916.3
규모(소유자만)	6934.1	3417.2	5770.4	7127.1	5770.7	5831.3
주택 소유율(자가+명의)	80.7	89.6	85.3	77.9	85.4	84.0
주택 시가(자가+명의)	28407.9	8168.7	21463.5	19586.7	19625.1	20425.7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표 3-25〉 노인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자산 실태

1. 독거가구

(단위: 만원, %, 가구)

특성	교육수준					경제상태					전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부동산 보유율	67.0	80.7	71.8	80.0	83.0	66.2	75.7	75.7	98.2	92.3	72.4
규모(전체)	5278.6	11768.6	14024.9	15984.7	39132.2	4014.2	8397.9	18520.4	44307.8	90670.9	97914.6
규모(소유자만)	7886.5	14597.3	19548.8	20042.7	46851.7	6068.1	11098.1	24452.4	44994.2	98775.6	12815.9
금융자산 보유율	78.6	78.0	76.8	75.3	82.7	70.9	83.9	82.1	82.1	91.7	78.2
규모(전체)	593.3	956.4	833.2	2075.6	5714.8	297.9	888.7	2295.6	4332.0	6834.8	18829.8
규모(소유자만)	754.6	1228.6	1089.4	2756.1	6997.9	420.1	1059.9	2804.4	5289.0	8036.2	1198.9
부채 보유율	9.8	21.7	25.4	25.5	30.8	10.1	17.4	23.7	35.7	41.7	15.8
규모(전체)	272.2	916.0	1372.4	2041.3	3609.0	257.5	690.5	1499.9	2985.5	10998.6	14938.6
규모(소유자만)	2820.0	4222.7	5417.8	7942.1	11753.3	2600.0	3952.4	6328.5	8344.0	25211.5	4664.2
주택 소유율(자가+명의)	49.7	58.0	49.0	56.8	47.2	43.8	55.3	63.7	90.9	41.7	52.4
주택 시가(자가+명의)	7614.6	13545.2	16835.8	26166.6	43640.0	5709.9	10363.9	22481.7	45363.4	21241.0	12260.8

2. 부부가구

특성	교육수준			경제상태					전체
	부부 모두 초등학교 이하	부부 모두 고등학교 이상	그 외 학력군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부동산 보유율	91.7	96.9	93.5	87.1	92.3	96.5	97.9	100.0	93.2
규모(전체)	19058.1	53990.8	28147.1	10798.2	18781.3	31935.7	65115.9	140114.7	27772.7
규모(소유자만)	20637.0	55421.4	30036.4	12399.5	20278.1	33004.3	65659.2	140003.2	29670.4
금융자산 보유율	90.3	89.3	88.0	81.9	88.7	92.3	94.3	100.0	89.3
규모(전체)	2167.4	8086.4	3169.0	1767.5	1993.8	3317.2	9398.7	23370.6	3395.3
규모(소유자만)	2401.7	9115.2	3602.8	2165.0	2249.6	3595.8	9994.0	23393.4	3809.6
부채 보유율	29.1	40.2	35.0	22.0	29.1	39.1	49.6	63.6	33.1
규모(전체)	1246.7	4324.3	1770.3	692.9	1176.1	2080.0	4545.5	12721.3	1916.3
규모(소유자만)	4307.0	10940.1	5080.6	3331.5	4053.1	5326.9	9167.7	20118.5	5831.3
주택 소유율(자가+명의)	82.7	91.9	82.5	75.5	79.9	90.8	98.2	97.4	84.0
주택 시가(자가+명의)	10908.4	48037.4	20211.2	13171.0	13402.5	21279.1	42577.8	81430.1	20425.7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지출과 관련해서는 독거가구나 부부가구 모두 도시지역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비하여 소비지출액이 많고, 연령이 낮은 경우, 교육수준이 높으면 소비지출액이 높고 자녀세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생활비 주부담자와 관련한 지역별 차이에 있어서는 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독거가구의 경우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생활비 부담의 독자성에 큰 차이가 없지만,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독자성이 낮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부담자인 비율이 68.8%인 반면 농어촌 지역의 부부가구는 동 비율이 80.8%로 12%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3-26〉과 〈표 3-27〉 참조).

〈표 3-26〉 노인단독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지출규모, 생활비 주부담자 및 경제상태 만족도

1. 독거가구

(단위: 만원, %, 가구)

특성	지역		연령					성		전체
	동부	읍·면부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남자	여자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1)]	68.0	56.2	70.0	68.9	59.9	59.8	54.1	80.8	60.5	63.4
생활비 주부담자										
본인 스스로	34.5	33.2	62.1	43.9	24.2	21.6	11.8	50.8	31.1	34.0
(손)자녀 및 그 배우자	45.1	53.0	23.9	42.3	56.5	56.1	64.7	31.2	51.0	48.2
정부 및 사회단체	19.8	13.2	13.7	12.5	18.6	21.8	23.5	17.3	17.2	17.2
기타(배우자 포함)	0.6	0.6	0.3	1.2	0.7	0.5	0.0	0.7	0.6	0.6
경제상태 만족률	11.6	11.7	11.4	12.3	9.7	12.3	13.9	16.3	10.8	11.6

주: 1) 동일안 가구원이기 때문에 가구균등화지수 미적용

2. 부부가구

특성	지역		연령			전체
	동부	읍·면부	부부 모두 70세 미만	부부 모두 75세 이상	그 외 연령군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133.9	105.2	140.6	101.7	118.9	123.4
생활비 주부담자						
본인 스스로	42.7	48.6	60.6	28.5	42.0	44.8
(손)자녀 및 그 배우자	24.6	16.5	10.2	39.4	22.3	21.7
정부 및 사회단체	6.6	2.8	3.5	7.8	5.4	5.2
기타(배우자 포함)	26.1	32.2	25.8	24.2	30.3	28.3
경제상태 만족률	23.3	21.4	25.2	18.3	22.3	22.6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표 3-27〉 노인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지출규모, 생활비 주부담자 및 경제상태 만족도

1. 독거가구

(단위: 만원, %, 가구)

특성	교육수준					경제상태					전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53.5	66.9	75.1	87.2	146.7	39.3	61.2	115.0	168.9	357.0	63.4
생활비 주부담자											
본인 스스로	28.3	37.2	50.3	44.8	51.9	22.4	36.2	57.0	67.9	53.8	34.0
(손)자녀 및 그 배우자	51.6	48.6	32.9	38.6	32.7	50.7	52.3	29.7	30.4	46.2	48.2
정부 및 사회단체	19.6	13.4	16.1	15.9	13.5	26.7	11.0	10.3	1.8	0.0	17.2
기타(배우자 포함)	0.5	0.9	0.7	0.7	1.9	0.2	0.5	3.0	0.0	0.0	0.7
경제상태 만족률	10.5	11.3	10.6	16.4	28.8	5.7	11.4	25.2	37.5	38.5	11.6

2. 부부가구

특성	교육수준			경제상태					전체
	부부 모두 초등학교 이하	부부 모두 고등학교 이상	그 외 학력군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96.4	215.4	120.8	66.4	93.2	151.8	239.9	389.1	123.4
생활비 주부담자									
본인 스스로	40.7	55.1	45.7	32.9	38.3	54.3	68.3	68.6	44.8
(손)자녀 및 그 배우자	24.4	12.9	21.7	40.3	27.1	8.1	2.8	2.5	21.7
정부 및 사회단체	6.1	2.4	5.4	7.9	6.8	2.5	1.1	0.0	5.2
기타(배우자 포함)	28.9	29.6	27.2	18.8	27.8	35.0	27.8	28.8	28.3
경제상태 만족률	14.2	43.2	24.7	7.7	14.2	32.3	48.2	85.5	22.6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이상과 같은 노인단독가구의 제특성별 경제상태와 관련한 분석에서 도출된 다양성을 정리해보면 〈표 3-28〉과 같다.

〈표 3-28〉 경제상태 관련 가구와 부부가구의 제특성별 다양성

영역	독거가구	부부가구
지역	**가구소득: 도시〉농어촌**(독거가구: 75.2만원대 60.0만원, 부부가구: 118.3만원대 91.3만원)	
	지역간 주소득원의 차이: 도시 근로소득 비중이 높음, 농어촌 사업소득 비중이 높음 (도시:독거가구 근로소득 비중 8.7%, 사업소득의 비중 4.1%, 부부가구 근로소득 비중 16.5%, 사업소득의 비중 9.8%) (농어촌:독거가구 근로소득 비중 5.8%, 사업소득의 비중 9.6%, 부부가구 근로소득 비중 7.6%, 사업소득의 비중 33.0%)	
	사적 소득 비중: 도시〈농어촌 (43.8%, 46.9%) (절대적으로 사적소득 비중이 높음에 유의 필요) 공적 소득 비중: 도시≒농어촌 (32.9%, 32.3%)	사적 소득 비중: 도시〉농어촌 (28.3%, 25.2%) 공적 소득 비중: 도시〉농어촌 (30.8%, 24.2%)
	소비지출액: 도시〉농어촌(독거가구:68.1만원, 56.2만원, 부부가구:133.9만원,105.2만원)	
	경제적 독자성에 있어 도농간 차이 적음 (본인이 주부담자인 비율: 34.5%, 33.2%)	**도시지역의 독자성이 낮음** (부부가 주부담자인 비율: 68.8%〈80.8%)
	부동산 보유율: 도시〉농어촌 (77.0% 대 65.2%)	도농간 부동산 보유율 차이 적음 (93.1%, 93.3%)
	부동산 규모: 도시〉농어촌 (독거가구 1억4,278만원, 1억124만원 부부가구 3억1,506만원, 2억6,478만원)	
	금융자산 보유율: 도시〈농어촌, 보유자의 금융자산규모: 도시〉농어촌 (독거가구: 74.3% 대 84.2%, 1,578만원 대 672만원, 부부가구: 87.1% 대 93.1%, 33,709만원 대 5,433만원)	
	기초생활보호율: 도시〉농어촌(독거가구:17.8% 대 11.1%, 부부가구: 4.5% 대 1.8%)	
연령	**높을수록 가구소득 적음**(독거가구 82.1만원~58.5만원 부부가구:126.8~87.0만원)	
	높을수록 소비지출액이 낮고 자녀세대에 대한 의존도 높음 (독거가구 70.0 54.1만원 부부가구:140.6~101.7만원) (생활비 주부담자가 자녀인 비율: 독거가구 23.9%~64.7% 부부가구 10.2~39.4%)	
	높을수록 기초생활보호율이 약간 높은 경향(독거가구 16.5%~18.9%, 부부가구 2.9%~4.0%) **(단, 독거가구의 기초생활보호율 자체가 매우 높음)**	
성	근로소득, 공적연금: 남자〉여자	
	기초노령연금,사적이전소득: 남자〈여자	-
교육수준	교육수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음	
	교육수준과 사적소득 및 공적 소득비율의 연관성 낮음**(절대적으로 높은 사적소득구성비 45%)**	높을수록 사적소득비율이 낮고 공적소득비율이 높음
	부동산 및 금융자산 보유율 교육수준별 차이 적음	
	높을수록 보유자의 소유액 많음 (독거가구 부동산: 7,887~46,852만원 금융자산: 755~6,998만원) (부부가구 부동산: 20,637~55,421만원 금융자산: 2,402~9,115만원)	
소득수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초생활보호율 낮음	

3. 건강 상태

건강상태를 비교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건강지표에 있어서 특성별 유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연령이 높은 경우,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신체 및 정신적 건강지표의 수준이 낮은 경향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표 3-29〉와 〈표 3-30〉 참조).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특징과 차이점이 있다. 첫째 부부가 모두 75세 이상인 부부가구의 경우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비중이 약 절반에 달하고 있어 이들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우울증 증상과 관련해서 부부가구의 유병률 수준 자체는 독거가구에 비하여 월등히 낮지만(21.9% 대 41.2%)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부부가구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증상에 있어 독거가구의 내부적 다양성보다는 부부가구 내의 다양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저작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부부가구 내의 우울증상과 저작능력 저하 위험집단을 찾아내어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셋째, 운동실천율에 있어서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독거가구에 비하여 부부가구에게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으면 다수가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거노인의 경우는 그 정도가 적어 단지 경제적인 지불능력 외에 다른 요소가 작동하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

넷째, 영양관리상태가 양호한 비율에 있어 부부가구보다 독거가구에서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다. 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의 경우 경로

당 등과 같은 지역기관에서 공동취사 등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지역사회의 특성의 지역별 차이로 인한 영향력이 특히 독거노인에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건강관련 교육프로그램이 공공 서비스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와는 달리 농어촌지역,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가구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게서 더 높은 예외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세대 노인의 건강행위에 있어서의 공공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이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제고와 생활화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건강상태를 독거가구의 경우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자노인에게서 질병, 기능상태, 각종 감각계 기능의 저하 등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낙상 경험률도 높아 전반적인 건강만족률이 낮다.

〈표 3-29〉 노인단독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건강 상태와 건강 행위

1. 독거가구

(단위: %, 가구)

특성			지역		연령					성		전체
			동부	읍·면부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남자	여자	
만성질환수(의사진단)	0개		5.9	5.8	6.0	8.5	4.2	3.7	7.4	11.3	5.0	5.9
	1개		16.0	13.7	15.0	13.4	14.4	17.1	17.6	19.9	14.3	15.1
	2개		22.6	24.1	25.8	22.2	22.2	24.4	22.3	27.5	22.5	23.2
	3개 이상		55.5	56.4	53.2	55.9	59.2	54.8	52.7	41.4	58.2	55.8
	(평균(개))		3.1	2.9	2.8	3.0	3.1	3.2	2.7	2.5	3.1	3.0
기능상태제한	기능제한 없음		84.7	80.3	94.9	89.3	84.8	74.0	57.2	88.7	82.0	83.0
	IADL만 제한		8.9	12.7	4.2	6.0	9.0	16.0	26.2	7.3	10.9	10.4
	ADL도제한 경험		6.4	7.0	0.9	4.8	6.2	10.1	16.6	4.0	7.1	6.6
감각기능상태	시력	불량률(나쁜편+나쁨)	32.3	34.2	24.0	30.4	34.1	38.5	41.9	25.2	34.4	33.0
		보조기 사용률	58.7	47.4	58.4	57.8	52.9	49.0	51.9	63.9	52.7	54.3
	청력	불량률(나쁜편+나쁨)	23.6	26.0	13.2	17.2	24.9	34.4	45.2	25.6	24.4	24.6
		보조기 사용률	3.5	5.0	1.8	3.4	4.7	4.9	7.4	6.3	3.8	4.2
	씹기	불량률(나쁜편+나쁨)	63.8	67.3	53.7	59.8	67.7	72.0	78.5	62.3	65.6	65.1
		보조기 사용률	58.8	66.4	48.6	56.3	68.1	66.6	71.1	56.1	62.7	61.7
우울증상 유병률			41.9	40.1	31.7	36.4	46.0	46.9	45.3	42.0	41.1	41.2
인지저하자비율(MMSE-KC)			13.6	17.4	18.9	14.8	14.9	9.8	21.9	29.1	12.8	15.1
낙상률			27.3	26.4	18.9	24.8	30.9	28.0	32.4	17.9	28.4	26.9
건강에 대한 만족률			26.3	25.2	31.1	28.7	22.9	21.3	27.2	42.9	23.0	25.9
건강행위	흡연율		8.9	8.7	13.5	9.0	7.8	6.1	8.5	30.5	5.1	8.7
	과음주율		5.2	8.6	7.1	6.2	4.2	4.3	4.4	32.6	2.2	6.5
	운동실천율		52.8	36.6	54.5	54.0	45.6	37.8	31.0	62.3	43.8	46.5
	건강검진 수진율		76.0	79.6	83.2	84.7	79.6	69.4	55.1	77.7	77.4	77.4
	건강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12.8	18.7	12.3	13.8	16.6	16.9	16.0	9.9	16.0	15.1
	영양관리상태	양호(0~2점)	35.6	44.2	47.7	42.3	35.8	34.4	32.0	40.3	38.7	38.9
		영양관리주의요구(3~5점)	57.5	51.9	45.0	51.6	57.8	60.6	65.7	51.0	56.0	55.3
		영양관리개선필요(6점 이상)	7.0	3.9	7.2	6.1	6.4	5.0	2.2	8.7	5.3	5.8
		(평균(점))	3.1	2.9	2.9	2.9	3.1	3.2	3.1	3.1	3.0	3.0

2. 부부가구

특성			지역		연령			전체
			동부	읍·면부	부부 모두 70세 미만	부부 모두 75세 이상	그 외 연령군	
만성질환수(의사진단)	0개		14.0	12.9	20.2	9.7	11.5	13.6
	1개		20.9	21.7	25.5	17.3	19.6	21.2
	2개		24.2	25.5	24.5	22.6	26.5	24.7
	3개 이상		40.8	39.9	29.8	50.4	42.4	40.5
	(평균(개))		2.4	2.3	1.9	2.8	2.5	2.4
기능상태 제한	기능제한 없음		90.3	89.2	93.5	81.7	91.1	89.9
	IADL만 제한		3.4	6.3	2.2	9.1	4.1	4.5
	ADL도제한 경험		6.3	4.5	4.3	9.2	4.9	5.7
감각기능상태	시력	불량률(나쁜편+나쁨)	25.3	24.0	22.3	30.3	25.7	21.7
		보조기 사용률	62.8	57.3	61.8	58.8	62.6	60.9
	청력	불량률(나쁜편+나쁨)	15.0	19.3	10.6	25.9	17.3	12.1
		보조기 사용률	3.1	4.7	1.6	7.7	3.3	3.7
	씹기	불량률(나쁜편+나쁨)	45.2	50.9	40.4	61.3	47.4	27.3
		보조기 사용률	43.4	56.3	34.8	67.3	49.3	48.1
우울증상 유병률			21.1	23.5	13.5	33.0	23.6	21.9
인지저하자비율(MMSE-KC)			16.7	18.8	17.8	14.8	18.8	17.5
낙상률			16.9	17.9	14.5	20.6	18.5	17.3
건강에 대한 만족률			41.4	37.7	53.5	26.5	37.4	40.1
건강행위	흡연율		15.4	16.9	24.3	11.5	12.9	15.9
	과음주율		19.7	21.4	32.2	11.0	17.6	20.3
	운동실천율		63.0	38.6	58.9	42.5	55.7	54.1
	건강검진 수진율		83.8	89.1	87.4	81.3	85.9	85.7
	건강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8.3	17.8	9.0	14.9	13.1	11.8
	영양관리상태	양호(0~2점)	79.2	83.6	85.2	75.3	80.2	80.8
		영양관리주의요구(3~5점)	19.5	16.1	14.0	23.2	18.9	18.3
		영양관리개선필요(6점 이상)	1.3	0.3	0.8	1.5	0.9	0.9
		(평균(점))	1.6	1.4	1.3	1.8	1.5	1.5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표 3-30〉 노인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건강 상태와 건강 행위

1. 독거가구

(단위: %, 가구)

특성			교육수준					경제상태					전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만성질환수(의사진단)	0개		5.0	4.6	4.9	14.4	13.5	5.9	4.9	8.7	3.6	23.1	5.9
	1개		13.2	16.3	16.2	21.2	26.9	13.4	15.5	14.4	34.5	30.8	15.1
	2개		22.8	23.0	31.0	17.8	28.8	23.5	23.3	20.9	27.3	23.1	23.2
	3개 이상		59.0	56.1	47.9	46.6	30.8	57.2	56.3	55.9	34.5	23.1	55.8
	(평균(개))		3.1	3.1	2.6	2.7	2.4	3.0	3.0	3.0	2.3	2.5	3.0
기능상태 제한	기능제한 없음		77.7	89.7	91.5	89.0	88.5	81.9	82.9	85.4	92.7	83.3	83.1
	IADL만 제한		14.0	5.3	2.1	8.9	9.6	11.5	10.1	8.4	5.5	8.3	10.3
	ADL도제한 경험		8.3	5.0	6.3	2.1	1.9	6.6	7.0	6.1	1.8	8.3	6.6
감각기능상태	시력	불량률(나쁜편+나쁨)	41.7	23.6	14.7	28.8	7.5	38.8	32.5	21.1	7.1	23.1	33.0
		보조기 사용률	48.1	60.0	69.2	57.5	79.2	53.2	54.1	57.3	65.5	38.5	54.3
	청력	불량률(나쁜편+나쁨)	29.1	18.9	21.7	18.9	9.6	29.1	22.5	19.6	12.7	15.4	24.6
		보조기 사용률	4.5	3.6	3.5	1.4	11.3	3.6	5.0	2.7	7.1	0.0	4.2
	씹기	불량률(나쁜편+나쁨)	71.5	57.0	57.7	66.4	30.8	74.5	61.8	49.8	46.4	46.2	65.1
		보조기 사용률	65.3	60.1	56.3	51.4	44.2	64.5	59.7	62.6	51.8	38.5	61.7
우울증상 유병률			46.8	35.0	44.8	28.8	11.5	50.7	39.6	24.4	7.1		41.3
인지저하자비율(MMSE-KC)			11.9	17.3	21.8	21.9	25.0	16.5	13.7	15.2	17.9	7.7	15.1
낙상률			30.4	23.5	16.9	26.7	13.5	30.0	26.7	21.0	14.3	7.7	26.9
건강에 대한 만족률			20.4	28.8	33.1	33.1	75.0	21.0	24.7	38.2	57.1	46.2	25.8
건강행위	흡연율		6.8	9.7	14.1	8.9	25.0	10.1	8.7	5.0	3.6	25.0	8.7
	과음주율		4.4	6.8	11.3	7.6	34.6	4.5	6.7	9.9	21.8	0.0	6.5
	운동실천율		39.5	53.3	51.0	56.2	86.8	41.9	48.2	53.4	55.4	66.7	46.5
	건강검진 수진율		73.9	84.1	81.7	79.5	63.5	74.4	78.8	83.2	75.0	76.9	77.4
	건강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16.6	14.4	15.4	6.8	13.2	15.5	16.0	13.7	7.1	-	15.1
	영양관리상태	양호(0~2점)	35.8	45.1	38.1	34.9	53.8	29.6	44.3	45.4	60.0	76.9	38.9
		영양관리주의요구(3~5점)	58.1	49.7	56.8	58.2	42.3	62.1	50.8	52.7	40.0	23.1	55.3
		영양관리개선필요(6점 이상)	6.2	5.2	5.0	6.8	3.8	8.3	4.9	1.9	0.0	0.0	5.8
		평균(점)	3.1	2.9	3.0	3.1	2.5	3.4	2.9	2.7	2.2	1.4	3.0

2. 부부가구

특성			교육수준			경제상태					전체
			부부 모두 초등 학교 이하	부부 모두 고등학 교 이상	그 외 학력군	50 만원 미만	50~ 100 만원 미만	100~ 200 만원 미만	200~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만성 질환 수 (의사 진단)	0개		12.5	17.8	13.6	14.9	11.5	15.2	16.0	17.9	13.6
	1개		19.9	24.0	21.5	14.5	19.1	24.9	29.9	35.9	21.2
	2개		23.9	27.6	24.6	24.4	24.2	27.1	21.0	20.5	24.7
	3개 이상		43.7	30.7	40.3	46.1	45.2	32.8	33.1	25.6	40.5
	(평균(개))		2.4	2.1	2.3	2.6	2.5	2.1	2.1	1.9	2.4
기능 상태 제한	기능제한 없음		87.2	96.4	90.7	81.2	89.0	94.3	95.7	98.3	89.9
	IADL만 제한		6.3	0.5	3.7	8.5	4.8	2.5	1.1	1.7	4.5
	ADL도제한 경험		6.5	3.1	5.6	10.3	6.2	3.1	3.2	0.0	5.7
감각 기능 상태	시력	불량률(나쁜편+나쁨)	27.1	18.1	24.5	20.1	21.7	21.4	24.8	20.1	21.7
		보조기 사용률	56.9	73.8	60.7	54.5	63.6	56.0	73.0	72.0	60.9
	청력	불량률(나쁜편+나쁨)	21.3	7.4	14.4	11.1	12.1	2.6	16.6	11.1	12.1
		보조기 사용률	4.7	2.4	3.1	3.7	4.6	2.5	2.8	2.5	3.7
	씹기	불량률(나쁜편+나쁨)	55.1	29.2	44.9	36.1	27.3	12.7	47.3	36.1	27.3
		보조기 사용률	56.2	31.9	44.6	56.3	52.0	41.9	34.8	33.3	48.1
우울증상 유병률			27.5	7.3	20.8	41.4	24.4	12.2	7.6	0.9	21.9
인지저하자비율(MMSE-KC)			15.7	12.6	21.2	19.6	19.6	15.4	11.7	7.6	17.5
낙상률			18.8	13.4	17.0	21.9	17.6	16.2	5.7	22.2	17.3
건강에 대한 만족률			33.0	60.5	40.9	27.5	34.4	48.2	58.8	77.8	40.1
건강 행위	흡연율		15.9	13.4	17.0	20.4	14.0	18.3	12.8	4.2	15.9
	과음주율		19.8	24.5	19.5	16.3	17.5	27.3	19.6	22.0	20.3
	운동실천율		42.9	74.2	59.6	48.3	50.6	54.3	77.3	87.3	54.1
	건강검진 수진율		85.1	88.4	85.5	79.1	85.7	88.0	89.0	96.6	85.7
	건강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13.9	7.2	11.1	11.8	13.8	10.3	6.4	8.5	11.8
	영양 관리 상태	양호(0~2점)	79.0	87.4	80.5	71.9	78.4	86.7	87.6	97.5	80.8
		영양관리주의요구(3~5점)	20.0	11.8	18.7	25.6	20.6	13.3	12.1	2.5	18.3
		영양관리개선필요(6점 이상)	1.0	0.9	0.8	2.5	1.0	0.1	0.4	0.0	0.9
		(평균(점))	1.6	1.2	1.5	2.0	1.6	1.2	1.0	0.8	1.5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노인단독가구의 제특성별 건강상태와 관련한 분석에서 도출된 다양성은 〈표 3-3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3-31〉 건강상태 관련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제특성별 다양성

영역	독거가구	부부가구
지역	대체적으로 지역별 차이 크지 않음	
	양양관리 양호율의 지역별 차이: 독거〉 부부 (양호율의 수준 자체는 부부가구에서 높음) (독거가구: 35.6% 대 44.2%, 부부가구: 79.2 대 83.6%)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도시〈농어촌 (독거가구 12.8% 18.7% 부부가구 8.3% 17.8%)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 및 정신적 건강지표의 수준이 낮음	
	-	**부부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약 절반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임**
성	질병율, 기능상태 제한율, 감감계기능 저하율, 낙상경험률: **여자〉남자**	-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체 및 정신적 건강지표의 수준이 높음** (독거가구 만성질환수: 3.1~2.4개 우울증상 유병률 46.8%~11.5%) (부부가구 만성질환수: 2.4~2.1개 우울증상 유병률 27.5~20.8%)	
	교육수준에 따른 우울증 유병률 차이: 독거〈부부가구 **(단, 유병률 자체는 독거가구가 높음. 21.9% 대 41.2%)**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음 (독거가구 16.6%~6.8%, 부부가구 13.9%~7.2%)	
소득수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신체 및 정신적 건강지표의 수준이 높음** (독거가구 만성질환수: 3.0~2.5개 우울증상 유병률 50.7%~7.1%) (부부가구 만성질환수: 2.6~1.9개 우울증상 유병률 41.4~0.9%)	
	소득수준에 따른 운동실천율의 차이: 독거〈부부가구 (독거가구 41.9%~66.7%, 부부가구 48.3%~87.3%)	

4. 사회참여 실태

사회참여 또한 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에게 지역이나, 연령, 교육수준 및 경제상태가 유사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2〉와 〈표 3-33〉 참조).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도시지역 거주노인에게서 평생교육, 여가문

화활동,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참가율이나 향후 희망률에 있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차이는 매우 크다.

한편 이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농어촌 지역, 낮은 교육수준의 노인에게서는 경로당을 선호하고, 도시지역,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는 노인복지관이 선호되는 경향성이 뚜렷하다. 그러나 가구소득에 따른 경로당 이용률이나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독거노인의 경우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노후생활의 모습에 있어서는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간에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다. 독거가구의 경우는 소득창출이라는 응답이 부부노인에 비하여 낮을뿐만 아니라 지역별 차이가 없는데 비하여 부부가구의 경우는 농어촌지역이 약 2배 정도 도시지역에 비하여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건강유지라는 응답은, 독거가구의 경우는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하여 부부가구의 경우는 도시지역에서 약 8% 포인트 정도 높다. 반면 편히 쉬고 싶다는 응답은 부부가구의 경우는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독거가구의 경우 농어촌에서 3.4% 높은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고 교육수준,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의 경우 독거가구에서는 뚜렸한 경향성이 없는 반면 부부가구의 경우는 부부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확연히 만족도가 낮은 것이 발견되었다(〈표 3-34〉와 〈표 3-35〉 참조).

이상과 같은 분석에서 도출된 사회참여관련 노인단독가구의 다양성은 〈표 3-34〉와 같다.

〈표 3-32〉 노인단독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경제 활동 및 여가 활동 실태

1. 독거가구

(단위: %, 가구)

특성		지역		연령					성		전체
		동부	읍·면부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남자	여자	
경제활동참가율		20.6	33.3	45.2	33.1	21.6	12.7	8.0	29.8	24.8	25.5
평생교육	현재 참여율	8.0	5.5	7.8	9.2	7.5	4.4	3.2	5.6	7.3	7.1
	향후 참여희망률	16.5	9.7	22.8	17.8	13.7	5.4	3.9	11.7	14.2	13.8
여가문화 활동	협의의 참여율	24.3	29.9	26.6	27.8	28.3	25.2	18.7	26.6	26.4	26.4
	광의의 참여율	71.4	66.8	75.4	78.9	71.1	59.3	48.7	78.7	68.1	69.6
	주관적 만족률	33.1	35.6	34.8	36.2	33.7	31.4	33.3	36.5	33.8	34.1
자원봉사	현재 참여율	3.1	1.5	3.0	2.6	3.2	1.5	0.5	3.7	2.2	2.4
	참여 희망률	8.1	2.9	12.9	7.9	5.2	1.7	0.6	9.7	5.5	6.1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률	경로당	24.6	70.7	29.6	43.4	46.8	44.1	46.0	26.2	45.3	42.6
	노인복지관	13.6	5.6	8.7	12.1	9.9	13.0	5.3	11.3	10.4	10.5
희망하는 노후형태	소득창출	13.0	14.5	25.7	17.8	12.9	4.2	1.7	21.9	12.2	13.6
	건강유지	56.4	58.8	53.9	56.0	57.2	60.5	61.7	56.8	57.4	57.3
	편히 쉰다	16.4	19.8	9.3	14.4	17.7	24.2	28.3	14.0	18.3	17.7
	기타(취미활동, 종교활동)	14.3	6.9	11.1	11.8	12.2	11.1	8.3	7.3	12.0	11.4

2. 부부가구

특성		지역		연령			전체
		동부	읍·면부	부부 모두 70세 미만	부부 모두 75세 이상	그 외 연령군	
경제활동참가율		29.4	68.1	53.5	27.8	42.4	43.5
평생교육	현재 참여율	7.6	3.6	4.7	6.4	7.1	6.2
	향후 참여희망률	17.5	9.6	15.8	8.8	16.1	14.6
여가문화 활동	협의의 참여율	28.9	30.1	33.6	23.9	30.0	29.3
	광의의 참여율	77.0	74.5	81.3	65.4	77.4	76.1
	주관적 만족률	43.6	41.6	45.4	35.9	44.0	42.9
자원봉사	현재 참여율	6.9	3.0	8.5	3.4	4.7	5.5
	참여 희망률	14.8	7.1	18.1	3.8	10.3	12.0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률	경로당	15.4	62.2	20.8	43.4	37.3	32.5
	노인복지관	8.9	6.0	5.9	8.3	9.5	7.9
희망하는 노후형태	소득창출	19.2	38.4	36.8	12.3	24.2	26.2
	건강유지	50.8	42.7	37.3	60.4	50.6	47.8
	편히 쉰다	12.1	11.5	8.6	16.5	11.7	11.9
	기타(취미활동, 종교활동)	17.9	7.3	17.3	10.8	13.5	14.1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표 3-33〉 노인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경제 활동 및 여가 활동 실태

1. 독거가구

(단위: %, 가구)

특성		교육수준					경제상태					전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26.0	27.6	29.6	17.2	3.8	17.8	30.7	35.1	23.6	7.7	25.5
평생교육	현재 참여율	5.4	9.8	7.0	11.6	0.0	6.1	7.9	7.3	7.1	15.4	7.1
	향후 참여희망률	10.0	16.8	16.9	23.3	30.2	9.9	15.9	15.6	30.4	33.3	13.8
여가문화활동	협의의 참가율	24.4	27.4	37.8	22.1	44.2	24.6	25.2	33.2	43.6	23.1	26.4
	광의의 참가율	63.5	74.6	73.2	85.6	98.1	63.6	71.7	76.7	94.5	84.6	69.6
	주관적 만족률	31.4	36.2	40.1	36.3	50.0	29.3	33.9	46.3	48.1	75.0	34.1
자원봉사	현재 참여율	0.6	3.3	2.8	7.5	17.3	1.7	2.1	4.6	8.9	0.0	2.4
	참여 희망률	2.4	8.1	9.9	13.7	32.1	3.9	6.0	11.5	16.1	0.0	6.0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률	경로당	51.5	39.7	24.5	13.1	5.7	45.6	43.2	35.5	17.9	41.7	42.6
	노인복지관	8.4	14.2	9.9	10.3	17.3	10.5	10.9	10.3	5.5	15.4	10.5
희망하는 노후형태	소득창출	12.9	14.1	21.8	13.0	3.8	9.9	14.5	23.3	14.5	0.0	13.6
	건강유지	58.3	56.6	52.8	56.2	56.6	61.1	56.8	49.6	43.6	58.3	57.3
	편히 쉰다	22.4	13.6	10.6	6.2	13.2	20.6	17.0	11.1	14.5	25.0	17.8
	기타(취미활동, 종교활동)	6.4	15.8	14.8	24.7	26.4	8.5	11.7	16.0	27.3	16.7	11.3

2. 부부가구

특성		교육수준			경제상태					전체
		부부 모두 초등학교 이하	부부 모두 고등학교 이상	그 외 학력군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50.9	29.1	40.4	25.6	45.5	54.6	32.7	35.9	43.5
평생교육	현재 참여율	3.5	13.1	6.8	4.9	4.9	6.8	12.5	11.9	6.2
	향후 참여희망률	8.4	28.0	16.9	9.0	13.1	16.7	24.5	25.6	14.6
여가문화활동	협의의 참가율	25.1	46.0	28.3	20.7	27.4	31.3	43.8	55.1	29.3
	광의의 참가율	68.3	92.4	78.9	66.8	72.3	80.7	95.0	100.0	76.1
	주관적 만족률	36.2	60.1	44.3	30.9	40.1	46.0	60.1	83.8	42.9
자원봉사	현재 참여율	3.0	12.6	5.7	4.6	3.8	6.8	10.3	11.9	5.5
	참여 희망률	6.2	27.2	13.2	8.4	8.8	14.0	25.9	30.8	12.0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률	경로당	45.6	8.3	26.4	37.8	37.5	28.5	11.0	12.7	32.5
	노인복지관	5.4	9.3	10.2	7.8	8.1	8.0	9.3	1.7	7.9
희망하는 노후형태	소득창출	30.9	16.0	24.7	20.1	27.0	32.2	15.8	15.4	26.2
	건강유지	49.3	45.6	47.0	58.4	50.3	39.1	42.1	46.2	47.8
	편히 쉰다	12.9	7.0	12.5	15.3	12.6	10.7	6.8	6.0	11.9
	기타(취미활동, 종교활동)	7.0	31.5	15.9	6.2	10.1	18.1	35.3	32.5	14.1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표 3-34〉 사회참여 관련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제특성별 다양성

영역	독거가구	부부가구
지역	경제활동참가율: 도시<농어촌 (독거가구 20.6% 대 33.3% 부부가구 29.4% 대 68.1%)	
	평생교육, 여가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참가율: 도시>농어촌 (평생교육: 독거가구 8.0% 대 5.5%, 부부가구 7.6% 대 3.6%) (여가문화활동: 71.4% 대 66.8%, 부부가구 77.0% 대 74.5%) (자원봉사활동참가율:독거가구 3.1% 대 1.5%, 부부가구 6.9% 대 3.0%)	
	경로당 이용률: 도시<농어촌 (독거가구 24.6% 대 70.7% 부부가구: 15.4% 대 62.2%)	
	노인복지관 이용률: 도시>농어촌 (독거가구 13.6% 대 5.6% 부부가구: 8.9% 대 6.0%)	
	소득창출, 건강유지 선호: 지역별 차이 없음	소득창출 선호: 도시<농어촌 (19.2% 대 38.4%) 건강유지 선호:도시>농어촌 (50.8% 대 42.7%)
	편히 쉼: 도시<농어촌 (16.4% 대 19.8%)	편히 쉼: 지역별 차이 없음
연령	여가문화활동 만족률과의 뚜렷한 관련성 없음	**부부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여가문화활동 만족률이 낮음.** (45.4%~35.9%)
성	**경제활동참가율, 여가활동참가율, 자원봉사활동참가율:** **남자> 여자** (경제활동참가율: 29.8% 대 24.8%) (여가활동참가율: 78.7% 대 68.1%) (자원봉사활동참가율: 9.7% 대 5.5%)	-
	평생교육참가율: 남자< 여자 (5.6% 대 7.3%)	-
	경로당 이용률: 남자<여자 (26.2% 대 45.3%)	-
	노인복지관이용률: 성별 차이 적음	-
	희망하는 노후생활: 남자는 소득창출, 여자는 휴식, 취미활동, 종교활동	-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로당 이용률이 낮음.** (독거가구 51.5%~5.7%, 부부가구 45.6%~8.3%)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음** (독거가구 8.4%~17.3%, 부부가구 5.4%~9.3%)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문화활동 만족률이 높음** (독거가구 31.4%~50.0%, 부부가구 36.2%~60.1%)	
소득수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문화활동 만족률이 높음** (독거가구 29.3%~75.0%, 부부가구 30.9%~83.8%)	

5. 생활 환경 및 안전 실태

독거가구나 부부가구 모두 공통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자가거주율이 높고 단독주택거주율이 높으며 생활하기 불편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연령의 경우 또한 공통적으로 독거가구나 부부가구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자가거주율이 높다. 그러나 교육수준별로는 부부가구의 경우 자가율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독거가구의 경우는 뚜렷한 경향성이 없는 등 제특성별 차이가 적은 편인데 이는 부부가구의 경우 81.1%의 자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가소유율이 경제상태와 주거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적절한 지표는 아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표 3-35〉와 〈표 3-36〉 참조).

화재, 가스, 누수 와 같은 안전사고의 경우 부부가구에서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경험률이 높지만 독거가구의 경우는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다. 연령별 차이 또한 거의 없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 교육수준별 차이는 두드러지는 경향성이 없지만 가구소득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안전사고 경험률이나 학대경험, 자살생각률이 높다는 경향성은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에서 모두 공유되고 있다.

학대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높고 자살생각도 도시지역에도 높은데 이는 독거가구나 부부가구 모두 공통된 특성이다. 연령이 낮으며 학대경험률이나 자살생각률이 높은데, 이들은 중년기에서 노년기 진입에 따른 적응과 상대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독거노인 중 여자노인의 경우 기타 형태의 거주가 많고 단독주택 거주율이 높으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률과 자살생각은 남자에게서 높아서 심리적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37〉과〈 표 3-38〉 참조).

〈표 3-35〉 노인단독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생활 환경 및 안전 실태

1. 독거가구

(단위: %, 가구)

특성		지역		연령					성		전체
		동부	읍·면부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남자	여자	
생활 환경	자가율	43.8	58.9	54.8	57.9	47.2	41.7	40.4	47.0	50.1	49.6
	주택종류										
	단독주택	43.9	92.7	59.9	61.7	62.7	65.0	67.9	53.8	64.4	62.9
	아파트	28.1	3.5	14.7	19.3	18.6	22.2	15.0	19.9	18.3	18.5
	연립주택	5.5	0.6	4.5	4.2	2.8	2.7	3.7	2.0	3.8	3.6
	다세대	19.2	1.8	15.3	13.0	12.9	9.1	11.2	18.9	11.3	12.4
	기타	3.4	1.3	5.7	1.8	3.0	1.0	2.1	5.3	2.1	2.6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율	26.0	34.9	26.0	25.7	31.8	30.9	36.2	25.9	30.1	29.5
안전 실태	안전사고 경험률	6.5	6.4	6.0	6.9	6.5	6.4	6.4	4.3	6.9	6.5
	학대 경험률	18.2	12.1	21.0	13.8	17.7	13.6	11.7	20.3	15.1	15.8
	자살 생각률	16.8	12.4	17.7	14.8	15.7	14.2	11.7	21.6	14.1	15.1

2. 부부가구

특성		지역		연령			전체
		동부	읍·면부	부부 모두 70세 미만	부부 모두 75세 이상	그 외 연령군	
생활 환경	자가율	76.8	88.5	80.0	75.7	82.6	81.1
	주택종류						
	단독주택	38.8	92.5	55.5	63.2	59.3	58.4
	아파트	37.7	4.0	26.1	24.2	25.4	25.5
	연립주택	4.5	1.2	3.8	2.6	3.2	3.3
	다세대	14.7	1.1	10.9	8.2	8.9	9.8
	기타	4.2	1.2	3.7	1.8	3.1	3.0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율	12.3	23.1	13.2	24.0	15.3	16.2
안전 실태	안전사고 경험률	3.3	6.0	3.3	5.6	4.8	4.3
	학대 경험률	12.1	9.9	13.0	8.7	11.8	11.3
	자살 생각률	10.3	7.5	9.8	10.0	9.0	9.3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표 3-36〉 노인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생활 환경 및 안전 실태

1. 독거가구

(단위: %, 가구)

특성		교육수준					경제상태					전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생활 환경	자가율	47.6	54.3	46.5	52.1	45.3	41.9	52.2	59.7	85.5	41.7	49.6
	주택종류											
	단독주택	73.5	56.9	49.3	32.4	11.5	69.4	62.2	51.9	25.0	50.0	62.9
	아파트	11.2	22.9	25.0	38.6	59.6	12.6	19.7	26.7	50.0	50.0	18.6
	연립주택	3.0	4.4	4.2	5.5	0.0	4.3	3.6	1.9		0.0	3.6
	다세대	10.7	13.3	13.9	20.7	13.5	12.0	12.8	13.7	8.9	0.0	12.4
	기타	1.6	2.4	7.6	2.8	15.4	1.7	1.7	5.7	16.1	0.0	2.6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율	37.7	20.9	22.4	11.0	9.4	38.0	26.0	18.3	7.1	15.4	29.5
안전 실태	안전사고 경험률	7.3	5.0	4.2	5.5	11.5	7.2	5.7	8.0	1.8	0.0	6.4
	학대 경험률	15.9	13.5	17.5	23.4	13.5	18.7	14.6	13.7	3.6	0.0	15.8
	자살 생각률	13.8	13.6	25.4	15.9	32.1	18.6	13.0	10.7	12.7	23.1	15.1

2. 부부가구

특성		교육수준			경제상태					전체
		부부 모두 초등학교 이하	부부 모두 고등학교 이상	그 외 학력군	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생활 환경	자가율	80.3	86.1	80.2	74.3	77.9	86.2	95.3	91.8	81.1
	주택종류									
	단독주택	71.5	29.6	53.9	58.8	63.5	57.8	36.7	34.2	58.4
	아파트	14.2	57.7	26.7	19.7	21.6	26.9	47.0	54.7	25.5
	연립주택	2.9	2.8	4.0	6.3	2.6	3.0	3.2	0.9	3.3
	다세대	9.8	6.2	11.0	12.4	11.0	7.4	7.5	4.3	9.8
	기타	1.6	3.8	4.5	2.9	1.3	4.9	5.7	6.0	3.0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율	22.0	7.2	12.9	25.1	18.1	10.5	10.0	4.2	16.2
안전 실태	안전사고 경험률	5.4	3.1	3.5	3.9	5.0	3.7	2.5	5.9	4.3
	학대 경험률	10.4	11.8	12.2	14.4	11.6	10.4	6.8	7.8	11.3
	자살 생각률	10.4	8.9	8.2	13.8	11.1	6.2	1.4	3.4	9.3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노인단독가구의 제특성별 생활의 안전 관련 도출된 특징을 정리해보면 〈표 3-37〉과 같은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37〉 생활 환경 및 안전 실태 관련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제특성별 다양성

<table>
<tr><th>영역</th><th>독거가구</th><th>부부가구</th></tr>
<tr><td rowspan="3">지역</td><td colspan="2">단독주택거주율: 도시〈농어촌
(독거가구 43.9% 대 92.7% 부부가구 76.8% 대 92.5%)</td></tr>
<tr><td>안전사고 경험률 지역별 차이 없음</td><td>안전사고 경험률: 도시〈농어촌
(3.3% 대 6.0%)</td></tr>
<tr><td colspan="2">학대, 자살생각률: 도시〉농어촌
(학대경험률: 독거가구 18.2% 대 12.1% 부부가구 12.1% 대 9.9%)
(자살생각률: 독거가구 16.8% 대 12.4% 부부가구 10.3% 대 7.5%)</td></tr>
<tr><td>연령</td><td colspan="2">연령이 낮을수록 학대경험률, 자살생각률 높음.
(학대경험률: 독거가구 21.0%~11.7% 부부가구 12.1%~9.0%)
(자살생각률: 독거가구 16.8%~12.4% 부부가구 10.3%~7.5%)</td></tr>
<tr><td rowspan="2">성</td><td>안전사고경험률: 남자〈여자
(4.3% 대 6.9%)</td><td>-</td></tr>
<tr><td>학대경험률, 자살생각률: 남자〉여자
(학대경험률: 20.3% 대 15.1%)
(자살생각률: 21.6% 대 14.1%)</td><td>-</td></tr>
<tr><td>교육 수준</td><td colspan="2">교육수준별 안전사고의 경험률 차이 크지 않음.</td></tr>
<tr><td rowspan="2">소득 수준</td><td>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안전사고 경험률이 높음.(7.2%~0.0%)</td><td>안전사고 경험률과는 특별한 경향성 없음</td></tr>
<tr><td colspan="2">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대경험률이 높음.
(단독가구: 18.7%~0.0% 부부가구: 14.4%~7.8%)</td></tr>
</table>

제4절 종합

제1절부터 제3절에서 이루어진 분석결과 도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단독가구(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특징

단독가구 거주 노인은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에 비하여 중 읍·면부 거주 비중이 높다는 특징(37.2% 대 21.2%)과 더불어 85세 이상의 고연령 노인이 적은 편이라는 특징(4.6% 대 9.5%)을 갖고 있다. 이는 85세 이상의 경우 건강상태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인적자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사회적 자원인 자녀나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가족·사회적 자원의 작동 실태를 살펴보면, 단독가구인가 여부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들어나고 있다. 단독으로 생활하는가 여부에 따른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패턴에 차이가 있어,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경우는 양방향 유형이 많아 84.1%에 달하고 있으며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에게서는 부양제공형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14.2% 대 22.0%). 또한 다양한 도움의 교환에 있어서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수혜율은 높지만 제공률에는 단독가구 여부에 따른 큰 차이가 없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연계망 유형을 살펴보면 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경우는 고립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립형: 7.5% 대 1.4%).

경제적 측면에 관련해서는 공적 연금수급률과 기초노령연금수급률에서는 단독가구 여부에 따른 차이가 적지만 기초생활보장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어 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7.1%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며 다양한 소득지표에서 반복적으로 단독가구 거주 노인이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독가구의 경우 집중적인 공적인 기본생활 확보가 필요한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실제주거비와 주택유지 및 수선 비용이 비단독가구 거주의 두 배를 넘고 있어, 단독가구의 경우 필수적인 주거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케 한다. 더불어 물리적 환경에 있어 부부가구에 비하여 독거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활하기 편리한 공간인 아파트 거주율이 낮다는 점도 관심을 필요로 한다.

2. 노인단독가구(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다양성

가.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점

분석을 통하여 노인독거가구 중에서도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상의 차이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독거가구의 경우 80세 이상의 비중이 높고, 이러한 독거가구의 비교적 높은 후기노인의 비중은 비교적 낮은 건강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거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부부가구 거주노인의 교육수준은 활발한 사회참여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단체활동참가율이 약 2배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이는 비교적 높은 여가만족률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 및 사회관계를 보면 독거가구는 자녀로부터 가사서비스, 수발, 정기적인 현금 수혜율이 높은데 이는 부모가 혼자 생활하는 경우 자녀들이 부담감을 느끼며 부모를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

문으로 보인다. 부양의 교환유형에서 독거가구의 경우 일방적 수혜형이 20.7%로 부부가구의 11.3%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부부가구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은 등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가구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부부가구는 활발한 생활과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특징이 도출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독거가구와 부부가구를 비교해보면 모든 객관적 및 주관적인 항목에서 독거가구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독거가구의 경제적 보호망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지출에 있어 주거 및 수도광열비, 실제 거주비 등이 큰 압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 부부가구의 경우 외래의료비와 입원비, 문화여가비가 많아서 절대적인 지출액에 있어서의 차이(68만 5천원 대 90만 6천원)뿐만 아니라 지출구성에 있어서의 차이도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더불어 건강과 관련해서는 독거가구가 다양한 건강문제를 갖고 있지만 운동이나 건강검진과 같은 건강행위 실천율이 낮아 향후 이들의 건강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다양한 사회참여율도 독거가구가 부부가구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및 심리적 안전 정도도 부부가구에 비하여 월등히 낮다. 이러한 결과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독거가구의 삶이 부부가구에 비하여 그 수준이 낮고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나. 제특성에 따른 다양성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면서 내부적인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먼저 지역에 따른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독거가구와 부부가구는 공통적으로 도시에 비하여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가구의 경우

(손)자녀수가 많고 자녀로부터의 부양의 수혜율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간 차이는 부부가구의 경우 더 크다.

또한 도시지역 노인단독가구의 가구소득이 많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독거가구의 경우 사적소득의 비중이 농어촌 지역이 더 높은 반면 부부가구의 경우는 도시지역이 더 높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도시지역 거주 부부가구의 경우 경제적인 독자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사회참여 실태를 비교해보면, 독거가구나 부부가구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반면 도시에서는 평생교육과 여가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이 모두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안전사고 경험률은 독거부부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지만 부부가구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반면 학대경험률이나 자살생각률은 도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공통적이다.

두 번째로 연령에 따른 다양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정서적 교환이 낮은 대신 가사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받는 수혜율이 높은 경향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후기노인의 경우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가구소득 수준이 낮고 자녀세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공통적으로 연령에 따른 건강상태의 악화가 발생하고 있다.

세 번째로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른 노인단독가구 내의 다양성을 살펴보면,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공통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손)자녀수와 형제자매수는 적은 대신 가까운 친구이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구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으면 사적소득의 비중이 낮고 공적 소득 비중이 높다. 반면, 독거가구의 경우는 교육수준 등 제특성에 따른 차

이가 미미한데, 이는 사적소득구성비가 45%로 절대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즉 독거가구의 사적소득에 대한 의존도라는 측면에서 동질성이 높은 것이다. 반면 부부가구는 제특성에 따른 소득수준과 구성의 다양성이 큰 편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다양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지표의 수준 또한 높다. 특히 우울증 유병률에 있어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부부가구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고, 가구소득에 따른 운동실천율의 차이 또한 부부가구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와 관련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경로당 이용률이 낮고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으며 여가문화활동 만족률이 높다. 반면 교육수준에 따른 안전사고 경험률의 차이는 크기 않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안전사고 경험률이나 학대경험률이 높은 특징이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4장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질적 접근

제1절 집단 면접
제2절 일대일 면접
제3절 종합

4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질적 접근

본장에서는 양적 자료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단독가구 형성과정 및 생활 현황, 고민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집단면접과 일대일 심층면접이라는 질적 접근을 실시하였다.

제1절 집단 면접

1. 개요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은 이미 노년기에 진입해있는 65세 이상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1차 집단면접(2014년 5월 28일)과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한 2차 집단면접(2014년 5월 29일)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중년층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고, 노화의 진전에 따른 건강상태의 변화 및 경제활동, 가족주기의 변화에 따른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진행의 수월성과 좀 더 구체화된 새로운 고민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도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집단면접을 통하여 노년기 단독가구 거주자의 삶에서 주요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일대일 심층면접에 반영하고자 한다.

2. 노인(65세 이상) 대상 집단면접

노인 대상자에 대한 집단면접에는 8명이 참가하였으며 남자 3명 여자 5명으로 60대가 3명, 70대가 5명이다. 이 중 6명은 부부가구이며 2명은 독거노인이다. 이들의 주관적인 생활수준은 상층(중상 포함)이 2명, 중산층이 3명, 하층(중하층 포함)이 2명으로 고른 경제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층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다. 집단면접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 집단면접(FGI)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성	연령(세)	가구형태	자녀수	주관적 생활수준	거주지역	특이사항
노인	참여자A1	남	68	노인부부가구	1남2녀	중상	서초구	제2의 일자리
	참여자A2	남	71	노인부부가구	1남2녀	중	서대문구	자원봉사 아내 건강 나쁨
	참여자A3	남	75	노인부부가구	1남2녀	중	중랑구	
	참여자A4	여	78	독거가구	없음	하	성북구	기초보장수급자
	참여자A5	여	67	노인부부가구	2남	중하	강동구	
	참여자A6	여	69	노인부부가구	1남1녀	상	강남구	
	참여자A7	여	73	노인부부가구	1남1녀	중	분당구	남편 건강 나쁨
	참여자A8	여	78	독거가구	없음	하	성북구	올해 사별 기초보장수급자
예비 노인	참여자B1	남	62	부부가구	3명	중	영등포구	은퇴/자원봉사
	참여자B2	남	63	부부가구	2남	중상	강남구	자영업 2남 모두 미혼
	참여자B3	남	61	부부가구	1남1녀	중	마포구	은퇴
	참여자B4	여	57	주말부부	2남	중하	도봉구	
	참여자B5	여	62	부부가구	있음	중	중구	적극적인 노후거주지 탐색중
	참여자B6	여	62	독거가구	없음	중하	분당구	이혼 후 독거
	참여자B7	여	60	부부가구	1남1녀	중	마포구	남편 건강 나쁨 아이돌보기 부업

가. 독거가구의 생활 현황과 관심사

본 집단면접에 참여한 독거노인은 모두 자녀가 없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다.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배우자의 사망이 참여자의 삶에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 아저씨가 18년을 암으로 계시다가. 암도 한가지가 아니고 네가지. 후두암, 간경화, 폐, 네가지 앓다가 6년만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서 .... 돌아가신지 5개월 넘었어요. 얼마 안됐으니까 손에 일도 안잡히고(참여자A8).

독거생활 속에서 쓸쓸함을 느끼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의지가 되는 것은 지역자원이다. 또한 긴 적응 과정 속에서 교회와 같은 단체(종교)활동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후기에 갈수록 기동력의 저하로 인하여 이마저 제한을 받게 된다.

> oo약국에서 반찬을 대줘요(참여자A8).

> (주변으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동네분들하고 가끔 대화도 좀 하고 오라고 해서 밥도 좀 먹고 그러고 살고 있죠.....아플 때 제일 외롭고 그렇죠... 교회 다녔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안다니고 있어요(참여자A4).

나. 노인부부가구의 생활 현황과 관심사

1) 부부가구 형성과정과 적응

부부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참석자는 대부분 자녀를 결혼시킨 후 부부만 남아 빈둥우리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자녀와의 가구분리에 대하여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자는 속마음은 같이 살고 싶지만 시류를 생각하여 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자는 함께 사는 것에서 발생하는 가사노동 등으로 인하여 남자에 비해서는 독립가구 형성을 반기는 편이다.

> 저희들끼리 짝 지어서 저희들끼리 결혼했는데.... 집에서 한번도 잔적이 없어요. 제사가 있어도 저녁에 제사 지내고 가버리고. 그것도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더라구요(참여자A1).

> 그런데 난 그걸 좋게 받아들여요. 본마음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죠(참여자A6).

> 지나고 보니까 그쪽에서 해방되버리니까 잘 했다는 생각도 들고(참여자A2)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는 못해도 포기하는 것은, 이혼율이 높아진 것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자녀세대의 부부중심적 사고에 동참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방법이라는 인식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놔주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건 마음가짐 같아요(참여자A3).

자기들만 사이 좋게 잘 지내면 다행이다라는 생각하는게 제일 (중요하죠)(참여자A6).

이는 한편 본인의 생활 속에서도 배우자의 중요성을 점점 더 강하게 인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부간에 내가 100% 잘 해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참 헌신적으로 내 마음이 우러나는 그대로 모셔야 그게 진짜 좋은 일인데 그게 잘 실천이 안되더라구요. 요즘은 가만히 생각하면 부부간밖에 없는데...(참여자A7).

이러한 빈둥우리 시기의 생활은 일정한 적응기를 거쳐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지만 배우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적응의 과정이 요구된다. 참여자A2의 경우 아내의 척추 및 인공관절 수술로 인하여 이젠 살림꾼이 되었다고 한다.

혼자의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같이 운동해보려고 하는데 몸이 안좋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더라구요...(혼자 남게 될 때를 대비하여) (보험 같은) 준비는 없고 다만 ... 뭔가 알아야겠다 싶어서 가끔 요리도 해봅니다(참여자A2).

또한 부모의 건강악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기도 한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니까 내 스스로가 불효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런데 누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불효가 아니다. 집에서 집사람이 한다든지 내가 할 때는 더 가정이 황폐화되니까 요양원에 해라. (중략) (그래서) 요양원으로 보내는게 불효같은 생각을 아예 내 스스로 불식시켜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참여자A1).

2) 현재의 생활

이들의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과 걱정과는 달리 현재 생활을 그리 언급할 것이 많지 않다. 반복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매우 간단하였다. 이는 현재의 생활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며, 자신과 배우자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관심사라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수준이 중산층 이상인 경우 남자들은 꼭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더라도 '그냥 놀기'뭐해서 자원봉사나 일을 하거나, 취미활동 등 나름대로의 소일거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대체적으로 부부가 따로 여가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년기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사실은 그냥 놀기는 뭐하니까 봉사를 많이 다니는 걸로 하고 있어요.. 둘이 같은 취미를 갖는게 제일 좋다는 것이... 저는 다행인게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같이 낚시를 다녔어요(참여자A3).

> (여가생활을) 따로 또 같이. 그럭저럭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참여자A6).

> 건강이 받쳐줘야 되고 같은 취미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 나이 들면 그렇게 (부부가 따로)(참여자A2).

> 나는 따로 모임도 따로 하고 여행도 따로 가지는 않고(참여자A5).

3) 미래에 대한 전망과 준비

신체적인 노화와 그 결과로 다가올 본인과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구체

적인 설계는 없지만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어떤 방법이던 간에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주택연금) 그 제도 자체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식들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을 하다보니까 노후대책이 아무것도 없는거에요(참여자A1).

연금 갖고 생활하면 되지만 병원비가 문제 되잖아요. 그럴 때는 모기지론을 하려고 해요. 꼭 자녀들에게 돌려준다기보다 그걸 활용을 해야죠(참여자A2).

또한 배우자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서로 내재화된 성역할로 인하여 여자는 남편이 홀로 남는 것에 대하여, 남자는 스스로 생활하지 못할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모르겠어요. 만약에 바꿔서 집사람이 먼저 죽었다면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1년을 버틸지 2년을 버틸지 그건 자신을 못할 것 같아요(참여자A1).

저는 아빠를 보내고 제가 가야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어디에 있더라도 며느리집에 있든 딸집에 있든 무엇을 하더라도 붙일데가 있는데 남자 혼자 두고 가면 못갈 것 같아요(참여자A7).

3. 예비노인(50대 후반~60대 초반) 대상 집단면접

예비노인 집단면접은 노년기 진입에 대한 구체화된 생각을 할 수 있는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으로 대상자를 설정하였다. 집단면접에는 7명이 참가하였으며 남자3명 여자4명으로 57세부터 63세까지의 연령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중 1명은 이혼 후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1명은 주말부부, 그 외는 일반적인 부부가구이다. 이들의 주관적인 생활수준은 상층(중상 포함)이 1명, 중산층이 4명, 하층(중하층 포함)이 2명으로 고른 경제상태를 보이고 있다. 집단면접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과도기로서의 특징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은 대체적으로 건강하여 본인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나 퇴직 등으로 사회적 위상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퇴직 후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시기이다. 특히 공적 지위에 많은 의미를 두어온 남자들의 경우 이러한 적응이 쉽지만은 않다.

> 퇴임하고 나니까 평소에 현직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현실에 오니까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싶어서 편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참여자B3).

또한 전세대인 현재의 노인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즉 전세대와는 다른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다르죠. 지금 우리보다 10년 더 위라고 하면 모든게 다...애들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안돼요(참여자B5).

나. 계기가 되는 사건들: 예상하지 못한 건강문제, 경제악화

일상생활에 있어 변화를 요구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경제상황의 악화나 건강문제의 발

생이다.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삶의 태도, 가족의 미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의 역학에도 변화가 오고 자녀에 대한 기대와 행동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 IMF때 폭삭 망해서 그 전의 생활하고 그 이후의 생활하고 180도, 360도가 바뀐건가. 바뀌었는데 애들은 다행히 그냥 그냥 공부를 잘 해줘서(참여자B7).

> (남편이 쓰러졌을 때) .. 뭘 챙겨야 되는데 자식도 생각 안나요.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도 안나고. 보통 119를 부르잖아요, 119가 생각이 안나요(참여자B7).

> (남편이 아프니까)..혼자 남았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남편이 아프고 나서 기가 좀 죽었죠....사실 옛날같으면 아이들 부담을 안주려고 제가 여행을 안갔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의미로 그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참여자B7).

다. 세대관계 정립에 대한 고민

현세대 노인과 자신들이 다르다는 주장의 중심에는 세대관계가 놓여있다. 전세대와는 달리 그들은 자녀와의 동거는 기대하지 않고 있고, 자녀가 그들의 자녀교육에 드는 비용을 생각할 때 부모로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편 부모에 대한 관심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필요성을 느끼고도 있다. 즉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로 성인자녀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참여자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생계는 확보된 중산층이 다수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싶어하는게 아니고 자기 앞가림 하다보면 아무래도 자기 부모한테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참여자B3).

교육을 시켜놨어요. 세 자녀가 (용돈을) 주죠... 일단 너희들도 부모한테 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참여자B1).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이라는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세대는 희생을 어느 부분 해주고 갔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게 없어요. 그걸 연습을 안시켜주면... 이 양반도 대기업에서 임원을 지내던 사람인데 일주일에 자기 한테 시간이 이틀밖에 없어요. 월요일, 화요일. 왜 그러냐니까 손자들 드라이브시켜주고 그러다보니까... 제일 처음에 7, 8년 전에 양육비를 준다는걸 자기 부인이...우리가 받아서 뭐하느냐 안받는다고. 그런데 지금은 자기 부인도 후회를 한대요. 7, 8년 정도를 몇십만원씩 받았으면 지금 상당히 돈이 되있을텐데(참여자B2).

라. 노후생활에 대한 다양한 모색

현세대 노인과 이들 예비노인이 구분되는 점은 노후생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실제 참여자가 직접언급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보다 이러한 측면이 면접과정에서 더 크게 부각되었다. 이를 통하여 정책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몇가지 분명한 관심사와 관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배우자가 매우 중요한 존재이지만 언젠가는 혼자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의식이 있을 때 본인의 후기노년기에 대한 당부의 말과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배우자뿐만 아니라 친구가 노후생활에서 중요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부부가 살다가도 같이 가는게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데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참여자B5).

차라리 딸한테 미리 만약에 엄마가 정신이 없어질 때는 이 통장을 네가 갖고 가고 나를 거기에 보내다오. 왜냐하면 그때는 정신 없어서 그걸 못해요(참여자B7).

가족 친지도 중요하지만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구(참여자B6).

한편, 중산층의 경우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많은데, 관심도에 비하여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화된 주택연금 외에도 주택가격이 싼 지역으로 이주하던지, 공동생활을 모색해보는 것과 같은 다양한 선택지를 모색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에 대하여) 저는 생각 안 했어요.....나 아는 사람이 은행에 상담을 해봤대요. 그러더니 너무 작다고 하더라구요...(참여자B4)..

생활은 된다고.. (들었는데)(참여자B5).

서울이랑 분당에 아파트 사면 전세라든지 현금을 빼서 쓰잖아요. 그게 안되면 가격이 좀 싼 시외로 나가서 살아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참여자B6).

우리도 뷔페 하려면 혼자 하려면 힘든데 셋이 하나만 갖고 오면 괜찮게 되듯이 공동생활 하는데 저는 그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그걸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나도 고생 안하고 힘들게 안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살지 않으려면 이만큼 준비하면 각자 괜찮을 것 같아서 (참여자B5).

그러나 아직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 뿐 자녀세대와 공유된 고민은 아니다.

> 감기라든지 몸살 와서 아플 때 약간 우려는 해봤지만 그 이상은 아직까지는 더 깊이까지는 …나중에 한사람이 먼저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건가 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어요. 염려는 되지만. 염려는 하고 있지만 그 깊이까지는 생각을 안하고(참여자B3).

> 아직 자녀들하고는 그런 걸로 입을 안 떼봤습니다(참여자B3).

마. 기타

심층면접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강조한 점들은 향후 이들의 욕구에 상응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들은 노인만을 위한 주거환경보다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환경을 선호하고 있다. 고령자만 모여 살 경우 지역의 활기부족과 죽음이 가져올 우울한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 어느 도시에 전원주택을 만들어서 분양할 테니까 정부에서 만들어서 해버리면 거기는 완전히 노인집단이 되버리고 그럼 사는 재미가 없어져요….(참여자B3)

> 맨날 보는 그 얼굴이 안보이면 죽고 나가버리고 없다는 거에요(참여자B2).

둘째, 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 또한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동상의 편의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아동뿐 아니라 노인에 의한 소음발생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 때문에도 층간소음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층간소음은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건설회사에서 집을 잘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노인분들 운동한다고 하지 치매 걸리면 막 뛰고 그러잖아요. 그럼 밑에 층 사람들하고 화합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방지해야 되고(참여자B1).

우리 집사람이 암에 걸려서 기어다닌다 이럴 때는 문턱도 없애고 완전히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참여자B3).

셋째, 부부간의 욕구가 다를 수 있고 따로 또 같이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부부도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남편은 전원생활을 그리워해도 아내는 편리한 도시를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점, 생활리듬상의 차이로 각방을 쓰는 부부가 많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의 중요성 또한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부가 따로 또 같이 생활하면서도 의지가 될 수 있는 주거환경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부터 잘 몰랐으니까. 일이 있어서 주민센터에 가봤더니 이용할 수 있는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노후생활이 즐겁지 않겠느냐(참여자B1).

(아내에게) 부산 가고 싶어했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번 꺼냈다가 혼이 났어요.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참여자B2)... [이러한 언급에 대하여] 불편한 시골에 안가고 싶어하죠(참여자B5).

둘 다 건강하면 되는데. 현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루에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아마 10분이 안될거에요. 생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다르다보니까.. (사례B2).

50대 초반부터 각방 쓰는 사람이 거의 다에요(참여자B4).

50 되고 60 되면 전부 사랑채 있고 안채 있는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까지 각방을 안 쓰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상하다고 할 연령층은 아니지 싶은(참여자B3).

이제 나이 먹으니까 신랑의 귀중함을 느끼겠어요. 젊었을 때는 귀중한걸 못 느꼈어요(참여자B4).

제2절 일대일 면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추적조사 지역(서울시 정릉동(대도시), 전북 익산시(중소도시), 충북 월촌면(농어촌))의 단독가구 노인을 기반으로 하여 일대일 면접 대상자를 12명 선정하였다. 또한 이에 추가적으로 독거노인돌봄종합지원센터에서 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을 각 지역별로 1명씩 추가하여 총 15명에 대한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이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서비스를 받는 노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에 실시된 지역추적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지역, 성, 연령, 경제상태 등을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8]. 이는 가능한한 다양한 사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총 15명 중 독거노인 8명, 부부가구 노인 7명이 조사되었으며, 각각 65~74세까지의 전기노인 8명과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이 7명 포함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6명 여자가 9명이며, 대도시 거주자 6명, 중소도시 거주자 3명, 농어촌 거주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상태는 다수가

8) 2013년 1차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패널로 참여할 것과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은바 있음. 본 심층면접에 참여한 노인의 경우 전화접촉을 통하여 연구개요에 대한 설명과 참여의사를 확인하였고, 연구참여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하였음.

서민층이며 빈곤층으로 판단된 경우가 4명이었다. 일대일 면접이 이루어진 사례의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2〉 일대일 면접 대상자의 특성

사례			지역	성	연령	자녀수	교육수준	생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독거노인	전기(65~74세)	사례1	대도시	여자	66세	2남1녀	무학	서민층	건강
		사례2	중소도시	여자	72세	2남1녀	초등중퇴	서민층	그저 그렇다
		사례3	중소도시	남자	74세	3남	초졸	서민층	-
		사례4	농어촌	여자	69세	3남2녀	무학	빈곤층	장애인
	후기(75세 이상)	사례5	대도시	남자	75세	2남	대졸	빈곤층	-
		사례6	대도시	여자	77세	2녀	무학	빈곤층	나쁜 편
		사례7	농어촌	남자	82세	2남2녀	초졸	서민층	나쁨
		사례8	농어촌	여자	87세	4남3녀	무학	서민층	-
부부가구노인	전기(65~74세)	사례9	대도시	여자	71세	2남1녀	고졸	서민층	매우 나쁨 (배우자: 건강)
		사례10	대도시	여자	65세	1남1녀	중졸	서민층	나쁜 편 (배우자: 건강)
		사례11	농어촌	여자	72세	2남1녀	대학중퇴	서민층	그저 그렇다 (배우자: 건강)
	후기(75세 이상)	사례12	대도시	남자	79세	1남3녀	중졸	빈곤층	건강한편 (배우자: 나쁜 편)
		사례13	중소도시	남자	81세	2남3녀	대졸	서민층	건강한 편 (배우자: 그저 그렇다)
		사례14	농어촌	남자	77세	2남2녀	초졸	서민층	건강한편 (배우자: 그저 그렇다)
		사례15	농어촌	여자	79세	2남3녀	무학	서민층	그저 그렇다 (배우자:나쁨)

주: 1) 면접자가 면접결과 ① 여유있는 중산층, ② 서민층(생존은 가능하나 여유는 없음), ③빈곤층으로 구분하였음.
2) 2013년 설문조사 결과임. 따라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보한 사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음.

1. 독거노인

가. 독거과정과 미래 전망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독거에 이르게 된 과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배우자를 사별하고 자녀와 함께 살다가 자녀가 다 결혼 등으로 독립하여 혼자 살게 된 경우(사례1, 사례2, 사례6)와 자녀를 독립시키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다가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혼자 생활하게 된 경우(사례3, 사례7, 사례8)이다. 한편, 사례4나 사례5와 같이 남편과의 원만하지 않는 관계와 자녀의 독립/동거의 유동적인 거주형태 등이 섞여 있어 어떤 사건이 먼저였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본인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데, 도시지역은 독자적인 생활에 대한 선호, 농어촌 지역은 익숙한 지역을 떠나기 싫은 마음이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었다.

> 결혼하면 따로 살라고 했지. 나 혼자 살 수가 있었으니까.....나는 맨날 생각해.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가야지. 아들네 가서 누가 간병을 하겠어. 힘든 것보다도 저희 둘 다 직장다니는데 그게 되겠어요? ...저희 살기 바쁘지, 돌볼 수가 없어, 서로 감정들만 상하지. 긍게, 나 혼자 여기 살지, 간병인을 두고 살더라도(사례1).

> 내가 말이야, 혼자 살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해, 며느리 눈치 안보지, 아들 눈치 안보지(사례5).

> 내가 안갔지. 가면 그거 뭐, 편하긴 편할 테지만 도시에, 아파트에, 창살이 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 여기는. 그래서 그냥 혼자 여기서 지낸다고 했지(사례7).

(큰 아들이) 오래요.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여기가 본래 본토박이래서(사례8).

배우자 사망 후 2~3년간은 많이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나, 다수가 독거생활을 오래해와 현재의 생활에 대하여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불만이나 향후 생활에 대한 기대도 없다. 일부는 자녀가 비교적 동일한 생활권에 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양한 가전제품의 도움을 받아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언젠가 다가올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비교적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혼자 생활하는 것에 따른 정신적인 외로움은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께서 돌아가시고 나셔서 어떠셨는지] 아유, 적응이. 따라 죽을수는 없고, 그거 뭐 말로 다 못하지..한 2~3년 동안은.. (생략) 제일 뭐시기 한건 혼자 사니까 제일 외로운거, 그거 아주 고독이라는 거 겪어본 사람 아니면 몰라. 아무 대화가 없잖아. 제일 그게 뭐시기지 뭐(사례7).

방안에서 밥도 해먹고, 세탁기가 있으니까 세탁기가 다 하고, 전기 들어오고 하니까 뭐 옛날보다 낫지요. 그 옛날엔 홀애비되면 3년 안쪽으로 다 죽었디야. 그래도 지금은 오래 살고, (홀애비인줄) 남이 모르잖어. ... 애들도 자주 와주고(사례7).

혼자 사니까, 이제 혼자 있으니께. 그냥 그냥 살고. 얼른 아프지 말고 조용히 갔으면 좋겠어요(사례8).

나이 많이 먹어서 오래 살아서 뭐하게. 난, 빨리 가고 싶어요.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오로지 나는 그것뿐이에요(사례6).

나. 생활 현황

1) 자녀 및 지역사회관계

독거생활에 있어 자녀와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생활에 활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녀가 문제상황에 있을 때 이는 노인에게 괴로움과 고립을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기도 한다. 사례3의 경우는 동거하던 큰아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 사례3과 사례4에서 보듯이 독거 자체보다는 자녀와의 갈등과 자녀에 대한 걱정이 삶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 안와요, 안와. 무직이고, 전화 오는 것은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아줌마 있지, 그 아줌마(돌보미를 지칭함) 아니면 전화도 없어. 어디 오는데도 없어.....나이 들어간께 외로운 것만 생각나고, 너무나 외롭네 내가(사례3).

> (정부에서 나오는) 한 달에 59만원.. 나 혼자 먹고 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새끼 땜에 그렇지. ...아들 딸 안 주지. 내가 쓰고, 댕기고, 먹고, 옷 사입고. ... 내가 드러워서 나도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에 나물 뜯어가지고 가서 하루에 가면 5만원은 벌어요. 아들이 팔아달라는 거 도저히 못 팔겠더라고(사례4).

> 네. 서울에 온 거는 12년 됐고, 부도 난거는 한 3년 되었나. 집을 팔아서 올라왔으나 딸도 같이 사업에 실패해서, 걔도 망하고 내 돈 있는 거 다 날아가고, 그래서 비참하게...다 나의 운명이다. 인생이 끝났는가 보다(사례6).

한편,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지인이 많고 그들이 연락을 취하며 일신상의 변화가 있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준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 실제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기도 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구역에 구역장이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플 때) 그분들에게 연락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생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고립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사례1).

한편, 특성별 사회적 관계의 특징이 발견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알고 지내던 사람이 사망하고, 친척의 경우 경제수준의 차이가 있으면 관계가 소원해진다. 즉 후기노년기로 갈수록 사회적 연계망이 축소되는 것이다. 또한 노화의 진전에 따라서 본인의 기동력이 떨어지면 행동반경도 줄어 외부에 나가는 일이 줄고 활동도 축소되게 된다.

남보다도 더 못 한게 동기간입디다. 그것도 잘 살고, 서로가 비슷 비슷혀야 사돈팔촌이라도. ... 에, 돈이 좀 많지요....그런 사람이 여 오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전화 한통화도 않고(사례3).

그냥, 여기서 그냥 왔다갔다 운동하고, 외부로는 못나가요. 오전에, 지역주민들중 친한 사람들이 놀러와요. 4등급 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신부님과 수녀님이 한 번씩 오셔서, 우리 집 방에서 기도해요(사례6).

올해는 못 가봤어요, 시내. 벼르다가 벼르다가 엄두가 안나가지고. 전에는 꽤 많이 나갔는데, 올해는 못나갔어요, 진짜(사례8).

(여행을) 일 년에 노인회도 가고, 부녀회도 가고 두 번씩 가거든. 올해는 너무 힘에 부쳐서.. (힘이) 아무케도 좀 딸리지요. 괜히 쫓아 다니지 못하면 안 간다고, 그냥 여행 가는데 안 갔어. 괜히 남한테 귀찮게(사례8).

저기 절에 댕기다가, 요즈음에는 접때는 절에도 못 갔어요. 올라가기 힘들어서(사례8).

지역별 차이 또한 발견되는데, 특별히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어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직 이장으로 대표되는 지역주민이 중요한 사회적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 이장님은 ....잘 많이 도와줘요. ...여기 동네도 전부 혼자 되가지고, 이 밑에 있는 이도 혼자 되고.....여기 다 고향이니까 다 회관에 모이죠(사례3).

2) 건강과 활동

노인의 대부분은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 단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가 여부만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재 독거노인은 어느 정도 혼자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노인들은 특별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또한 별도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 향후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다.

> 어떨 때는 혼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별안간 혼자서 아프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생각만 하고(대책은 없어요)(사례1).

> 혼자 사는 것이 건강만하면 괜찮어. 지금은 자식들도 아프다하면 안 좋아하고 혼자 해결해야한데(웃음). 병원은 한 달에 한번씩 가지요. 혈압약, 고지혈증 약 그것만 먹고, 골다공증은 3개월에 한번 씩 주사 맞고(사례2).

자신은 항상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안 아파야지, 아직까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아픈적은 없어서.. (생략) 나는 솔직하게 오래 살겠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적 덤덤해.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 죽겠다 그런건 아니고, 구태여 오래 살겠다고 오래살고 그렇진 않겠다(사례5).

> 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나 죽으면 화장해라. 화장하고 납골당도 찾지 말고 바다나 산천에 뿌려라. (생략) 시신기증을 할까해, 시신 기증을 해가지고 하면, 아들한테도 부담도 안주지 않겠나...(사례5).

이들의 사회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1의 경우 소득창출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운동하는 등 부수적 효과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되도록 나는 하고 싶지. 돈도 보탬도 되고, 또 거기가니까 이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활동도 되고, 운동도 되지. 정신이 어디 간다는게 있으니까 좋잖아. 내가 아직도 이런걸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간다는게 얼마나 좋은건데. 거기 일하러 가는게(사례1).

한편 종교를 갖고 있는 노인은 교회에 가는 등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활동이 거의 없다.

> 다른 거는 없어요. 교회하고 직장뿐이야. 작업장에 가서 일 하면 재미있어요.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하루 지내야하고 토요일만 내 날이 와(웃음)(사례2).

종교활동도 하지 않는 독거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이 단조롭고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사례3의 경우 새벽 2~3시 기상하여 집안 청소 후 8시 아침

TV드라마를 시청하며 혼자 아침식사를 한다, 이후 세면하고,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거나 의자에서 가벼운 다리 운동으로 시간을 보낸다. 점심은 먹지 않고, 낮잠을 2시간 정도 잔 후 3시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한다. 오후 5시에 저녁식사를 하며, 하루 커피를 아침, 점심, 저녁 3번 마신다.

한편 농어촌에서는 경로당이 여가활동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노인사이에서도 연령대에 따른 차이점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농어촌인 경우 경로당(또는 마을회관)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농한기/농번기에 따라서 이용패턴이 달라진다.

> 경로당이 보통 20살 이상 차이나가지고 그렇게 되니 가야 재미가 없어. 그리고 …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죽고, 병원이나 시설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 나이들면 다 그런거지. 어쩔 수 없이(사례7).

> 근데, (농번기때는) 저 텔레비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요. (농한기에는) 경로당가고. 요새는 농번기 때라서 바쁘니까(사례8).

3) 공적 서비스 이용 실태와 욕구

독거노인 중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거주공간이 깨끗이 관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목격되었다.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는 아닌 빈곤층 노인인 사례4와 사례5의 경우 흙집으로 냉장고 등 집기가 매우 더럽고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었다. 따라서 주거와 관련된 관심이 필요해보인다.

주거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은 서민층의 경우도 적용되는데 사례1과 같이 혼자 살다보니 집수리를 하기도 힘들고 사람을 부르면 돈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집수리를 도와주면 좋겠다거나 사례7처럼 외풍이 쌘 시골집을 수리해주거나 수리를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욕구를 표출하였다.

>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집도 헌 집이니까, 수리하면 수리해도 표도 안나요. 새는 거나 고치고 살지, 제대로 문도 맞지도 않고, 겨울에는 추워요. (생략) 내 손으로 못 고치니까(사례1).

한편, 식생활과 관련한 욕구도 다양하게 표출되었는데, 식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가고 싶지 않거나, 가기가 불편하거나 해서 집으로 반찬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 난 급한게 반찬이라도 갖다 줬으면 진짜 감사하겠어, 밥은 내가 해먹을 수 있어(사례5).

실제 독거노인보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돌보미의 방문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반찬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어 큰 무리 없이(사례3, 사례5)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혼자 생활하면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어, 사례3의 경우 반찬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여 많은 경우 새우젓, 된장만을 반찬으로 하여 식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인터뷰 시작 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119 서비스가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에게 있어 매우 든든한 그늘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4나 사례5의 경우 모두 급하게 아프거나 하는 경우 119를 불러서 응급실을 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비상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2. 부부노인

가. 부부가구 형성과정과 적응

부부가구의 경우 모두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등으로 독립하면서 부부끼리 생활을 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단지 그 전에 부모와 함께 생활한 경험이 있는 즉 확대가족으로 생활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독거가구의 경우와 유사하게 부부만 생활하게 되었을 때 허전하였지만 곧 적응하게 되었다고 한다.

> 실버타운보다 더 싼데 있잖아, 요양병원 같은데, 그런데 갈거에요. 자식들이 데려간다고 하면 생각해보겠지만, 나 스스로는 못 갈거 같애요. [억울하지는 않으세요?] 세대가 바뀌었잖아. 이해가 되더라고(사례9).

> (부부 둘만 남았을 때) 첫 번에는 그렇더니(적적하더니), 애들 다 나가있으니까, 연신 들락거렸지 아이들이. 이제 그것도 잊어버렸지(사례14).

부부끼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는데, 가사노동 분담도 그중 하나이다. (시)부모와 함께 생활했던 경우 이젠 눈치볼 사람이 없다는 점, 남편이 퇴직하면서 시간이 많아졌다는 점 등이 원인인데, 특히 배우자가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그러한 변화는 급격히 일어난다.

> (집안일) 많이 도와주시죠, 청소, 쓰레기 분리하는 거, 무거운거 나르는거는 다하시고. 예전에는 할 새가 없었지, 직장 다니는데, (젊었을 땐) 기저귀 뭐 이런건 다 갈아주셨어요. 제가 수술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안일) 하시더라고(사례9).

그때는. 젊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외지에 나가고 그러면은 집안일 언제 도와줘. 그리고 옛날 노인네들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서 뭐하면 그거 보기 싫어 해(사례10).

물론 집안일과 시장보는 일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원래부터 가사분담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 요새 분담해서 해요 그냥. 우리가 나이가 83세이고 82세이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분담해야지요 아니면 못 혀요 혼자... 분담한다기보담도 거시기하는 것은 지가 솔선수범해서 해요. 돌봐주어야지 어쩌겠어. 돌봐줘야 오래 사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어쩌겠어.. (사례13).

건강상태의 변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배우자의 은퇴이다. 사례9의 경우 집에 잘 없던 남편이 은퇴후 함께 살게 되면서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한다. 하루 삼시세끼 챙겨줘야하는 것부터가 스트레스였으며, 남편이 은퇴 이후 집에서 공부한다고 TV도 맘대로 못보게 되어 우울증까지 생겼었다. 남편 몰래 상담 받았고,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현재는 극복하였다. 그러나 남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집에 계시면 삼시 밥 차려주기 굉장히 힘들어요. (생략) 우리 영감님이 복덕방 시험본다고, 한 3년을 공부해서 붙었어요, 그러니 텔레비전을 보게 해요, 떠들게를 해요, 나는 텔레비전을 봐야지,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생략) 남편 없으면 안되지, 절대 안 되지(사례9).

각방 쓴지는 오래됐어. 우리 영감님이 현장직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집에 자주 안 오셨어. 그래서 젊어서부터 그랬고. (지금은) 티비를 많이 봐, 옛날에는 같이 많이 다녔어요. 요즘은 각자 복지관, 종친회 나가느라...(사례9).

나. 현재의 생활

부부가구의 삶에 있어서 배우자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모두 인시하고 있었다. 배우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둘밖에 없어요.(웃음) 둘이 제일 친해...우리 딸은 또 멀리 살고, 우리 아들은 주일 날 교회 갔다가 얼굴만 서로 보고 가니까는 별로 속 얘기 잘 안 해....남편하고 얘기 할 사람 밖에 더 있어요. ... 옛날 말이 하나도 안 틀리더라고요. 자식은 품안에 자식이라더니, 그 얘기가 딱 맞았어.... 자식은 저들끼리만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부모 공경 하는 것은 옛날 얘기야(사례10).

그러나 부부가 모든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간의 분리와 활동의 분리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사례12처럼 부부가 각방을 쓰고 동반외출도 적은 편이지만 감정적 유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 방요? 따로 써요. 지금 혼자 여기서 자요. 난, 여 자고. 이유가, 이유가 있지.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잘 때 더우면 선풍기를 켜야 되는데, 선풍기 키고, 바람에 날리면 코가 따가우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못자요. ,,,(가사일은) 쓰레기 버리는 것 그런 것만 하지 뭐...(부부가 같이 외출하는 것은) 없지, 뭐... 아 있다. 교회 갈 때 같이 가거든... 그렇지, 주일마다 가니까는,,(부부간) 대화는 없어. 밥 때 되면, 밥 먹고 그지, 뭐... 특별히 얘기하는 부분이 없어요...이제 늙어가지고 할 것 없으니까, 서로가 위하고 사는거지 뭐(사례12).

독거노인의 경우도 확인된 것이지만 자녀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딸이 결혼을 안해서)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와서 상담까지 받았어요. (의사)선생님이 세상 좋아졌으니까 나를 위해 살으라고 하더라고(사례9).

이 외에도 다시 한번 종교생활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멀리 있는 자녀나 친척보다는 가까이서 자주 만나게 되는 교인 등이 삶에 있어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멀리 있는 자식들은 우리 친척들도 그래요. 일 년에 명절 때, 아니면 무슨 날 그 때 얼굴 못 보면 못 보잖아요. 그런데, 교회 식구들은 주일에 한번, 가까이 한 번 더 보게 되면 수요일 날 보게 되고 [중략] 그러니까는 제일 가까운 친척이야, 교회 식구들이(사례10).

또한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귀농 후 지역에 잘 통합되지 못하는 사례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귀농하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의 교류가 적고, 성당 교우들과도 친밀감이 적은 편이다. 지인들과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차츰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고 있으며, 가끔씩 외롭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10년 전 이사로 인해 과거 이웃 관계망이 와해된 상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례13을 통해서도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한 동네 살았어도 만나도 않혀... 아파트가 많으니까, ..근디 여기 이사 오면은, 나 알던 사람도 길가에서 만나면 거시기 할 까, 그 집에 가서 오라고도 않고 그러는디 가서 같이 할 수도 없잖아. 그런 점도...(사례13).

친구들도 옛날에는 만나보고 그랬었지요. 지금은 나이를 먹으니까 다들 똑같지 뭐. 마음대로 못 다니니까.....(마을사람들은) 가족 하고 똑 같아요. 쭉 같이 있으니까(사례15).

> 이제 친구들에게 전화하기도 겁나요. 나이가 많으니까 혹시 1년 사이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건강을 유지하고는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무서워서 전화를 못해요. 통화 한지가 1년도 넘었어요(사례11).

이러한 부부의 일상생활은 제특성별로도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발견된다. 사례9는 70세가 넘어가면서 확실히 건강이 나빠지고 몸이 늙는 것이 느껴진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장수술을 하였고, 작년에는 119를 3번이나 불렀다고 한다. 우울증이 있었으나 상담치료를 받아서 호전된 상태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동년배 지인들의 건강악화로 활발한 활동이나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하여 생활이 지루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외식도 거의 안하고 있고, 여행이나 다른 취미·여가활동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부부동반 모임도 지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해체된 상태이다. 즉, 후기로 갈수록 이웃과의 교류, 친인척과의 왕래도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 사람들이 답답해하잖아. 금방 금방 못 알아들으니까... 보청기하면 다 알아듣는데, 적게 하면 안 들려.....자주 만나면 이제, 서로 부담이 되니까, 그것도 신경이. 젊었을 때 서로 벌 때는 관광도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사례12).

> 젊어서는 돌아다니는데 부지런히 돌아다녔네, 여행은... 그 전에는 동남아갔다 오고 다 했는디, 요새는 나이 먹고 늙은 게 인제 1년에 한번이나 효도 관광이나 한 번이나 가지, 놀러도 안 가(사례13).
> 그전에 (부부동반 모임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 죽고, 친한 친구들이 몇이 안 남은 게 자연히 그런 게 해산되었지(사례13).

옥상에 가서 앉아서 놀다가, 공원에 갔다가. 하루에 댓번 갔다가. 그래, 하루 보내지 뭐. 하루가 굉장히 지루해(사례12).

지역별 차이 또한 발견되는데, 경로당이 농어촌에서 모임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경로당 가는 거 그거 아니면 뭐 할게 있어요. 없으니까, 일을 안 하니까... (경로당 가는 것은) 대개 겨울이지 뭐. 여름에는 농사짓느라고, 여름에는 크게 안 모이지요... 거의 집결지이지 뭐(사례14).

또한 마땅히 기분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농어촌은 적은 편이다.

여긴 촌이니까 어디 가서 뭐... 일부러 뭘 먹으러가도 일부러 먹으러 가야되니까... 사먹으러 가게 되지 않아요(사례14).

한편, 병원과의 거리는 멀지만, 필요시 119응급구조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생각보다는 의료기관 접근성과 관련한 불안은 없다.

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준비

인터뷰 대상자중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단지 자식에게 의존할 생각은 없고 부부끼리 자신의 다가올 '독거'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뿐이다. 집단면접에서도 도출된 것처럼 자녀가 문제없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이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같이 죽지는 못하니까, 각자 따로 따로 죽으니까는, 혼자 남으면 그렇게 사는 때까지 살아야지, 어떻게 해(사례12).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있지요. … 자식들한테 뭐 하러 폐를 끼쳐, 폐 끼칠 필요가 없지.. (만약 한 사람이 먼저 가면은 양로원가야지.) 우리 애들한테는 얘기 안하지…우리 둘이만 얘기하는 거지…다른 거 없어. 자식들도 우리한테 마음에 근심 끼치지 않고 살면 그게 우리 복이야(사례10).

그러나 한편 혼자 남으면 결국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례도 있다.

노후준비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자손들을 그저 의지할 마음이고 믿고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생각은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의지나 하는 거지 뭐. 재주가 없지 뭐(사례15).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궁핍한 시기를 겪어낸 세대이기 때문에 아끼면서 소박하게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수시로 발생하는 의료비와 아낄래야 아낄 수 없는 필수 지출비인 주거비용 등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비가 많이 들고, 가스비가 많이 들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먹는 것은 별개 아닌데, 공과금 같은 거 아파트 관리비도 10만원 이상 나오니까 그것도 무시 못 하잖아… 그리고 의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둘이 식구도 백내장 수술하고 나도 백내장 수술하고, 솔찬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사례13).

겨울에 가스비가, 전기세 그게 많이 나와. 그게 벅차지. 먹는 거는 뭐, 안 들어 가잖아. 쌀 한포대하면 한 달도 더 먹는걸 뭐… 겨울에는 난 불 못 땠어. …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가스비 좀 낮춰줬으면, 그게 해마다 올라. 그게 부담이 제일 돼(사례12).

더불어 실생활에 있어서 반찬 준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을 토로하고 있다. 사례9에 의하면 나이가 듦에 따라 점점 식사준비도 어려워져, 반찬 배달 서비스같은 것이 있다면 유료라도 사용할 의향이 있다. 또한 대부분이 오래된 집에 거주하고 있어서 집수리의 필요성과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제3절 종합

집단면접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간에 노인들의 단독가구는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노년기 가구형태가 되었다. 일정기간 부부가구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의 사망에 의하여 독거가구가 되거나, 초기 노년기부터 독거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급격한 기능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시설(실버타운, 요양시설 등)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거동이 가능할 때까지는 단독가구 생활을 하지만, 독거기간과 부부가구로 생활하는 기간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자신 또는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용히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정리를 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노년기에 성인 자녀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녀세대가 잘 사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부부세대는 자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의 삶의 질에는 관심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적응기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단독가구로의 변화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는 외로움이다. 아직 농어촌에는 지역사회가 작동을 하고 있어 준 가족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그러한 밀접한 지역주민의 유대와 관심을 찾을 수는 없었다. 갈수록 도시지역 거주 노인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자원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셋째, 배우자의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부부가 분리된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 중년층을 넘어가면서 각방을 사용한다던지, 부부 각각의 생활패턴을 받아들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종교활동이 단조로운 노후생활에 활력과 리듬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고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노인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단순한 내면적인 믿음과 더불어 타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종교는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노년기에서도 건강이 악화되는 후기에는 기동력이 저하되어 활동반경이 저하되고 활동빈도도 저하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하된 활동범위를 감안한 외부 소식이나 지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없이는 우울증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면접대상자들이 언급한 정책적 수요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생활비에 있어 기본적인 주거비용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였다. 기본생활에 필요한 항목의 지출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집수리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집수리는 추가비용을 요하므로 적극적으로 수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경우는 반찬을 제공받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1명이나 2명이 생활하면서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반찬을 만들어 먹기가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특히 후기 노인일수록 그러한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유료서비스라도 이용하겠다는 언급이 있는 만큼 다양한 소득계층의 노인에게 반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넷째, 119가 병의원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비상시 아주 중요한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인의 삶 속에서 119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해보인다.

마지막으로 현노인세대에 비하여 예비노인세대는 라이프 스타일과 사고방식에 있어 중첩된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 그들의 노년기 생활에 대한 개인차원의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정확한 설계를 하기에는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고 서로간에 의견을 나누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비노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볼 수 있는 기회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제5장
노인복지정책 분석

제1절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방향 분석
제2절 노인복지정책 영역별 수요-공급 분석의 기본가정
제3절 노인복지정책 영역별 수요-공급 분석
제4절 노인단독가구의 정책대상

5 노인복지정책 분석

본 장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이 노년기의 단독가구 거주형태의 증가 현상과 단독가구가 갖고 있는 특성과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를 공통인 정책 분석틀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방향 분석

노인복지정책은 '모든 노인이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욕구 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해결하며,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택한 행동원칙이나 계획'이다. 즉,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안정된 생활유지,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 충족, 사회통합의 유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행동계획이다(권중돈, 2012).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다. 제2차 저출산·기본계획(보완판)에 따르면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이라는 정책목표하에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건강수명 연장, 적극적 노년의 삶,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라는 세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그 아래에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등 5개 분야 62개 핵심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2. 10.)

〔그림 5-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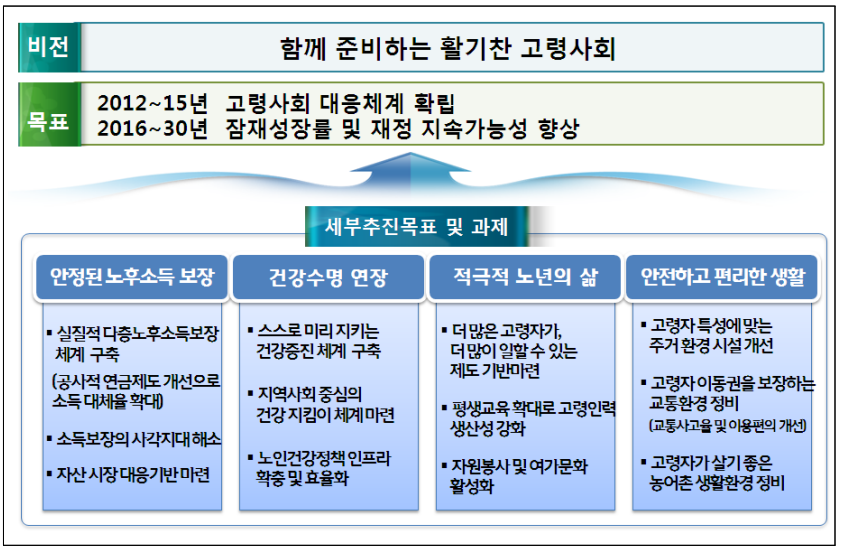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2013. 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보완판).

노인복지정책의 비전, 목표, 정책 과제를 검토해볼 때, 기존의 병리적 관점이나 문제중심적 정책접근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활기찬 노후생활(active aging) 더 나아가 성공적 노후생활(successful aging)을 지원하는데 정책의 기본방향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소득, 건강, 여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노인문제의 사전예방과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정책 과제를 검토해보면, 노인문제의 사전예방을 위한 과제와 아울러 이미 발생한 노인문제의 경감과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활기찬 노후 또는 성공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노인문제의 영역별로 노인문제가 노후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고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또 하나 검토해보아야 할 요인은 노인인구와 가구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노인인구와 가구의 변화양상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 즉, 노인단독가구의 급격한 증가이다. 2014년 독거노인은 19.6%, 부부가구노인은 48.5%, 자녀동거노인은 27.3%로서, 노인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68.1%에 이르고 있으며, 1994년의 40.4%, 2004년의 55.0%와 비교할 때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 과제의 급여나 서비스의 기본 단위(unit of service)가 '노인 개인'으로 설정되어 있고 '가구'를 기본단위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추이와 이에 따른 노인생활 및 노인문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노인단독가구를 고려한 정책 과제로는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이 유일하며, 그 하위 정책 과제로 '독거노인 및 부부가구노인의 보호강화'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강화, 농촌 가사도우미 지원이라는 2개 계획만 제시되어 있다. 물론 노인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생활하는 노인이라고 하여 보편적인 노인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 영역별로 노인단독가구만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 시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대책에 포함된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보호강화라는 정책 과제에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만으로는 노인단독가구를 형성하여 생활하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 특히 예비노인가구에서 자녀결혼

이나 독립, 가장의 은퇴,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부부가구나 독거가구 등의 노인단독가구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단독가구로 전환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나 욕구 그것도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의 대응방안만을 제시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제2절 노인복지정책 영역별 수요-공급 분석의 기본가정

1. 정책 수요 분석의 기본 가정

어떤 정책이든 정책수요 즉, 정책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 이유는 정책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배분기준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노인복지정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배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대상의 규모 즉, 정책수요를 추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현재 정책공급 측면에서 명확히 배분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공공부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서비스 등 지극히 소수의 정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책수요 추정을 위하여 어떤 기준을 활용하더라도, 국민의 사회문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 정책문제의 인정범위와 심각성 그리고 기간, 정책 시행에 소요되는 자원의 양과 확보 정도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다른 견해가 제시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런 한계 때문에 노인인구와 가구의 특성변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단독가구의 정책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노인복지제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정책영역별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객관적 배분기준은 그대로 활용하되,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상대적 기준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에서 대표적인 노인문제로 다루고 있는 빈곤, 질병, 고독과 소외, 무위라는 노년기의 4고(四苦)에 해당하는 정책문제의 영역별로 배분의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활용된 출발점은 〈표 5-1〉과 같다. 즉 독거노인 중 정책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독거노인지원카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인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이 가능한 항목을 도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노인단독가구의 정책 수요를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4개 영역의 9개의 항목을 통하여 노인복지정책의 수요가 파악되었다(〈표 5-2〉 참조).

〈표 5-1〉 노인단독가구의 생활 현황 파악의 기본틀

	판정기준[1]	독거노인지원카드	실태조사
개인 특성	개인특성	성, 연령, 지역	성, 연령, 지역
주거 상황	주택위치(0~1점) 주거환경(0~1점)	주택소유	주택소유
		건물형태	건물형태
		주거환경	(조사원이 판단한 주거환경)
		주택위치: 이웃과 인접한 곳 여부	
		냉난방, 전기. 도배. 장판, 수도 화장실. 욕실, 부엌, 가구, 습도 채광, 통풍	-
경제 상태	소득충분도(0~2점) 경제활동참여(0~1점)	수입원	수입원
		월소득	월소득
		용돈	
		소득충분도	(소득 만족도)
		경제활동, 직종, 종사상 지위	경제활동, 직종, 종사상 지위
건강 상태	식사횟수: (0~3점) 3, 2, 1회 (결식이 있는 경우, 경제적 이유인지 확인) 질병갯수: 1-2개/3개/4개 이상 + 생활의 어려움 정도 (경미, 중간, 심각) + 우울증, 치매	시력, 청력, 치아, 보조기	시력, 청력, 치아, 보조기
		운동	운동
		금연, 금주	금연, 금주
		식사	식사
		건강보조식품	-
		도움필요성(ADL, IADL)	도움필요성(ADL, IADL)
		질병	질병
여가 및 사회 참여	관계정도 1) 사회활동 (주 3~4회 이상, 주 1~2회, 월 1~2회, 없음)	여가활동	여가활동
		단체활동	단체활동
사회 관계	가족관계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수
	2) 가족과의 왕래빈도 3) 이웃과의 왕래빈도 (주 1~2회, 월 1~2회, 분기 1~2회, 년 1~2회 이하) 1) 2) 3) 3점 이상인 수만큼 가점	가족/친구/이웃: 연락, 접촉 빈도, 지원내용	가족/친구/이웃: 연락, 접촉 빈도, 지원내용
서비스 이용	정기적 서비스 이용 (0~3점)	가사간병도우미, 가정봉사원파견, 노노케어, 건강음료배달, 방문 보건·간호, 간병인,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 등의 서비스 이용여부	가사간병도우미, 경로식당, 간병인, 밑반찬 배달서비스 여부 등

주: 1)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 중 정책우선순위 설정에 기초로 하고 있는 정보임.

〈표 5-2〉 노인복지정책 수요 추정의 기준

문제 영역	세부문제	배분의 기준	비고
경제 문제	1. 저소득문제	가구소득 수준 1) 최저생계비 미만(절대빈곤율) 2) 차상위: 최저생계비 120%	절대 기준
	2. 주거불안정	노인 자신 또는 가족 명의의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노인가구	절대 기준
	3. 경제활동 미참여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	절대 기준
	빈곤문제 정책수요	저소득문제, 주거불안정문제, 경제활동 미참여 문제 중 1개 이상의 문제가 있는 노인이나 가구	
건강 문제	4. 영양문제	하루에 식사를 1, 2회만 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음식을 사지 못하는 결식노인	절대 기준
	5. 질병	전체 노인의 평균질병 수(2.5개)보다 많은 질병을 앓는 노인	상대 기준
	6. 기능상태 제한	ADL과 IADL 중 1개 항목이라도 제한 있는 노인	절대 기준
	건강문제 정책수요	영양문제, 질병, 기능상태 제한 중에서 1개 이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노인	
소외 문제	7. 이웃과의 유대 제한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친구와 이웃의 수가 전체 노인의 평균(2.56명)보다 이하인 노인	상대 기준
	8. 자녀로부터의 지지 제한	자녀와 월 1회 이상 접촉을 하면서 부양지원(도구적 지원 또는 정기적인 현금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노인	상대 기준
	소외문제 정책수요	자녀로부터 지지와 이웃과의 유대가 없는 노인	
무위 문제	9. 사회참여 제한	월평균 사회참여(평생교육, 각종 단체활동, 자원봉사,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용) 일수가 전체 노인의 평균(8일)보다 낮은 노인	상대 기준
	무위문제 정책수요	사회참여 일수가 낮은 노인	

경제문제와 관련된 정책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 빈곤문제를 저소득문제, 주거불안정문제, 경제활동 미참여 문제라는 세가지 세부 정책문제로 구분하고 그 배분기준을 설정하였다. 저소득 문제는 가구소득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미만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활용하여 정책수요를 추정하고자 한다. 빈공계층의 특징 중 하나인 주거불안정문제를 경험하는 노인단독가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노인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자가를 소유하지 못하고 전세나 월세 등으로 생활하는 가구라는 절대적 기준을 활용하여 정책수요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경제활동 참여를 통하여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일자리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활동 관련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책대상을 추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가지 세부 정책문제를 모두 포괄한 경제문제와 관련된 정책수요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저소득문제, 주거불안정 문제, 경제활동 미참여 문제 중에서 한가지 이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노인과 가구를 정책대상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건강문제와 관련된 정책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영양문제, 질병문제, 기능제한문제라는 3가지 세부문제로 나누어서 배분기준을 설정하였다. 영양문제는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하루에 1~2회만 식사를 하거나 음식물을 구입하지 못하는 결식노인 즉, 결식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수요를 추정하고자 한다. 질병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과 치료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질병의 수가 전체 노인의 평균 질병 수보다 많은 노인이라는 상대적 기준을 활용하여 정책수요를 추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능제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일상생활 동작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

활 동작능력(IADL)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의 기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활용하여 정책수요를 추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영양문제, 질병, 기능제한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건강문제를 지닌 노인단독가구의 정책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 세가지 하위문제 중 한가지 이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을 정책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소외문제와 관련된 정책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유대관계 제한, 자녀로부터의 지지 제한이라는 2가지 세부문제로 나누어서 배분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웃과의 유대관계 제한문제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와 이웃의 수가 전체 노인의 평균보다는 적은 경우로, 자녀로부터의 지지 제한 문제는 자녀와 월 1회 이상 접촉을 하면서 부양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는 상대적 기준을 이용하여 정책대상을 추정하고자 한다. 소외문제를 지닌 노인단독가구의 정책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유대관계 제한이나 자녀로부터의 지지 제한이라는 문제 중에서 어느 하나라고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을 정책대상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무위문제와 관련된 정책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각종 단체활동, 자원봉사,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하거나 참여하는 일수가 전체 노인의 월평균 일수보다 적다는 상대적 기준을 이용하여 정책대상을 추정하고자 한다.

2. 정책공급 분석의 기본 가정

노인복지공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급여나 서비스 양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급여와 서비스의 양을 동시에 분석해야 하며, 이런 급여나 서비스에 소요되는 인력, 재정, 시설 등의 공급량을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노인복지 공급의 양과 질을 분석한다는 것은 충분한 정보량

이 확보되고 이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연구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급여와 서비스의 양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영역을 저소득문제를 다루기 위한 소득보장, 주거불안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주거보장, 경제활동 미참여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용보장, 건강문제를 다루기 위한 건강보장, 그리고 고독과 소외, 무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회서비스라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급여와 서비스의 양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복지정책 영역별 급여와 서비스 공급량을 분석함에 있어서 포함시키는 급여와 서비스는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3〉 노인복지정책 공급 분석에 포함되는 급여와 서비스

정책영역	급여와 서비스
소득보장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퇴직연금, 경로우대제도, 세금감면제도
주거보장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사정,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 주거개선사업단, 주택자금할증제도, 주택분양 우선권 제도, 주택연금, 농지연금, 주거급여
고용보장	고령자 기준고용률,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기관,노인일자리사업
건강보장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건강진단, 노인실명예방사업, 치매상담센터,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장사서비스
사회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독거노인보호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노인보호전문기관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의 급여와 서비스 공급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노인단독가구에 공급되는 노인복지정책 영역별 급여와 서비스를 찾아내기 위

해 Gilbert와 Specht(1974)의 배분(allocation), 급여(benefit), 전달(delivery), 재정(finance)이라는 네가지 가치선택 영역과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가치선택의 특성을 분석한 이후에 급여와 서비스의 공급량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노인복지정책 영역별 수요-공급 분석

본절에서는 앞서 〈표 5-2〉에서 제시한 정책수요 추정의 배분기준에만 근거하여 각 영역별 정책수요를 분석하고자 하며, 배분기준을 상회하는 노인단독가구의 수요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영역별 급여의 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에서 실시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가구단위로 구축한 후, 본 연구의 정책수요 추정을 위한 배분기준에 따라 재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1. 소득보장 영역의 수요-공급 분석

가. 소득보장 영역의 수요분석

노인단독가구의 빈곤문제와 소득보장 급여 수요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결과 〈표 5-5〉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인단독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가 독거가구는 41.8%, 부부가구는 30,2%이며,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독거가구가 16.7%, 부부가구가 12.2%로서, 저소득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은 독거가구가 41.5%, 부부가구가 57.7%에 이르고 있다.

〈표 5-4〉 가구형태별 저소득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

(단위: %, 가구)

노인문제	배분의 기준	노인가구형태		
		독거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 소계
저소득문제	1) 최저생계비 미만(절대빈곤율)	41.8	30.2	34.7
	2) 차상위: 최저생계비 120%	16.7	12.2	13.9
	3) 저소득문제(1)+2))	41.5	57.7	51.4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나. 소득보장 영역의 공급분석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가 노인단독가구에게 공급하는 급여를 확인하기 위해 Gilbert와 Specht의 정책가치 선택 영역 4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배분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라는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 고려하고 있는 급여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보장 영역의 노인복지 급여 중에서 노인단독가구를 배분과 급여의 기준으로 일부 고려하고 있는 급여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두가지에 불과하며, 이 두가지 급여도 노인독거가구 기준만을 고려할 뿐 노인부부가구의 기준을 2인가구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소득보장 영역에서 노인단독가구의 특성과 생활실태, 복지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5〉 소득보장 영역의 정책 가치 선택의 특성 분석

정책	배분	급여	전달	재정
국민연금	- 사회적 공헌도 근거 - 평등, 보편주의, 사회적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수급자의 선택자유 - 기여에 따른 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중앙집권 - 관주도	- 사회보험료 - 공평 - 중앙집권
기초연금	- 노인의 자산상태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일부 고려	- 수급자의 선택자유 - 소득과 사회적 공헌도에 따른 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일부 고려	- 중앙집권 - 관주도	- 조세 - 공평 - 중앙집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노인의 욕구와 자산, 부양자의 자산상태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일부 고려	- 수급자의 선택 자유 - 소득에 따른 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일부 고려	- 중앙집권 - 관주도	- 조세 - 공평 - 중앙집권
퇴직연금	- 근로자의 자산상태, 부당한 손해에 대한 보상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수급자의 선택자유 - 기여에 따른 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민간주도 - 자산관리자 높은 전문성	- 사업주 부담금
경로우대제도	- 노인의 욕구 근거 - 평등, 보편주의, 사회적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이용료 경감 및 기회 확대를 통한 수급자 선택자유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관주도 + 민간주도	- 공공 및 민간부담금
세금감면제도	- 사회적 공헌도 근거 - 공평, 보편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세금할인을 통한 사회적 통제 - 모든 노인, 부양자 동일 공제 - 노인단독가구 기준 미고려	- 중앙집권 - 관주도	- 공공부담금

소득보장 영역의 정책 배분 및 급여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형태별 비율을 파악할 수 없어 노인단독가구의 수급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

이지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수급자가 236,617명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독거가구가 2,067,626가구이고 부부가구를 포함한 2인가구가 1,832,541가구로 나타났으며(보건복지부, 2013), 2014년 기초연금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수급자수와 수급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정책수요 추정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저소득문제를 경험하는 노인단독가구는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현행 소득보장 정책에 의한 공급량은 정책 수요의 1/4 정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저소득문제를 경험하는 노인단독가구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나, 급여액이 기초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득보장 영역의 정책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해보면, 저소득문제를 지닌 노인단독가구의 복지수요에 비해 복지공급이 현격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주거보장 영역의 수요공급 분석

가. 주거보장 영역의 수요분석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불안정 문제와 주거보장 급여의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분석 결과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단독가구 중에서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명의로 된 자가를 소유하지 못하고 전세나 월세 등으로 생활하는 주거불안정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은 독거가구가 47.6%, 부부가구가 16.0%로서, 독거가구의 주거불안정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하여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생활하기에 불편한 주택구조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독거가구 29.5%, 부부가구

16.9%로 나타나, 독거가구의 주거불편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거편의도는 고려하지 않고 자가를 소유하지 못하여 주거불안정을 경험하는 노인만을 주거보장의 정책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5-6〉 가구형태별 주거불안정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

(단위: %, 가구)

노인문제	배분의 기준	노인가구형태		
		독거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 소계
2. 주거불안정	노인 자신 또는 가족 명의의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자	47.6	16.0	28.3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나. 주거보장 영역의 공급분석

노인복지정책 영역 중에서 가장 미진한 영역이 바로 주거보장의 영역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거보장 정책은 주택공급정책에 치중되어 있으며, 주택소유를 재산증식을 통한 소득보장시도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한 개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노후주거보장을 목적으로 한 노인복지정책의 주안점이 노인복지시설 관련 정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정책에서 주거보장 영역이 매우 미진하더라도, 중앙 및 지방정부가 노인단독가구에게 공급하는 주거 관련 급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Gilbert와 Specht의 정책가치 선택 영역 4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배분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라는 기준을 일부라도 고려하는 급여는 주택급여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주거보장 영역의 정책 가치 선택의 특성 분석

정책	배분	급여	전달	재정
양로시설, 노인공동 생활사정	- 노인의 욕구와 자산 상태, 건강상태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수급자의 주거생활 공간 및 서비스 제공 - 모든 생활노인 동일 서비스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민간주도 - 서비스 제공자의 높은 전문성	- 조세 + (수급자 부담금) - 공평 - 중앙 집권
유료양로 시설 노인복지 주택	- 고령자의 욕구와 자산상태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수급자의 선택 자유 - 계약에 따른 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민간주도	- 수급자 부담금 - 공평
노인 주거 개선 사업단	- 노인의 욕구와 자산 상태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주거환경 및 설비 개선 - 수급자의 소득과 주거 환경에 따른 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민간주도 - 제공자의 높은 전문성	- 조세 - 공평 - 지방 분권
주택자금 할증제도, 주택분양 우선권 제도	- 노인 욕구와 가족의 부양여부 및 기간에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융자금 할증 또는 기회의 확대를 통한 수급자의 선택 자유 - 욕구에 따른 차등 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민간주도 - 제공자의 높은 전문성	- 수급자 부담금 - 공평
주택연금 농지연금	- 노인의 욕구, 자산 상태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수급자의 선택 자유 - 주택 및 농지가격에 따른 차등 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민간주도	- 본인 자산
주거급여	- 노인의 소득 및 자산상태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일부 고려	- 수급자의 선택 자유 -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에 따른 차등 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일부 고려	- 관주도 - 중앙집권	- 조세

주거급여법에 의해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조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2014년 10월부터 실시되므로 아직 정확한 급여 공급량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2014년 10월 임차가구의 임차료지원을 시작으로 2015년 1월에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급여대상을 현재 약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현재의 월평균 8만원 수준에서 11만원 수준으로 증액 지급한다는 계획(국토교통부, 2014. 3.)만 발표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가구가 2012년 현재 236,617가구인 점을 근거로 해보면 주택급여법의 시행 이후에도 여기에서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공급량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단독가구를 정책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하지는 않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가정에서 거주할 수 없는 노인단독가구를 위한 대안적 주거형태인데, 2013년 말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436개 시설에 18,592명을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4,585개 시설에 139.939명이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어,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이 가능한 노인인구는 158,531명이다(보건복지부, 2014).

본 연구의 정책수요 추정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주거불안정를 경험하는 가구에 비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는 단독가구 노인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더구나 노인단독가구 중에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보수하지 못한채 주거편이도가 낮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주택구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의 공급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주거보장 관련 급여의 공급량은 노인단독가구의 수요량을 충족하는데 매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고용보장 영역의 수요공급 분석

가. 고용보장 영역의 수요분석

노인단독가구의 경제활동 미참여 문제와 고용부장 급여의 수요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 결과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단독가구 중에서 현재 돈벌이가 되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경제활동 미참여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는 독거가구와 부부가구가 각각 10.4%, 16.5%로 나타났다.

〈표 5-8〉 가구형태별 경제활동 미참여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

(단위: %, 가구)

노인문제	배분의 기준	노인가구형태		
		독거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 소계
3. 경제활동 미참여 문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	10.4	16.5	13.7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나. 고용보장 영역의 공급분석

노인복지정책 영역 중에서 고용보장 관련 정책은 크게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정책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인일자리 정책으로 대별된다. 이 중에서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주요 대상은 55세-64세의 장년층이며 65세 이상 노인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장 정책은 아니다. 그러므로 65세 이상 노인이 실질적인 고용보장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급여와 서비스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취업알선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노인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용관련 정책 중에서 노인단독가구에게 공급하는 고용 관련 급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Gilbert와 Specht의 정책가치 선택 영역 4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배분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라는 기준을 일부라도 고려하는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또한 주요 배분기준이 아니라 부수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즉,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연령이나 소득, 일자리사업 참여경력과 전문성이 다른 노인과 유사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표 5-9〉 고용보장 영역의 정책 가치 선택의 특성 분석

정책	배분	급여	전달	재정
고령자 기준 고용률,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	- 고령자의 욕구와 역량 근거 - 평등, 보편주의, 사회적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수급자의 기회 확대 - 직종별 차등 적용 또는 모든 고령자 동일 적용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민간주도	- 임금 - 평등 - 민간부담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 고령자의 욕구와 사업주의 사회적 공헌도 근거 - 공평, 선별주의, 사회적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사업주의 선택자유 - 고령자 고용실적 따른 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중앙집권 - 관주도	- 조세 - 공평 - 중앙집권
고령자 직업 능력 개발	- 노인의 욕구와 자산상태 근거 - 보편 또는 선별주의, 사회적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직업훈련 기회확대, 비용지원 등의 수급자의 선택 자유 - 수급자의 희망과 소득에 따른 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중앙집권 - 관주도 - 제공자의 높은 전문성	- 조세 - 공평 - 중앙집권

정책	배분	급여	전달	재정
취업 알선 기관	- 고령자의 욕구에 근거 - 평등, 보편주의, 비용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사회적 통제 - 욕구에 따른 차등 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관주도 -제공자의 높은 전문성	- 조세 - 평등
노인 일자리 사업	- 노인의 욕구와 역량 근거 - 공평, 선별주의, 사회적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일부 고려	- 수급자의 선택자유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관주도 + 민간참여	- 조세 및 민간 부담금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2014년 노인일자리 공급량은 310,000여개로서 2013년 255,521개에서 7만개 정도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일자리유형별로는 사회공헌형이 248,000여개이며, 시장진입형이 25,600여개이고 시장자립형이 6,400여개 그리고 재능활용형이 30,000개로서, 사회공헌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급여는 사회공헌형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이며, 시장형 일자리의 월평균 보수액은 287,674원이며 인력파견형은 789,744원으로 나타나, 인력파견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완효과가 크지 않았다. 노인일자리사업 이외에 노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노인 취업건수는 많지 않고, 고령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고령자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급여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의 정책공급분석에 의하면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중에서 75% 정도가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노인이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이 14%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노년기의 경제활동 참여의 주된 동기가 생계비 용돈 등의 경제적 이유인 점

을 근거로 해볼 때,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경제생활에 보탬이 될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인력파견형 정도뿐이고 나머지는 주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한 노인일자리에 불고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완 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장의 노인일자리사업의 공급량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령이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단독가구노인이 다수에 이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실질적 소득보완 효과를 지닌 진정한 의미의 노인일자리 공급량은 수요량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4. 건강보장 영역의 수요공급 분석

가. 건강보장 영역의 수요분석

노인단독가구의 건강문제와 건강보장 급여의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분석 결과 〈표 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단독가구 중에서 영양문제를 경험하는 노인단독가구는 독거가구 44.1%, 부부가구 17.1%이며, 질병문제를 경험하는 경우는 독거가구 55.4%, 부부가구 37.9%이며, 기능제한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는 독거가구 16.8%, 부부가구 9.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양문제, 질병문제, 기능제한 문제 세 가지 중 1가지 이상의 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는 독거가구가 74.5%, 부부가구가 48.6%로 나타나, 건강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은 독거가구는 다른 노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부부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가구형태별 건강문제를 경험하는 비율

(단위: %, 가구)

노인문제	배분의 기준	노인가구형태		
		독거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 소계
건강문제	1) 영양문제	44.1	17.1	27.6
	2) 질병	55.4	37.9	44.7
	3) 기능상태 제한	16.8	9.9	12.5
	4) 건강문제(1) 또는 2) 또는 3))	74.5	48.6	58.6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나. 건강보장 영역의 공급분석

노인복지정책 영역 중에서 건강보장 관련 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질병 치료의 비용을 보전하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중증 노인환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사회보험, 노인건강진단사업, 치매관련 정책 등의 노인건강지원사업,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이라는 영양지원서비스, 그리고 장사서비스로 크게 나뉘어진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건강관련 정책 중에서 노인단독가구에게 공급하는 건강 관련 급여와 서비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Gilbert와 Specht의 정책가치 선택 영역 4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배분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라는 기준을 일부라도 고려하는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건강보장 영역의 정책 가치 선택의 특성 분석

정책	배분	급여	전달	재정
국민건강보험	- 사회적 공헌도와 노인의 기능수준과 전문가의 판단 근거 - 평등, 보편주의, 사회적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사회적 통제 - 전문가의 판단 따른 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중앙집권 - 관주도	- 사회 보험료+ 수급자 부담금 - 공평 - 중앙집권
의료급여	- 노인의 기능수준과 자산상태, 전문가판단에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사회적 통제 - 소득과 전문가판단에 따른 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중앙집권 - 관주도	- 조세 - 공평 - 중앙집권
노인장기요양보험	- 사회적 공헌도와 노인의 기능 수준, 전문가 판단에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사회적 통제 - 노인 기능수준에 따른 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중앙집권 - 관주도	- 사회 보험료+ 수급자 부담금 - 공평 - 중앙집권
노인건강진단	- 노인의 자산에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사회적 통제 - 기능에 관계없이 동등 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관주도 - 제공자의 높은 전문성	- 조세 - 공평
노인실명예방사업	- 노인의 기능 수준에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사회적 통제 - 노인의 욕구에 따른 차등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민간주도 제공자의 높은 전문성	- 조세+ 수급자 부담금
치매상담센터	- 노인의 기능수준에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사회적 통제 - 기능수준에 따른 차등 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관주도 - 지방분권	- 조세

정책	배분	급여	전달	재정
치매검진 사업	- 노인의 욕구와 자산에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사회적 통제 - 기능수준과 전문가 판단에 따른 차등 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관주도 - 중앙집권 제공자의 높은 전문성	- 조세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 노인의 욕구와 자산에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사회적 통제 - 노인의 기능과 소득 수준, 전문가판단을 고려한 동등 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관주도 - 중앙집권	- 조세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 노인의 욕구와 자산에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사회적 통제 - 기능과 소득수준을 고려한 동등 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민간주도 - 지방분권	- 조세+ (수급자 부담금)
장사 서비스	- 노인의 욕구 근거 - 평등, 보편주의, 사회적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사회적 통제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관주도 중앙집권	- 조세

본 연구에서 건강보장 정책수요 추정을 위해 사용한 질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되는 정책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가 있는데 201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노인은 5,921,977명(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으로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극히 소수를 제외한 노인단독가구에게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의 부담, 의료기관 및 서비스에의 낮은 접근성, 노인의 질별치료 지연 및 거부 경향 등으로 인하여 질병 치료에 충분한 건강급여를 받고 있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지만, 노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질병을 치

료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한 질병치료를 위한 급여가 공급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기능제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를 받은 노인은 2013년말 기준으로 399,591명이다(국민건강보험, 2014). 그리고 영양문제를 경험하는 노인에게 공급되는 결식우려노인 급식서비스 즉, 경로식당과 식사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정확한 공급량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1일 평균 54,0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수요 추정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영양문제, 기능상태 제한, 질병 등의 건강문제를 경험하는 노인은 59%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경감 또는 해결하기 위한 노인결식우려 급식서비스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도 중증노인환자에 집중되어 있어 기능제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단독가구 노인 중에서 질병 치료를 위한 투약비율이 84% 정도임을 감안하면 노인단독가구의 질병문제와 관련된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건강보험 급여의 공급량 또한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노인복지정책의 건강보장 관련 급여와 서비스는 노인단독가구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간 부족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사회서비스 영역의 수요공급 분석

가. 사회서비스 영역의 수요분석

노인단독가구의 소외와 무위문제와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추정한 결과,

〈표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단독가구 중에서 이웃과의 유대 제한 문제를 경험하는 독거가구가 62.7%, 부부가구가 58.6%이며, 자녀로부터의 지지 제한 문제를 경험하는 독거가구가 40.6%, 부부가구가 36.6%이었으며, 이 두 가지 문제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하는 소외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단독가구는 독거가구가 76.7%, 부부가구가 72.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른 사회참여 제한의 문제 즉, 무위문제를 경험하는 독거가구는 53.0%, 부부가구는 61.8%로 나타났다.

〈표 5-12〉 가구형태별 소외 및 무위문제를 경험하는 비율

(단위: %, 가구)

노인문제	배분의 기준	노인가구형태		
		독거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 소계
소외문제	1) 이웃과의 유대 제한	62.7	58.6	60.2
	2) 자녀로부터의 지지 제한	40.6	36.6	38.2
	3) 소외문제(1) 또는 2))	76.7	72.1	73.9
무위문제	1) 사회참여 제한	53.0	61.8	58.4
	2) 무위문제(1)	53.0	61.8	58.4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나.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급분석

노인복지정책 영역 중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은 독거노인과 부부가구노인의 생활안전과 가사지원 등에 초점을 둔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의 여가 및 사회참여지원서비스, 그리고 학대

받은 노인을 위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나뉘어진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건강관련 정책 중에서 노인단독가구에게 공급하는 사회서비스관련 급여와 서비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Gilbert와 Specht의 정책가치 선택 영역 4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배분과 급여의 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사회서비스 영역의 정책 가치 선택의 특성 분석

정책	배분	급여	전달	재정
독거노인 돌봄기본 서비스	- 노인의 거주형태에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 사회적 통제 - 기능수준에 따른 차등 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 중앙집권 - 민간주도 제공자의 높은 전문성	- 조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노인의 거주형태, 건강과 자산에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 사회적 통제 - 서비스 욕구에 따른 차등 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 중앙집권 - 민간주도 제공자의 높은 전문성	- 조세 (바우처)+ (수급자 부담금)
노인 복지관	- 노인의 연령에 근거 - 평등, 보편주의, 사회적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 - 이용 노인에 동등 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지방분권 - 민간주도 - 제공자의 높은 전문성	- 조세+ (수급자 부담금)
경로당	- 노인의 연령에 근거 - 평등, 보편주의, 사회적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 - 이용 노인에 동등 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지방분권 - 민간주도 - 제공자의 높은 전문성	- 수급자 부담금+ 조세

정책	배분	급여	전달	재정
노인교실	- 노인의 연령에 근거 - 평등, 보편주의, 사회적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 - 이용 노인에 동등 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지방분권 - 민간주도 - 제공자의 높은 전문성	- 수급자 부담금+ (조세)
노인자원 봉사 활성화	- 노인의 욕구 근거 - 평등, 보편주의, 사회적 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 참여 노인에 동등 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민간주도 지방분권	- 민간기금+ (조세)
노인보호 전문기관	- 노인의 거주형태에 근거 - 공평,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사회적 통제 - 학대행위에 따른 차등 급여 - 노인단독가구 기준 고려 않음	- 중앙집권 - 민간주도 제공자의 높은 전문성	- 조세

본 연구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수요 추정을 위해 사용한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정책으로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는데, 2013년 말을 기준으로 독거가구 190,024가구에게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사랑잇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3). 그리고 독거노인과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공급량은 2013년 말을 기준으로 42,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www.socialservice.or.kr). 노인의 무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관은 전국에 319개소, 경로당이 63,251개소, 노인교실이 1,41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사회복지관이나 대학부설 등의 민간 평생교육시설에서도 노인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부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서비스 공급량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대받은 노인을 위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과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 합해서 2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3,424명의 학대피해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수요 추정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소외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는 74% 정도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돌봄서비스에 국한되어 있고 소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무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는 58%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해결을 위한 여가문화서비스, 평생교육서비스의 공급량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노인단독가구 중에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공급량은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제4절 노인단독가구의 정책대상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배분(allocation)과 관련된 가치선택의 문제가 게재되므로 어떤 가치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정책대상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가치선택을 하든 논란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특히 특정 정책영역의 급여나 서비스의 대상을 정하는 협의의 정책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정책 전반의 급여와 서비스 대상을 정하는 광의의 정책대상을 규정하는 작업에는 더욱 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정책개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

업이 추가될 경우 더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인단독가구의 급격한 증가라는 정책적 배경요인의 변화를 반영한 전반적인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한계가 있더라도 정책대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단독가구가 경험하는 정책대상 문제의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정책대상 집단의 특성을 4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위기집단이라 부르는 정책대상 집단은 노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 문제 4가지 모두를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서 노후생활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 서비스와 급여를 필요로 하지만 공식적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취약집단은 대표적 노인문제 중 3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으로서 다수의 노후생활영역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공식 및 비공식 보호를 모두 필요로 하지만 공식적 보호가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특성을 지닌 집단이다. 사회지지필요집단은 일부 노후생활 영역에서 문제를 경험하여 공식 및 비공식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성이 있는 집단으로, 공식 및 비공식 부문의 협력적 보호를 통하여 더 이상 의존적 생활이 지속강화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집단이다. 자립생활 지향집단은 특정 노후생활 영역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나 공식적 서비스와 비공식적 지지망의 강화를 통하여 문제를 경감하여 자립생활을 유지 또는 지속시킬 수 있는 집단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노인단독가구의 정책대상을 집단별로 분류해 보면 〈표 5-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위기집단은 노인단독가구의 18% 정도, 취약집단은 31% 정도, 사회지지필요집단은 30%정도 그리고 자립생활지향집단은 22%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5-14〉 노인복지 정책대상의 집단 분류와 비율

(단위:%, 가구)

집단 분류	서비스 수요 내용	정책대상 문제의 경험	노인가구형태		
			독거 가구	부부 가구	단독 가구 소계
위기 집단	노후생활의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모든 영역의 노인복지급여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공식적 보호를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집단	1. 경제문제+건강문제 +소외문제+무위문제	25.2	13.0	17.8
취약 집단	다수 노후생활 영역에서 취약성을 보여 3가지 영역의 노인복지급여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공식적 보호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집단	2. 건강문제+소외문제+무위문제	7.8	11.5	10.1
		3. 경제문제+소외문제+무위문제	5.1	6.6	6.0
		4. 경제문제+건강문제+무위문제	4.4	3.0	3.5
		5. 경제문제+건강문제+소외문제	18.4	6.3	11.0
		소계	35.7	27.4	30.6
사회 지지 필요 집단	일부 노후생활 영역에서 공식적 보호와 비공식적 보호와 지지를 필요로 하며, 공식 및 비공식 지지망의 협력적 지원을 통하여 의존적 생활이 강화되는 것을 예방해 나가야 하는 집단	6. 소외문제+무위문제	3.9	15.1	10.7
		7. 건강문제+무위문제	2.7	3.7	3.3
		8. 건강문제+소외문제	7.2	5.9	6.4
		9. 경제문제+무위문제	1.8	1.7	1.8
		10. 경제문제+소외문제	5.2	4.2	4.6
		11. 경제문제+건강문제	4.4	1.9	2.9
		소계	25.3	32.6	29.7
자립 생활 지향 집단	특정 노후생활 영역에서 문제를 경험하여 단일영역의 급여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공식적 서비스와 비공식적 지지를 통하여 문제를 경감하여 자립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집단	12. 무위문제	2.0	7.2	5.2
		13. 경제문제	1.3	2.0	1.7
		14. 건강문제	4.4	3.3	3.7
		15. 소외문제	3.9	9.4	7.2
		16. 문제없음	2.3	5.2	4.1
		소계	13.9	27.0	21.9

제6장
결 론

제1절 종합
제2절 정책적 함의

6 결 론

제1절 종합

전국조사결과 분석, 집단 및 일대일 면접, 정책 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노인단독가구의 특징은 〈표 6-1〉과 같이 종합될 수 있다. 노인단독가구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있는 일정 규모의 대상이 있으며, 경제적 충분성과 안정성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제수준은 지출 중 식생활비의 비중이 높지만 유제품이나 기호식품 등에 대한 지출액 수준은 낮은 등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인터뷰에서도 반찬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토로되기도 하였다. 또한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지출 수준 대비 기본적인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심리적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가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노인에게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쉽게 대처하지 못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한편 노인단독가구 내부의 다양성도 큰데, 이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관심을 두어야 할 점들이다. 독거가구의 경우 가까이 사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높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연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그러한 기제가 부족한 상황이다. 독거가구는 상대적으로 운동실천율과 건강검진율이 낮고 빈곤경험률이 매우 높다. 독거가구를 대표하는 삶의 유형은 빈곤과 질병, 고립과 무위라는 4가지 고통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유형으로 공적개입이 꼭 이

루어져야 하는 위기집단으로 독거가구 중 25.2%에 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적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는 취약집단이 35.7%로 도출되었다.

한편,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가 모두 75세인 비율이 21.3%이며, 독거가구에 비하여 제특성별 차이, 즉 내부적 다양성 수준이 높다. 또한 부부가 공간과 생활을 모두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 유대와 중요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구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빈곤과 질병이라는 문제는 경험하지 않지만 소외와 무위의 문제를 경험하는 유형이 15.1%, 4가지 문제를 모두 경험하는 경우가 14.1%로 나타났다. 정책적 개입의 관점에서 볼 때 공적 개입이 필요한 위기집단 가구가 13.0%, 공적 보호를 우선시 해야 할 취약집단(4고(四苦)중 3개의 문제를 갖고 있는 집단)이 27.4%이다.

이외에도 제특성별로는 지역의 특성이 매우 두드러졌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비교적 단단한 지역사회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로 영양상태나 건강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이 높고, 119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사회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반면 학대경험이나 자살생각을 하는 비율이 높아 심리적 안전이 취약한 상태이다. 연령의 경우도 후기 노년기로 갈수록 자녀와의 정서적 교환도 약화되고, 행동반경이 축소되는 등 사회적 연계망과 활동이 축소되고 있다. 한편, 예비노인의 경우는 현세대 노인과는 달리 그들 앞에 놓여있는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암중모색하고 있다.

다른 연령층의 경우와 유사하게 경제상태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다양한 지표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종교활동이 삶에 갖는 의미와 기능이 매우 크다는 점은 비노년층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표 6-1〉 노인단독가구의 특징(종합)

		내 용
노인단독가구의 공통점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고립형 7.5%)
		경제적 충분성과 안정성 수준이 낮음 (가구균등화 소득:95.5만원 대 150.6만원, 절대빈곤율 46.3% 대 20.2% 적자가구율 39.7% 대 15.7%)
		식생활비 비중이 높고 유제품이나 기호식품의 구매가 활발하지 못함 (27.5% 대 19.1%, 유제품 지출액: 1만2천원, 기호식품 지출액: 6천원)
		주거비용의 부담이 큼(22.1% 대 12.9%)
		물리적 안전수준이 낮음(생활하기 불편한 환경 등)
노인단독가구의 다양성	독거	독거노인은 가까이 사는 자녀가 없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음
		높은 우울증상(41.2%)
		상대적으로 낮은 운동실천율과 건강검진율
		매우 높은 빈곤 경험 및 기초생활보장대상율
		대표유형: 빈곤, 건강, 고립, 무위 4가지 문제 모두 경험하는 유형(24.8%)
		정책대상 - 공적 보호가 꼭 필요한 위기집단: 25.2% - 공식적 보호를 우선시 해야 하는 취약집단: 35.7%
	부부	부부가 모두 75세 이상인 부부가구(부부가구의 21.3%)에 대한 관심 필요 - 약 절반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음
		제특성별 생활양상의 차이 뚜렷 - 교육수준에 따른 우울증 정도 차이 등
		생활패턴의 분리 그러나 감정적인 유대는 가능
		대표유형 - 빈곤과 건강의 문제는 없지만 소외와 무위의 문제 있는 유형 (15.1%) - 빈곤, 건강, 고립, 무위 4가지 문제 모두 경험하는 유형(13.0%)
		정책대상 - 공적 보호가 필요한 위기집단 가구: 13.0% - 공식적 보호를 우선시 해야 하는 취약집단 가구:27.4%
	지역	독거노인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 영양상태 상대적으로 양호 (지역사회 요인)
		교육수준이 낮아도 건강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높음(정책 요인)
		경로당(또는 이장 등)이 생활의 구심점으로 작동
		농어촌 지역에서의 119의 적극적 활용
		도시지역 노인의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참여활동
		도시지역 노인에서 높은 학대경험 및 자살생각 (양극화)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적 교환수준 저하
		행동반경의 축소, 지인의 죽음 등으로 사회적 연계 약화
		예비노인은 다양한 노년기에 대한 모색중
	경제	경제수준이 다른 영역의 삶에 미치는 영향 압도적
	종교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생활의 리듬이 분명하고, 사회적 연계 강함

제2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노인단독가구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 방향과 패러다임의 전환

노년기의 단독가구 형성은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패러다임이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그렇지 못한 노인을 위한 정책을 잔여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면, 향후 정책은 노년기의 긴 빈둥우리 단계를 보낸 후 혼자 생활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기본으로 설정해가야 할 것이다. 현재 수행중인 정책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설계함에 있어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복지정책의 서비스 단위(unit of service)를 개인단위에서 가구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가 경험하는 생활문제의 양상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정책에서는 정책대상을 결정하는 배분기준이 개인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으므로 가구에 따른 생활문제나 미충족 욕구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보장에서 사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체 노인복지정책의 영역에서 정책 배분기준으로 가구특성 변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노인단독가구로의 전이과정과 생활사건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단독가구로의 전이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즉, ① 결혼으로 가족을 형성하였지만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부부가구로 생활하다 노년기에도 부부가구로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② 자녀가 결혼이나 사회진출로 분가하여 부부만 남게 되어 중장년기 또는 노년기에 부부가구로 전이되는 경우, ③ 자녀의 결혼 이후 동거하였으나 경제형편이나 가족관계문제 등으로 자녀와 분가하여 노인부부가구로 전이되는 경우, ④ 가족을 형성하지 않고 독신생활을 지속하여 노년기에도 독거가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 ⑤ 노년기 이전에 배우자 사망과 자녀 결혼과 사회진출로 인하여 독거가구가 되어 노년기까지 독거가구의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⑥ 노년기에 자녀동거가구를 형성하였으나 배우자 사망과 자녀 분가 등으로 인하여 독거가구로 전이되는 경우, ⑦ 노년기에 부부가구를 형성하였으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독거가구로 전이되는 경우 그리고 ⑧ 자녀동거가구이었으나 배우자 사망 또는 자녀 분가로 부부가구나 독거가구가 되었다가 자녀와 다시 동거하게 되는 일시적 노인독거가구에 이르기까지 노인단독가구의 형성과 전이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노인단독가구로의 전이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의 은퇴와 수입감소, 배우자의 질병이나 사망, 자녀의 결혼과 분가 등의 주요 생활사건 그리고 노년기 이전의 예비노인 단계에서의 가족관계, 경제여건,주거환경과 지역적 특성, 노후생활준비 등에 따라 노인단독가구의 삶의 질과 욕구, 생활문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노인단독가구로의 전이과정과 생활사건에따라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의 급여와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2. 노인단독가구의 다양성과 욕구 증대에의 적극적 대응

증가하는 단독가구의 다양성과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이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인단독가구 내에서도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점이 분명하므로 정책의 강조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독거가구의 경우는 위기집단과 취약집단의 비율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문제와 건강문제 그리고 소외문제를 경험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 등의 비공식적 지지체계보다는 국가에 의한 공식적 보호체계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부가구의 경우는 위기집단의 비율이 독거가구보다는 낮고 취약집단의 비율도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낮은 반면 사회지지필요집단과 자립생활지향집단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본적 생계와 생활안전의 목적을 등한시하지 않으면서도 활기차고 생산적 노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비공식적 지지체계와의 협력과 상호보완 관계를 더욱 강조해갈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상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하거나 노인단독가구 거주자들의 욕구가 높은 서비스를 적극 개발·제공해가야 할 것이다. 주택보수, 반찬배달서비스의 필요성은 양적 자료나 질적 자료를 통해 모두 확인된바 있다. 또한 주택개보수의 경우 특히 즉각적인 집행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비노인의 경우는 도시지역 거주율이 높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세대 노인, 특히 후기노인의 경우는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빈곤한 노인단독가구에 대해 동절기에 한해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이 속한 가구에 직접적으로 난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사회적 고립의 지속으로 중증의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기제마련이 요구되고, 빈곤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우울증 검진과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노인,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119를 적절히 활용하여 비상시에도 안심할 수 있는 노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3.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강화 및 보완

단독가구의 다양성과 욕구 증대에의 적극적 대응이라는 새로운 시도뿐만 아니라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대상범위 확대 및 체질 개선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범위의 확대 없이는 노년기 단독가구의 삶의 질 향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노인단독가구의 생존 및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 보호체계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노인단독가구 특히 독거가구는 저소득문제, 주거불안정문제, 영양문제, 질병문제, 소외문제 등 생존과 기본적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생존과 기초생활 보장의 책임은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가 우선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같이 국가 개입을 통한 생존 및 기초생활보장이 이루어진 위에 무위 문제와 같은 부가적 욕구나 생활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공식적 지지체계가 좀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공식적 보호체계와 상호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절대빈곤계층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노인단독가구 중에서 독거가구는 절대빈곤계층의 비율이 3/5을 상회하며 부부가구는 2/5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의 빈곤문제는 생존과 생활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문제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 등의 소득보장정책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가계수지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노인단독가구 중에서 독거가구의 주거불안정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편이도까지 고려하면 주거불안정계층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정책에서는 주거급여나 임대주택입주 가산점 부여, 노인복지시설 입소 지원 등의 급여와 서비스만 제공될 뿐 독거가구를 위한 차별화된 주거보장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거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회의 확대, 전월세 자금 저리융자 및 주거급여액 상향 조정, 난방연료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보장정책의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

넷째, 실질적 소득보완 효과를 지닌 좋은 일자리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노인단독가구 중에서 경제활동 미참여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은 다른 문제를 경험하는 집단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노인단독가구 특히 독거가구의 경우 절대빈곤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활동 참여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소득보완의 목적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보완 효과가 낮은 공익형 노인일자리보

다는 인력파견형 등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공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질병치료나 장기요양보호 수요 충족을 위한 급여의 확대와 아울러 가사, 일상생활지원 등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노인단독가구 특히 독거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고 질병을 앓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고, 질병시 부양인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부부 중 한명이 질병을 앓거나 일상생활 기능에 제한을 받게 되면 배우자가 돌봄의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경향이 강하여 노인의 부양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단독가구의 질병치료와 중증환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급여가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와 아울러 가정내에서 기본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독거가구와 부부가구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기준 완화와 서비스 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여가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노인단독가구 특히 독거가구는 비공식적 지지체계와의 연계가 단절되어 소외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이 매우 높지만, 현행 독거노인지원서비스는 이와 관련된 복지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부부가구의 경우 노인여가시설의 부족과 낮은 접근도로 인하여 여가활동, 평생교육, 사회단체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무위의 문제를 호소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고 무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거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과 차별화된 전문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2014).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 2012 건강보험 통계연보.

국토교통부(2014. 3).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권중돈(2008).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착화 방안, 보건복지가족부·목원대학교.

권중돈(2012). 노인복지론, 학지사.

권중돈·엄태영·김유진·고대식(2011).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보건복지부.

김기태·최송식·박미진·박선희·고수희·박현숙(2011). 가족구조와 심리사회적 요인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2, 205~228.

김희경·이현주·박순미(2010). 여성독거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한국노년학회지. 30(2), 279~292.

노인복지학회지 홈페이지(2014). www.koreawa.or.kr

대한민국정부(2013. 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 (보완판).

백주희(2005). 치매노인의 요양시설 입소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부양자 대 성인자녀 부양자, 한국노년학회지. 25(2), 127~14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2014). http://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2013).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201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보도자료(2013.1.25).

보건복지부(2013).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보건복지부(2014). 2014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2014).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2013). 2013년 독거노인지원사업 연구성과보고.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3). 201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안지연·한은영(2013). 노인부양가구의 가족갈등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1, 267~290.

오지연·최옥금(2011). 노인가구 유형변화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3, 7~28.

유광수·박현선(2013).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4(3), 163~179.

이가옥·서미경·고경환·박종돈(1994). 199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정(2012). 남녀 독거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의 영향요인, 한국노년학회지. 32(4), 1119~1135.

이화영(2006).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32, 327~355.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보지부

정경희·오영희·이윤경·박보미(2010). 베이비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오영희·이윤경·박보미(2012b).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오영희·이윤경·박보미(2012c).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오영희·이윤경·손창균·박보미·이수연·이지현·권중돈·김수봉·이소정·이용식·이윤환·최성재·김소영(2012a).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명숙(2007).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복지연구, 37, 294~274.

정운영·정세은(2011). 1인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31(4), 1119~1134.

정진경·김고은(2012). 노년기 부모-성인자녀간 지원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32(3), 895~912.

조경욱(2002). 무의탁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02 가을호, 85~125.

최영(2005).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건강상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9, 123~149.

통계청(2011).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통계청(2012). 가계동향조사.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2010년~2035년.

한경혜·주지현·이정화(2008). 조손가족 조부모의 소득구성원과 총소득 결정요인, 한국노년학회지, 28(4), 1147~1164.

한국노년학회지 홈페이지(2014). www.tkgs.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4). 2013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Cantor, M. H. & Little V. (1985). *"Aging and Social Care"*, in Binstock, R. J.and Shanna, E. (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2nd Edition). NY, 745~780.

Carr, D. S. (2004). Black/White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djustment to Spousal Loss Among Older Adults, *Research on ageing.* 26(6), 591~622.

Chou, J. R. (2010). Filial Piety by Contract? The Emergence, Implement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Family Support Agreement" in China. *The Gerontologist.* 51(1), 3~16.

Chumbler, N. R. & Pienta, A. M. & Jefferey, W. D. (2004). The Depressive Symptomatology of Parent Care Among the Near Elderly: The Influence of Multiple Role Commitments. *Research on ageing.* 26(3), 330~351.

Edelman, P. & Guihan, M, & Bryat., B. F. &Y Munroe, J. D, (2006).

Measuring Resident and Family Member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With Assisted Living. *The Gerontologist.* 46(5), 500~608

Funk, M. L. & Chappell, N. L. & Liu, G. (2013). Associations Between Filial Responsibility and Caregiver Well-Being. *Research on ageing.* 35(1), 78~95.

Gilbert, N., & Specht, H.(197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New Jersey: Prentice-Hll.

Gill, A. E. & Morgan, M. (2012). Older Parents and Adult Daughters: A Comparison of Communication and Coping During the Decision to Move to a Care Facility. *Research on ageing.* 34(6), 714~737.

Goodman, C. & Silverstein, M. (2002).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Family Structure and Well-Being in Culturally Diverse Families. *The Gerontologist.* 42(5), 676~689.

Goodman, C. C. (2003). Intergenerational Triad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Journal of Gerontology.* 58B(5). 281~289.

Guo, M. & Li, S. & Liu, J. & Sun, F. (2014). Social Connections, and Mental Health Among Latino and Asian Older Adults. *Research on ageing,* February 23. 2014, 1~25.

Isengard, B. & Szydlik, M. (2012). Living Apart (or) Together? Coresidence of Elderly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in Europe. *Research on ageing.* 34(4), 449~474.

Journal of Gerontology 홈페이지(2014). http://biomedgerontology.oxfordjournals.org/

Lee, G. R. & DeMaris, A. (2007). Widowhood, Gender, and Depression. *Research on ageing.* 29(1), 56~72.

Musil, M. C. & Warner, B. C. Zauszniewski, A. J. & Jeanblanc, B. A. &

Kercher, K. (2006). Grandmothers, Caregiving, and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Gerontology.* 61B(2), 89~98.

Peek, C. W. & Koropecky-Cox, T. & Zsembik, B. A. & Coward, R. T. (2004). Race Comparisons of the Household Dynamics of Older Adults. *Research on Aging*. 26, (2), 179~201.

Prokos, A. H. & Keene, J. R. (2012). The Life Course and Cumulative Disadvantage: Poverty Among Grandmother-Headed Families. *Research on ageing.* 34(5), 592~621.

Reitzes, C. D. & Mutran, J. E. (2004). Grandparent Identity, Intergenerational Family Identity and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59B(4), 213~219.

Research on Ageing 홈페이지(2014).
http://www.sagepub.com/journals/Journal200862

Rowe, J. W. & Kahn, R. L.(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Shiovitz-Ezra, S. & Ayalon, L. (2012). Use of Direct Versus Indirect Approaches to Measure Loneliness In later life. *Research on ageing*. 34(5), 572~591.

The Gerontologist 홈페이지(2014).
http://gerontologist.oxfordjournals.org/

Ward, R. & Deane, G. & Spitze, G. (2014). Life-Course Changes and Parent-Adult Contact. *Research on ageing.* 36(5), 568~602.

부록: 가계동향조사 기초 분석

1. 분석자료 개요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에서 전국 1인 이상 비농어가[9] 약 8,700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가계의 수입 및 지출, 가구실태를 파악하는 미시조사(micro survey)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성 높고 대표적인 가계조사라고 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국민의 소득 및 소비수준의 변화를 측정, 분석하여 정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는데, 가령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소득분배 수준 측정 및 개선에 대한 정책수립, 국민소득 추계 등 경제·사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통계청, 2011).

한편 본 연구에서 주요 관심변수인 경상소득 및 소비지출에 대한 가계동향조사의 분류체계는 〈부표 1-1〉과 같다. 소득은 크게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로 구분되는데 경조소득 및 퇴직금 등과 같은 비경상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일반적인 소득분석에서는 경상소득이 주로 활용된다.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분류되며,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지출은 소비지출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분석범위로 하고 있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이자 등과 같이 반드시 지불해야 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없이 지출이다.

9) 가계수지 파악이 어려운 농림어가, 음식숙박 겸용주택 가구, 장기출타가구와 비혈연가구, 외국인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통계청, 2011).

〈부표 1-1〉 경상소득 및 소비지출 구성

중분류	세분류	세 부 항 목
경상소득	근로소득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사업소득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주택 등 임대소득, 의제자가주거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의제이자소득, 기타재산소득
	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가구간 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소비지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동물, 염건수산동물, 기타수산동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쥬스 및 기타음료
	주류 및 담배	주류, 담배
	의류 및 신발	직물 및 외의, 내의,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주거 및 수도광열	실제주거비, 의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기타주거서비스, 연료비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 섬유제품,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주방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보건	의약품, 기타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보건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교통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 서비스
	통신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정보처리장치, 오락문화 내구재, 장난감 및 취미용품, 화훼관련용품,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음식·숙박	식사비, 숙박비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기기, 위생 및 이미용용품, 시계 및 장신구, 기타개인용품, 사회복지, 보험, 기타금융, 기타서비스

자료: 통계청(2011),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p.41)에서 재구성

가계동향조사에서 경상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2. 가구 형태

가계동향조사 10,401가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1명 이상 속한 가구의 비중은 26.5%(2,753가구)이며, 65세 미만의 비노인으로만 가구원이 구성된 가구는 73.5%(7,548가구)이다. 노인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노인단독가구가 16.5%(1,716가구)로 노인과 비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10] 10.0%(1,037가구) 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단독가구는 노인부부가구의 비중이 약 2.3%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노인독거와 노인부부는 각각 7.1%(740가구) 9.4%(976가구)이다. 여기서 노인부부가구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의미한다.

가구형태별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비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노인독거가구는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비노인가구〉그외 노인가구〉노인부부〉노인독거). 노인독거가구의 월평균 중위가구소득은 55만원으로 비노인가구 351만원의 1/5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인부부가구 또한 비노인가구 소득의 1/3수준으로 열악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가구소득 증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11]. 가구균등화지수[12]를 반영할 경우 가구구성별 소득격차는 소폭 감소하여 노

10) 그 외 노인가구에서 노인 가구원 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3명까지이며, 1명 771가구(74.3%), 2명 259가구(25.0%), 3명 7가구(0.7%)이다.
11) 〈부표 1-3〉에서와 같이 가구구성별 평균 가구원 수의 차이가 있다.

인독거가구는 비노인가구의 1/2수준, 노인부부가구는 1/2수준이 된다. 경제상태를 지출측면에서 파악한 결과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지출격차가 조금 감소한다[1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노인단독가구는 중위소득 보다 중위지출 규모가 더 큰 적자(deficit)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부표 1-2〉 노인가구 구성

(단위: 가구, %, 천원)

구분	대상[3]	중위소득[4]	중위지출[4]
노인가구	2,753 (26.5)	1,329 (982)	1,074 (787)
노인독거(A)	740 (7.1)	551 (551)	554 (554)
노인부부(B)[1]	976 (9.4)	1,305 (923)	1,040 (736)
노인단독(A+B)	1,716 (16.5)	771 (674)	741 (637)
그외 노인가구[2]	1,037 (10.0)	3,259 (1,731)	1,929 (1,019)
비노인가구	7,648 (73.5)	3,509 (2,041)	2,240 (1,280)
가구전체	10,401 (100.0)	3,084 (1,814)	1,990 (1,169)

주: 1) 부부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을 의미함.
2) 노인단독가구가 아니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3) ( )는 가구전체 대비 비중임.
4) 소득 및 지출은 각각 경상소득과 소비지출 기준이며 가구가중치를 반영함. ( )는 가구소득 및 지출에 $\sqrt{\text{가구원수}}$를 나누는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한 값임.

〈부표 1-3〉 가구형태별 가구원 수

(단위: 명)

노인독거	노인부부[1]	그외 노인[2]	비노인
1	2	3.4	3.0

주: 1) 부부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을 의미함.
2) 노인단독가구가 아니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12)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는 OECD기준으로,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에 루트를 취하여 나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13) 노인독거가구의 월평균 중위지출은 비노인가구의 1/4(균등화 반영시 1/2)수준, 노인 부부가구의 중위지출은 1/2(균등화 반영시 2/3)수준이 된다.